

ISSN 2465-9207

#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제9권

제2호

2023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미디어와 인격권

제9권 ■ 제2호 ■ 2023

## ■ 기획논문 SI와 인격권

---

### 1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최근 동향과 시사점

- 인공지능에 대한 인격권 보호의 문제를 곁하여 -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37 인공지능과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연구

최종선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조정실 법무팀 차장)

### 83 AI 창작물과 저작인격권에 관한 탐색적 연구

조연하 (미디어미래연구소 객원 연구위원, 언론학박사)

## ■ 연구논문

---

### 123 피의사실 보도의 요건

- 윤리적 범죄 수사 보도를 위한 원칙 -

박영흠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 부록

---

166 「미디어와 인격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178 「미디어와 인격권」 연구윤리규정

185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작성규정

## ■ Contents

---

- 1 **Recent Trends and Implications of Regul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 Focusing on the Issue of Protecting Personal Rights Against Artificial Intelligence -  
**Chung, Nam-Chul**  
Professor of Law,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37 **A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sinformation**  
**Choi, Jongsun**  
Adjunct Professor of Public Policy Graduate School at Hanyang University and Deputy General Manager of the Legal Team of the Planning and Coordination Office of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 83 **A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I Generated Works and Moral Rights in Copyright**  
**Cho, YounHa**  
Guest Research Fellow, Media & Future Institute
- 123 **The Requirements for the Report of Facts of Suspected Crime**  
- Principles for Ethical Criminal Investigation Reporting -  
**Park, Young Heum**  
Senior Researcher, Korea Press Foundation

#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공지능 규제 최근 동향과 시사점

- 인공지능에 대한 인격권 보호의 문제를 겸하여 -

정 남 철\*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 국문 초록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은 시대의 화두이다.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시스템은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처리를 하지만,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 또한 알고리즘에 의한 인공지능시스템은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형성을 왜곡할 수 있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짜 뉴스는 정치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은 인간의 존엄권, 기본권, 민주주의와 같은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는 현대국가의 중요한 과제다. 특히 인공지능시스템은 절차적 요건에 취약하며,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보완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자동결정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의 참여뿐만 아니라 절차 공개를 통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규제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기업의 자율규제를 보장하면서 국가의 규제를 유보하는 ‘규제된 자율규제’의 방식이 바람직하다. 신(新)산업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시스템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이러한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인공지능명령안에

\* ncchung@sookmyung.ac.kr

는 참고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령에서 인간의 존엄이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인간의 생명·안전에 명백히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은 금지해야 한다. 높은 리스크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중요하다. 이러한 높은 리스크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설정해야 한다. 리스크관리시스템은 대체로 리스크의 조사 및 관찰, 리스크의 평가, 리스크의 관리 및 통제로 구성된다. 리스크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높은 리스크의 인공지능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등록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높은 리스크의 인공지능에 대한 평가가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리스크의 관리 및 통제에서 규제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율해야 한다. 행정의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은 현대국가의 당면과제이자 현안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규범적 대응과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

주제어: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리스크, 인격권, 규제된 자율규제

## 목 차

- I.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의 부상
- II.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인격권 침해
  - 1. 인공지능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과 인격권 침해
  - 2. 인공지능에 의한 편견과 차별
  - 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술에 의한 인격권 침해
- III. 인공지능에 대한 민주적 통제
  - 1.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긴장관계
  - 2.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행정자동결정의 문제점
  - 3. 시민참여의 보장과 투명성 확보
- IV. 인공지능 규제의 국제적 동향
  - 1. 인공지능 규제의 형식과 기본방향
  - 2. 인공지능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제와 대응
  - 3. 독일 연방정부의 인공지능 전략 및 대응
  -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사항
- V. 국내 인공지능 법률안의 내용 및 검토
  - 1. 인공지능 법률안의 특징
  - 2. 적용대상인 인공지능의 개념
  - 3.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
  - 4. 인격권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 5.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방식 및 분쟁해결
- V. 시사점 및 대응방안

## I.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의 부상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시대적 화두(話頭)이다.<sup>1)</sup> 정보통신기술(ICT)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으며, 빅데이터에 기초한 인공지능의 부상으로 인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디지털화(digitalization, Digitalisierung)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방대한 데이터 처리와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지

1) 디지털화로 완전자동화결정, 인공지능의 투입 및 행정의 네트워크화는 새로운 차원의 법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Britz/Eifert, in: Voßkuhle/Eifert/Möllers(Hg.),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3. Aufl., Bd. 1, § 26 Rn. 16).

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챗GPT(ChatGPT), 바드(Bard) 등과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등장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이에 대해 각 분야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동인(動因)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인공지능에 의해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견해도 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화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sup>2)</sup>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형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이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정된 알고리즘(algorithms)에 의한 인공지능시스템은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조작된 허위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경우도 있다. 가짜 뉴스(fake news)가 그러한 사례이다. 딥페이크(deepfake)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가짜 뉴스로 정치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기도 하고, 또 이를 악용하여 행정부나 정당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가짜 뉴스로 매도할 때도 있다. 이러한 가짜 뉴스는 유명 연예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언론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인격권은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 인격권의 의미에 대해서는 국내 학설은 통일적이지 않다. 독일에서는 일반적 인격권의 근거를 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찾고 있으며, 이는 기본법 제1조 제1항의 인간의 존엄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sup>3)</sup> 국내의 학설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 인격권이 행복추구권에 직접적 근거를 두면서도 인간의 존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4)</sup>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일반적 인격권이 헌법

2) Schliesky, Digitalisierung: Herausforderung für den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 NVwZ 2019, S. 696 ff.; Schröder, Rahmenbedingungen der Digitalisierung der Verwaltung, VerwArch 2019, S. 331 ff.

3) Jarass, in: Jarass/Pieroth, GG, 10. Aufl., Art. 2 Rn. 38.

4) 계희열, 헌법학(중), 신정2판, 217-218;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7전정신판, 403;

제10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sup>5)</sup> 이러한 일반적 인격권에는 자기 결정권이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여기에 초상권·성명권 등을 비롯한 사생활영역의 비밀 유지와 자유로운 형성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생활의 보호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일반적 인격권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한편, 기계가 데이터를 분석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나 스스로 학습하는(Self-learning) 인공지능시스템은 인간의 개입이나 감독을 배제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근거하여 자동화된 장치에 의한 행정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사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 민주주의 등 헌법상의 기본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중요하며, 정부가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sup>6)</sup> 이와 관련하여 2021년 4월 21일 유럽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명령안(Draft AI Regulation, KI-VO-E)을 제안하였고, 챗GPT에 대한 새로운 논의로 그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이러한 유럽연합 인공지능명령안은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제3자의 제공자나 사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연합은 리스크(risk, Risiko) 또는 위험성에 기초한 규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sup>7)</sup> 유럽연합 인공지능명령안에는 인간의 존엄권, 일반적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 또는 수용 불가 리스크(unacceptable risk)로 보고 있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기

---

한수웅, 헌법학, 제7판, 558. 한편, 일반적 인격권을 헌법 제10조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1항과의 상호관계에서 나오는 기본권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허영, 한국헌법론, 352).

5) 헌재 2005. 10. 27. 선고 2022헌마425 결정(판례집 17-2, 311쪽); 헌재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결정(판례집 26-1상, 534쪽).

6) 이에 대한 유럽연합 및 독일의 논의에 대해서는 Guggenberger, Öffentliche Verwaltung im Zeitalter der Digitalisierung, S. 122 ff.

7) G. Hornung, KI-Regulierung im Mehrebenensystem, DuD 2022, S. 562.

위해 인간의 행위를 조작하거나 정부가 주도하여 신뢰도를 평가하는 소셜 스코어링(social scoring)은 금지된다.<sup>8)</sup>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에 피해를 줄 리스크가 있거나 기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은 높은 리스크의 인공지능 또는 고위험성 인공지능(high-risk AI)으로 분류되고 있다.<sup>9)</sup> 유럽연합 인공지능명령은 거짓이나 이미지 조작이나 오디오나 비디오 콘텐츠 등을 이용하는 딥페이크에 관한 규제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또는 연구의 자유 등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딥페이크를 생산하거나 이를 조작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폐쇄할 수 있다(제52조 참조).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명령안에 따라 회원국들도 인공지능에 관한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명령안은 구속력을 가진 최초의 인공지능규범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국제적 권고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UN) 등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인공지능의 도입에 따른 인격권 침해(II), 인공지능에 대한 민주적 통제(III),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국제적 동향(IV), 그리고 국내의 인공지능 법률안의 내용(V)의 순서로 검토하기로 한다.

8)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만 규율하고, 사적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의 투입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Ebert/Spiecker gon. Döhmann, Der Kommissionsentwurf für eine KI-Verordnung der EU, NVwZ 2021, S. 1189).

9) 정남철 (2022). 유럽연합(EU) 인공지능규범의 제정과 특징. <유럽헌법연구>, 제38호, 233-234.

## II.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인격권 침해

### 1. 인공지능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과 인격권 침해

인공지능은 인간의 자유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Big data)에 기초하여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핵심적 기반은 데이터에 있다. 인공지능은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처리하고, 또한 스스로 학습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 신경망의 기술을 활용하는 딥러닝(Deep Learning)은 인간의 뇌 구조와 유사한 방법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디지털화로 인한 데이터의 수집·처리 기술이 확대되면 인공지능의 능력도 높아진다. 인공지능에 의한 감시는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헌법 제17조). 예컨대 CCTV와 같은 보안(감시)카메라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Social Media)에 게시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전파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정보가 정치적 사상이나 신념, 성적 정체성 등과 같은 민감정보일 경우 그 피해는 심각하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사적 대화를 녹취할 수도 있고, 이러한 개인정보가 왜곡되거나 범죄에 활용되면, 그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인공지능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3월 14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에는 정보주체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또한 “완전히 자동화

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를 정보 주체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4조 제6호 신설). 이 규정은 같은 해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여기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에서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20조에는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완전자동화 행정행위(행정결정)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완전자동화 행정행위는 재량행위가 아닐 때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인공지능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sup>10)</sup>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에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에서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을 제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다.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을 모두 제외하고, 그 밖의 어떤 처분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호하다.

이러한 정보 주체의 권리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근거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 학설 및 판례가 대립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를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권에서 도출하는 것은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찾는 것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모두 근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sup>11)</sup> 대법원도 군 정보기관이 법령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관리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판결에서 비록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10) 정남철 (2021).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화에 따른 행정자동결정의 법적 쟁점. <공법연구>, 제50집 제2호, 231-252.

11) 정남철 (2018). 행정법의 특수문제. 파주: 법문사.

라는 기본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입장을 채택한 바 있다.<sup>12)</sup>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일관적이지 않지만,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 졸업생의 개인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보유하는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일반적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sup>13)</sup> 이처럼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인격권 침해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2. 인공지능에 의한 편견과 차별

빅데이터에 기초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은 편견과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빅데이터에 근거하여 개인의 성향이나 정치관 신념, 성(性) 등 민간정보를 분석하고 결정을 내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범죄예방이나 치안, 사법(司法)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흑인의 범죄율이 높은 데이터와 통계에 의존하면, 흑인의 재범률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즉 미국에서 사용된 교정관리 프로파일링(COMPAS; Correctional Offender Management Profiling for Alternative Sanctions)이 그러하다.<sup>14)</sup> 인공지능도 이러한 통계에 의존하여 일정한 결정을 내릴 경우 흑인을 범인으로 오판할 수 있다. 또한 채용시스템이나 인사시스템에 인공지능이 적용될 경우 유색인종, 성(性)이나 젠더(Gender) 등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차별은 데이터의 입력 단계에서 발생하지만, 그 데이터의 결과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sup>15)</sup>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표준적인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데이터의 오류를 바로

12)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13) 헌재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결정 등.

14) 정남철·계인국·김재선 (2020).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4 - 인공지능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제체계와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15) Susanne Beck, Diskriminierung durch Künstliche Intelligenz?, ZRP 2019, S. 185.

잡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전문가의 검증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나 심의회 등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차별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는 적지 않다. 헌법 제11조는 평등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에는 평등원칙이 적용되는 구체적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차별금지의 사유를 금지하고 있다.<sup>16)</sup> 행정기본법 제9조도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도 채용과 관련된 차별금지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1항). 또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인공지능시스템을 적용한 채용이나 취업 등에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에 따른 채용에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다.

### 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한 인격권 침해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도 개인의 인격권이 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사람이 신체에 착용

16) 계획열, 앞의 책, 243.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라고 정의하고 있다(같은 법 제2조 제7의2호). 이러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는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의해 이용될 수 있고, 여기에 인공지능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는 이러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즉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을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이 경우 정보 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함), ③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같은 조 제1항). 그러나 ②의 경우에 당사자가 촬영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이러한 촬영 사실의 표시를 하더라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촬영당하는 사람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 경우 촬영당하는 당사자는 그 촬영 거부의 의사를 밝히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이는 불법 촬영이나 몰래 촬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에 인공지능시스템이 설정된 경우에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니터링(monitors)을 통한 인간의 관리와 감독이 중요하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사람’이 신체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이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나 드론 등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개념에 포섭할 수 있을지 문제다. 해석상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정비할 때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포함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Ⅲ. 인공지능에 대한 민주적 통제

#### 1.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긴장관계

인공지능과 민주주의는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의 도래로 인한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인류가 발전시킨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제약하여 여론 형성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이다. 언론은 이러한 자유로운 정치적인 의사형성을 돕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중요한 정보가 조작되거나 왜곡되면 언론의 비판기능은 감퇴된다. 또한 조작된 정보에 의한 보도는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사실확인(fact check)을 어떤 방식으

로 검증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다. 선거나 투표에서 이러한 조작된 정보나 가짜뉴스의 폐해는 심각하다. 챗GPT나 바드(Bard) 등의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정보에도 부정확한 내용이 적지 않다. 특히 질의 사항에 대해 종전의 정보를 간추려서 보여줄 때도 있지만, 허위 정보를 조작하거나 왜곡해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허위 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는 시스템은 없다.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은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하여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알고리즘에 의한 지배로 인해 민주적 법치국가의 중요한 원칙들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그러하다.<sup>17)</sup> 이러한 알고리즘에 의한 지배를 흔히 ‘알고크러시(algocracy)’라고 부르고 있다. 알고리즘에 기초한 인공지능의 결정에는 인간의 참여나 의견수렴절차 등이 취약하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결정에서는 사전통지, 청문절차 등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다. 회기나 의사일정 등의 제약을 받지 않는 화상회의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빈번하다. 그러나 충분한 토의나 숙고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여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 2.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행정자동결정의 문제점

인공지능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행정자동결정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도입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적용된 행정자동결정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문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완전자동화 행정결정을 허용하는 것은

17) Unger, Demokratische Herrschaft und künstliche Intelligenz, in: Sebastian Unger/Antje von Ungern-Sternberg(Hg.), Demokratie und künstliche Intelligenz, S. 113 f.

바람직하지 않다. 사전통지, 청문, 이유제시 등의 절차적 요건은 행정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행정자동결정에는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독일 연방 행정절차법 제35a조에는 재량행위나 판단여지가 없는 경우에 완전자동화 장치로 행정행위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완전자동화 행정행위에는 서명, 이유제시, 청문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독일 연방 행정절차법 제28조 제2항 제4호, 제37조 제5항, 제39조 제2항 제3호 등).<sup>18)</sup>

이러한 독일의 입법례를 모델로 하여 한국 행정기본법 제20조에도 ‘자동화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행정에 재량이 없을 때만 행정청은 완전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점은 독일 연방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차이가 있다. 특히 독일과 달리 한국 행정절차법에는 절차 규정의 예외적 적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이원화로 인해 이러한 입법의 흠결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행정자동결정에도 통상의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절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규정이 행정자동결정(자동화처분)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해당 결정은 대부분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법하게 된다. 이는 중요한 입법적 흠결이므로 행정자동결정과 관련하여 청문·서명·이유제시·직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여야 한다.<sup>19)</sup>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행정자동결정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일으

18) Siegel, Th, Automatisierung des Verwaltungsverfahrens: zugleich eine Anmerkung zu § 35a, 24 I 3, 41 IIa VwVfG, DVBl. 2017, S. 24 ff.; Binder, Nadja Braun, Vollständig automatisierter Erlass eines Verwaltungsaktes und Bekanntgabe über Behördenportale, DÖV 2016, S. 891 ff.

19) 이에 대해서는 정남철,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화에 따른 행정자동결정의 법적 쟁점”, 243면. 한편, 자동적 처분에 문서열람권의 정비를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김중권 (2022). 인공지능시대에 자동적 처분의 법제도화(「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후속 과제. <공법연구>, 제51집 제1호, 327).

킬 수 있다. 인공지능의 특성상 스스로 학습하거나 알고리즘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머신러닝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자동결정은 기속행위에 친숙하지 아니하다.<sup>20)</sup> 인공지능 시스템을 행정자동결정에 포함한 것은 인공지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자동화처분의 개념에서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은 제외되어야 한다. 즉 행정기본법 제20조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라는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행정청의 재량이나 판단 여지가 없는 때에 행정자동결정을 허용하고, 관련된 절차 규정의 예외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표제도 모호한 ‘자동적 처분’이 아니라 ‘완전자동화 행정결정’ 또는 ‘완전자동화 행정행위’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시민참여의 보장과 투명성 확보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인공지능시스템과 디지털화의 과정에는 투명성이 부족하다. 그 원인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요소의 개발, 하드웨어의 제작 등에 있어서 공동작업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21)</sup> 이러한 정보는 대체로 영업상 비밀이나 공적 비밀로 취급되므로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을 만들 때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민의 참여나 감시, 의견수렴 등에 관한 절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인공지능정책은 참고할 만하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이른바 신뢰생태계(ecosystem of trust)를 강조하고 있다. 인공지능시스템의 과정과 결과 도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20) Guggenberger, Einsatz künstlicher Intelligenz in der Verwaltung, NVwZ 2019, S. 846.

21) Hoffmann-Riem,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Challenge for Law and Regulation”, in Th. Wischmeyer/T. Rademacher (eds), *Regul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Springer 2020), p. 17.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명령안을 제정하여, 높은 리스크의 인공지능에 대해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현행 법령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소위 합치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를 하고, 이를 시판한 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결정에 대해 통지 절차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불복수단과 책임 문제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자동결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중요한 과제이다.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과정의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sup>22)</sup> 적어도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등 중요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민의 감시나 감독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인공지능의 전 생애에 걸친 일지(日誌)를 기록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은 규제의 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민의 참여나 감시 등을 고려하면,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방식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거버넌스의 방식이 바람직하다.

## IV. 인공지능 규제의 국제적 동향

### 1. 인공지능 규제의 형식과 기본방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중요한 현안이다. 규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시장의 자율규제),

<sup>22)</sup> Schmidt-ABmann, Das allgemeine Verwaltungsrecht als Ordnungsidee, 2. Aufl., 2004, S. 103.

국가가 이러한 규제를 전통적인 명령지시적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제로 수행하는 방식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규제방식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한편, 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호프만 림(Hoffmann-Riem)은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자율구조화(Self-structuring), 자율적 규칙(Self-imposed Rules), 회사의 자율규제(Company Self-regulation), 규제된 자율규제(Regulated Self-regulation), 혼합규제(Hybrid Regulation), 공공기관에 의한 규제, 기술규제(Techno-regulation)로 분류하고 있다.<sup>23)</sup>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규제된 자율규제’의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은 보장행정이나 보장책임과 관련하여 논의된다.<sup>24)</sup> 이러한 규제에서는 사인에 의한 승인(certification)이나 감사(auditing)를 위한 법적 요건이 중요하다.<sup>25)</sup> 국내에서도 “거대 IT 기업의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해 정부가 감시하고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sup>26)</sup> 이러한 견해도 규제된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견해로 이해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문제점이 적지 않지만, 이러한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유용성을 간과할 수도 없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막을 수는 없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영역은 대부분 신기술과 관련된 것이 적지 않다. 유럽연합은 이미 Horizon Project를 추진하여 과학과 기술에 대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23) Hoffmann-Riem,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Challenge for Law and Regulation”, in Th. Wischmeyer/T. Rademacher (eds), *Regul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Springer 2020), pp. 19-23.

24) 상세는 정남철 (2018). 현대국가의 규율구조와 규제된 자율규제: 특히 규제거버넌스의 구축과 실현방안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46집 제4호, 409-437.

25) Hoffmann-Riem,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Challenge for Law and Regulation”, in Th. Wischmeyer/T. Rademacher (eds), *Regul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Springer 2020), p. 21.

26) 김광수 (2021). 인공지능 규제의 법체계. <토지공법연구>, 제93집, 227.

영역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의 방식으로 창의적인 기술혁신을 돕고 있다. 후술하는 유럽연합 인공지능명령안 제53조 및 제54조에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심사와 발전을 위해 통제된 환경의 형식으로 ‘규제샌드박스’를 규정하고 있다.<sup>27)</sup> 규제샌드박스는 실험적 영역에서 인정될 수 있는 규제 수단이다. 인공지능의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규제의 주체와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또한 규제의 방식에서도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국가의 규제방식이 아니라 규제된 자율규제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제방식은 독일에서 오래전부터 통신분야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어 오고 있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명령에도 유럽 인공지능위원회(European Artificial Intelligence Board)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인공지능위원회는 유럽집행위원회와 회원국 감독청간의 협력을 위한 기구이다.<sup>28)</sup>

## 2. 인공지능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제와 대응

유럽연합은 인공지능명령(AI Regulation)안의 효력 발생을 앞두고 있다.<sup>29)</sup> 인공지능명령은 인간의 권리와 삶,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되는 모든 인공지능시스템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은 수용할 수 없는 리

27) Ebert/Spiecker gon. Döhmman, a.a.O., S. 1192.

28) 이에 대한 상세는 정소영 (2022).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의 거버넌스 분석 - 유럽인공지능위원회와 회원국 감독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연세법학>, 제 39권, 33-65.

29) 국내에도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명령안을 소개하는 논문이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중권 (2021). EU인공지능명령안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 <헌법재판연구>, 제 8권 제2호, 65-100; 김재선 (2021). 인공지능 안전과 책임 확보를 위한 법제 논의에 관한 검토 - 유럽연합 인공지능 관리 법제 논의에 기초하여. <행정법연구>, 제63호, 157-181; 홍석한 (2022).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유럽헌법연구>, 제38호, 243-282 등이 있다.

스크(unacceptable risk)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다. 즉 육체적 또는 심리적 유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의 행동을 물질적으로 왜곡하기 위해 사람의 의식을 넘어 잠재의식 기술을 배치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사용이나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인공지능명령안 제5조 제1항 (a)호). 또한 육체적 또는 심리적 유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령, 육체적 또는 심리적 장애가 있는 특정한 집단의 취약성을 착취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사용·서비스 제공 및 출시(上市)를 금지하고 있다(인공지능명령안 제5조 제1항 (b)호). 그리고 유럽연합 인공지능명령안은 소셜 스코링(social scoring)도 금지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이나 이를 대신 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자연인의 신뢰도 평가나 분류를 하는 인공지능의 사용·서비스 제공 및 출시는 금지된다(인공지능명령안 제5조 제1항 (c)호). 나아가 유럽연합 인공지능명령안은 일반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법 집행의 목적으로 실시간(real-time)으로 실시하는 원거리 생체식별시스템(remote biometric identification systems)을 금지하고 있다(인공지능명령안 제5조 제1항 (d)호). 다만, 특정한 잠재적 범죄피해(아동 실종) 수사, 테러공격이나 자연인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실체적이고 임박한 위협 등의 경우는 예외이다. 이러한 유형의 인공지능시스템은 인격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중대한 인격권 침해를 초래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높은 리스크의 인공지능(high-risk AI)이다. 이러한 유형은 인공지능명령안 부속서(annex) III에 규정되어 있다. 높은 리스크의 인공지능은 대체로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에 피해를 주거나 기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명령안 부속서 III에 수록된 높은 리스크의 인공지능은 일반적인 생체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사회기반 시설, 교육 및 직업 교육, 고용 및 근로자 관리, 사법(司法)집행, 이주·망

명·국경통제, 사법적 권리구제 및 민주적 절차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인간의 존엄과 일반적 인격권, 거주·이전의 자유, 교육의 자유 등 중요한 기본권과 관련이 있다.<sup>30)</sup> 인공지능명령안 부속서 III에 언급된 사법집행(Strafverfolgung)은 예컨대 딥페이크의 인식이나 거짓말 탐지기 인공지능의 투입 등이 해당된다.<sup>31)</sup>

높은 리스크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전 생애에 걸친 특별한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먼저 높은 리스크의 인공지능을 출시하거나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 ‘등록’하여야 한다(인공지능명령안 제51조). 유럽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협력하여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여야 한다. 둘째, 높은 리스크의 인공지능에 대해 예견할 수 있고 효과적인 리스크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오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측정·평가하며, 출시 후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리스크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높은 리스크의 인공지능에 대한 리스크의 관리와 감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높은 리스크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며, 그 제공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선 높은 리스크의 인공지능은 적절한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저감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호 설정과 그 결과의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그 밖에 높은 리스크의 인공지능은 높은 수준의 견고성과 정확성, 사이버보안과 적절한 인간의 감독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높은 리스크의 인공지능 제공자는 이러한 충족요건 외에 인공지능명령안 제17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대한 기술문서나 일지(日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아가 각 회원국은 합치성 평가를 위한 평가심사기관을 지정·설치하여야 한다(인공지능명령안 제30조).

30) 정남철 (2022), 유럽연합(EU) 인공지능규범의 제정과 특징. <유럽헌법연구>, 제38호, 215-242.

31) Ch. Geminn, Die Regulierung Künstlicher Intelligenz, ZD 2021, S. 356.

### 3. 독일 연방정부의 인공지능 전략 및 대응

유럽연합의 회원국인 독일도 다각적인 인공지능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88년에 독일 인공지능 연구센터가 설치되었고, 인공지능에 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2018년에 “인공지능-사회적 책임과 경제적·사회적·생태적 측면(Künstliche Intelligenz-Gesellschaftliche Verantwortung und wirtschaftliche, soziale und ökologische Aspekte)”이라는 조사위원회(Enquete-Kommission)가 만들어졌다.<sup>32)</sup> 독일 정부는 2018년 11월 인공지능에 대한 전략을 의결하고, 2020년 12월에는 이를 발전시켜 “연방정부의 인공지능전략 2020(Strategie Künstliche Intelligenz der Bundesregierung: Fortschreibung 2020)”을 발간하였다.<sup>33)</sup> 이에 의하면, 독일 연방정부 인공지능전략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다. 즉 두뇌(전문가 양성), 연구, 이전과 적용, 골격 및 사회가 핵심적인 주제이다. 국제 경쟁의 무대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와 발전, 그 적용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인공지능 전문가를 육성하고, 국제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연구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연구와 이전 구조에서 국제적으로 확산 능력이 있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그리고 독일이나 유럽에서 혁신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인공지능 적용에 대한 규율의 기본골격(Ordnungsrahmen)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율의 골격에는 법률, 법률하위규범(법규명령 등), 기술표준 등이 속한다. 나아가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공동체 지향적인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포함시키려고 한다.<sup>34)</sup>

독일 연방의회는 2023년 1월 29일 유럽연합 인공지능명령안의 제정에

<sup>32)</sup> Gh. Geminn, a.a.O., S. 354.

<sup>33)</sup> <https://www.bmwk.de/Redaktion/DE/Publikationen/Technologie/strategie-kuenstliche-intelligenz-fortschreibung-2020.html> (최종확인일: 2023. 5. 29.)

<sup>34)</sup> Die Bundesregierung, Strategie Künstliche Intelligenz der Bundesregierung: Fortschreibung 2020, S. 9 f.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의 법적 규제를 논의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이미 2018년부터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였고, 유럽의회와 회원국은 2021년 4월부터 그 구체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근래에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새로운 문제가 대두하여 독일 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연방의회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sup>35)</sup> 독일 연방정부가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규율을 어떤 방식과 형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사항

유럽연합 외의 주요 국가들도 인공지능에 대한 전략과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국제기구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도 인공지능에 관한 위원회 권고(recommendation)를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는 다음과 같은 핵심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성장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개발과 안녕(well-being), 인간중심적 가치와 공평,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건전성·보안 및 안전, 책임이 그러하다. 이러한 핵심 원리에 수반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는 5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① 인공지능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 ② 인공지능에 대한 디지털 생태계 육성, ③ 인공지능의 정책환경 조성, ④ 인간 능력 형성 및 노동시장 전환에 대한 준비, ⑤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여기에 해당한다.<sup>36)</sup>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이에 기반하여 국내 정책과 국제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5) [https://www.bundestag.de/ausschuesse/a23\\_digitales/Anhoerungen/940256-940256](https://www.bundestag.de/ausschuesse/a23_digitales/Anhoerungen/940256-940256) (최종확인일: 2023. 5. 29.)

36)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449> (최종확인일: 2023. 5. 29.)

인공지능에 의한 인격권 침해와 관련하여, 인간중심적 가치와 공정을 강조하는 점은 유럽연합과 유사하다. 특히 인공지능 행위자는 전 생애에 걸쳐 법치주의, 인권 및 민주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가치에는 자유, 존엄과 자치,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보호(개인정보보호), 차별금지 및 평등, 다양성, 공정성, 사회적 정의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포함한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규제방식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절차적으로 인공지능시스템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강조하고,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사항은 유네스코(UNESCO)의 권고사항과 더불어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중요한 국제적 기준이다. 이처럼 국제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하여 범국가적·국내적 정책결정과 국제적 거버넌스 체계의 상호 조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러하다.<sup>37)</sup>

## V. 국내 인공지능 법률안의 내용 및 검토

### 1. 인공지능 법률안의 특징

최근 국회에 제출된 다수의 인공지능법안이 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이하 “이상민의원안”이라 한다),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의원 대표발의, 이하 “황희의원안”이라 한다),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양향자의원 대표발의, 이하 “양향자의원안”이라 한다),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이하 “이용빈의원안”이라 한다), ‘인

<sup>37)</sup> Oliva J. Erdélyi & Judy Goldsmith, Regul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Proposal for a global solution,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39 (2022), p. 12.

공지능교육진흥법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이하 “안민석의원안”이라 한다) 등이 있다.

위의 법률안은 대부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양향자의원안’에서는 그 제목뿐만 아니라 제1조 목적조항에서도 그러한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장에서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민의원안’의 목적조항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지속적으로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삶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안에도 인공지능 개발 및 기반기술에 대한 지원(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제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2. 적용 대상인 인공지능의 개념

위 법률안에는 인공지능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다. 즉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양향자의원안 제2조 제1호),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이용빈의원안 제2조 제1호),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구현된 것”(이상민의원안 제2조 제1호)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지금까지 법령에 인공지능에 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정의 의미는 크다. 대체로 인간의 지능에 유사한 ‘능력’(예컨대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가진 것을 인공지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 인공지능명령안 제3조 제1항은 인공지능을 “복합적인

목표 하에서 데이터의 획득, 수집한 데이터의 해석, 데이터에서 나오는 정보의 처리나 지식의 추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의 조치로 물질적으로나 디지털 차원에서 작동하는, 인간이 설정한 소프트웨어(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하드웨어)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인공지능 고위전문가그룹(High-Level Expert Group on AI)이 종전의 인공지능 개념을 보완한 것이다. 여기서는 데이터의 수집뿐만 아니라 수집된 데이터의 해석과 처리, 그리고 지식의 추론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물질적으로 작동하거나 디지털 차원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인공지능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인공지능 법률의 인공지능 개념 정의의 규정에 데이터의 수집·처리 등과 연결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다만, 국내 법령안에서는 이를 ‘전자적 방법’이라고 간략히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유럽연합에서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인공지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한편, ‘황희의원안’에는 소위 ‘고위험인공지능’을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각 목에 열거되어 있는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인공지능, 생체인식과 관련된 인공지능, 교통·수도·가스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인공지능, 채용 등 인사 평가 또는 직무 배치의 결정에 이용되는 인공지능, 응급서비스, 대출 신용평가 등 필수 공공·민간 서비스 관련 인공지능, 수사 및 기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에 이용되는 인공지능, 문서의 진위 확인, 위험평가 등 이민, 망명 및 출입국 관리와 관련된 인공지능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전술한 유럽연합 인공지능명령안 부속서 III의 높은 리스크의 인공지능과 유사하다.

### 3.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

위에서 언급한 인공지능 법률안 중 ‘이용빈의원안’ 제32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을 개발·제작하려는 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동 과정과 결과 등이 논리적·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 등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기술 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합리성을 갖추는 등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도 유럽연합의 인공지능정책에서 강조한 신뢰 생태계를 연상시킨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정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이용빈의원안 제32조 제2항 참조). 특히 인공지능의 이용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정비, 인공지능사업자의 신뢰성 관련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같은 항 제2호, 제5호). 그러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는 다양하며,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적으로 입법 책임을 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공지능에 관한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의 연구개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등)나 산업통상자원부(무역, 통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등)가 관할권을 가질 수 있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그 관할권이 모호하다(정부조직법 제29조 및 제37조 참조). 추후 인공지능에 관한 총괄 기관을 어떤 부처로 할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 4. 인격권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위의 ‘양향자의원안’ 제3조에는 인공지능산업에서의 ‘인권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인공지능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공지능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편견’과 ‘차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누구든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생산, 유통, 활용 등 모든 단계에서 차별과 편향이 발생하거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인공지능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용빈의원안’ 제31조 제1항에는 인공지능윤리와 관련하여, 인간중심적 인공지능 정책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첫째, 인공지능의 개발이 인간의 생명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안전성과 신뢰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약자 등 취약계층도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접근함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며,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 등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며 인류의 삶과 번영을 위하여 공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양향자의원안’ 제19조에는 익명 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데이터산업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경제계나 산업계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개인정보의 보호 차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5.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방식 및 분쟁해결

국내 인공지능 법률안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황희의원안에는 고위험인공지능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위험과 리스크는 구별된다고 보는 것이 독일의 통설적 입장이다.<sup>38)</sup> 위험(Gefahr)은 방해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보호재의 손해발생이 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행위나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리스크(Risiko, risk)는 사건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은 없지만,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조사되지 아니하여 불확실한 상태를 말한다.<sup>39)</sup> 그런 이유에서 높은 리스크를 “고위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공지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험이 아니라 리스크이다. 이러한 ‘잠재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리스크를 ‘위험성’ 정도로 표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개념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개념을 법률에 사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황희의원안’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방식으로 유럽연합 인공지능명령안에 포함된 리스크에 기초한 규제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고위험인공지능”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그 이유는 향후 인공지능의 규제대상은 고위험인공지능에 집중될 것이다. 또한 ‘황희의원안’ 제22조에는 소위 “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 책임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고위험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은 해석상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의한 손해는 반드시 인공지능사업자에 의해 초래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기관(행정청 또는 공무원)의 책임으로 발생할 때도 있다. 이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

‘황희의원안’ 제23조에는 특히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인공지능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인공지능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쟁조정은 일종의 대체적분쟁해결(ADR) 수단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분쟁‘조정’이 조정(調整)인지 ‘조정(調停)’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통상적으로 분쟁조정은 전자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황희의원안 제30조에는 ‘조정안’ 작

38) Spawasser/Engel/Voßkuhle, Umweltrecht, 5. Aufl., § 2 Rn. 20.

39) Koch/Schlacke, Umweltrecht, 6. Aufl., § 3 Rn. 6.

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비추어 보면, 후자의 조정(調停)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쟁조정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관리·감독하는 인공지능의 위법한 결정이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국가배상청구소송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이 처분의 성질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제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자동적 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이러한 항고소송이 허용된다. 이 경우 피고는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결정의 관할 행정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자동결정에는 절차적 요건을 비롯한 실체적 판단에 관한 법적 문제가 적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이나 딥러닝에 의한 행정자동결정이 허용될 경우 그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다. 이 경우에도 국가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인공지능사업자(특히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의 범위도 문제가 될 것이다.

## V. 시사점 및 대응방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부상으로 인해 보건 및 의료, 법률, 교통·통신 등 사회기반시설, 에너지 등 각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인류에게 유용한 혜택을 가져줄 것이지만,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이 초래할 법적 문제와 인공지능 규제의 최근 동향도 검토하였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법률안의 내용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법률안 중에는 유럽

연합의 인공지능 정책 및 인공지능 법률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도 인공지능생태계를 경제계와 공공행정의 우월생태계와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생태계로 구분하고, 양자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과 지원은 주로 우월생태계와 관련이 있다. 이에 반해 인공지능이 초래할 리스크는 신뢰생태계와 관련이 있다. 후자에 대한 부분은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며, 인공지능에 대한 리스크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이 제시한 리스크에 기초한 규제 방식은 설득력이 있다. 우월생태계와 관련하여 자율규제가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신산업이나 신성장 등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기술적 견고성이나 안정성을 확보하고, 프라이버시권 보호, 차별금지와 공정성, 책임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 상정된 많은 법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법’에 해당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독일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요강(要綱)법(Rahmengesetz)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인공지능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할 때 그 규율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한 확정이 필요하다. 또한 인공지능에 관한 규율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규율방식은 독일에서 거론되는 규율구조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기본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규제거버넌스의 방식이 바람직하다.<sup>40)</sup> 이러한 규제의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에 귀속된다. 독일에서 논의되는 ‘규제된 자율규제’의 방식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시스템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제어하는 것이다. 이러한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인공지능

40) 근래에 규제거버넌스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학수·박도현·이나래 (2020). 인공지능 윤리규범과 규제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경제규제와 법>, 제13집 제1호, 7-36.).

명령안에는 참고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령에서 인간의 존엄이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인간의 생명·안전에 명백히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은 금지해야 한다. 주목할 부분은 높은 리스크의 인공지능(high-risk AI)에 대한 규제이다. 이러한 높은 리스크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설정해야 한다. 리스크관리시스템은 리스크의 조사 및 관찰, 리스크의 평가, 리스크의 관리 및 통제로 구성된다. 리스크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높은 리스크의 인공지능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등록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높은 리스크의 인공지능에 대한 평가가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리스크의 관리 및 통제에서 규제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율해야 한다. 인공지능 규제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초래할 리스크는 소홀히 취급될 수 없다. 인공지능 규제입법의 정비는 회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다.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할 사항을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리스크가 높은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

## ■ 참고 문헌

- 계희열 (2007). <헌법학(중)>. 서울: 박영사.
- 고학수·박도현·이나래 (2020). 인공지능 윤리규범과 규제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경제규제와 법> 제13집 제1호, 7-36.
- 김광수 (2021). 인공지능 규제의 법체계. <토지공법연구>, 제93집, 217-243.
- 김재선 (2021). 인공지능 안전과 책임 확보를 위한 법제 논의에 관한 검토 - 유럽연합 인공지능 관리 법제 논의에 기초하여. <행정법연구>, 제63호, 157-181.
- 김중권 (2022). 인공지능시대에 자동적 처분의 법제도화(「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후속 과제. <공법연구>, 제51집 제1호, 311-338.
- \_\_\_\_\_ (2021). EU인공지능명령안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 <헌법재판연구>, 제8권 제2호, 65-100.
- 김철수 (2005). <헌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 정남철 (2018). <행정법의 특수문제>. 파주: 법문사.
- \_\_\_\_\_ (2018). 현대국가의 규율구조와 규제된 자율규제: 특히 규제거버넌스의 구축과 실현방안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46집 제4호, 409-437.
- \_\_\_\_\_ (2021).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화에 따른 행정자동결정의 법적 쟁점. <공법연구>, 제50집 제2호, 231-252.
- \_\_\_\_\_ (2022). 유럽연합(EU) 인공지능규범의 제정과 특징. <유럽헌법연구>, 제38호, 215-242.
- 정남철·계인국·김재선 (2020).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4 - 인공지능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제체계와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정소영 (2022).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의 거버넌스 분석 - 유럽인공지능위원회와 회원국 감독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연세법학>, 제39권, 33-65.
- 한수용 (2017). <헌법학>. 서울: 박영사.
- 허영 (2018).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 홍석한 (2022).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유럽헌법연구>, 제38호, 243-282.

- Beck, Susanne, Diskriminierung durch Künstliche Intelligenz, ZRP 2019, S. ff.
- Binder, Nadja Braun, Vollständig automatisierter Erlass eines Verwaltungsaktes und Bekanntgabe über Behördenportale, DÖV 2016, S. 891 ff.
- Ebert/Specker gen. Döhmman, Der Kommissionsentwurf für eine KI-Verordnung der EU, NVwZ 2021, S. 1188 ff.
- Geminn, Christian, Die Regulierung Künstlicher Intelligenz, ZD 2021, S. 354 ff.
- Götz, Volkmar, Allgemeines Polizei- und Ordnungsrecht, 15. Aufl., München 2013.
- Guggenberger, Einsatz künstlicher Intelligenz in der Verwaltung, NVwZ 2019, S. 844 ff.
- \_\_\_\_\_, Öffentliche Verwaltung im Zeitalter der Digitalisierung, Baden-Baden 2019.
- Hornung, Gerrit, KI-Regulierung im Mehrebenensystem, DuD 2022, S. 561 ff.
- Jarass/Pieroth, GG, 10. Aufl., München 2009.
- Koch/Schlacke, Umweltrecht, 6. Aufl., Baden-Baden 2016.
- Schliesky, Digitalisierung: Herausforderung für den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 NVwZ 2019, S. 693 ff.
- Schmidt-ABmann, Eberhard, Das allgemeine Verwaltungsrecht als Ordnungsidee, 2. Aufl., Heidelberg 2004.
- Schröder, Rahmenbedingungen der Digitalisierung der Verwaltung, VerwArch 2019, S. 328 ff.
- Siegel, Th, Automatisierung des Verwaltungsverfahrens: zugleich eine Anmerkung zu § 35a, 24 I 3, 41 IIa VwVfG, DVBl. 2017, S. 24 ff.
- Sparwasser/Engel/Voßkuhle, Umweltrecht, 5. Aufl., Heidelberg 2003.
- Unger, Demokratische Herrschaft und künstliche Intelligenz, in: Sebastian Unger/Antje von Ungern-Sternberg(Hg.), Demokratie und künstliche Intelligenz, S. 113 ff.
- Voßkuhle/Eifert/Möllers(Hg.),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1, 3. Aufl., München 2022.

- Olivia J. Erdélyi & Judy Goldsmith (2022), Regul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Proposal for a global solution,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39, 1–13.
- Hoffmann–Riem (2020),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Challenge for Law and Regulation”, in Th. Wischmeyer/T. Rademacher (Eds), *Regul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pp. 1–29), Cham, Switzerland: Springer.

■ ABSTRACT

---

## Recent Trends and Implications of Regul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 Focusing on the issue of protecting personal rights against artificial intelligence -

Nam-chul Chung  
Professor of Law,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re prominent contemporary topics. The process of digitalization and AI systems entails vast data collection and processing, potentially leading to serious infringement of individuals' rights to personality and privacy by leaking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algorithmic AI systems can distort free political decision-making, while deepfake poses a grave threat to the reputation of government officials. As a consequence, digitalization and AI can undermine fundamental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human dignity, fundamental rights, and democracy. Consequently, regulating AI is necessary, and formulating its design emerges as a crucial issue for modern countries. In particular, AI systems are vulnerable to procedural requirements, necessitating the supplementation of democratic control. Procedural legitimacy should be secured for AI-assisted administrative decisions, and for this purpose, transparency should be guaranteed through procedure disclosure and citizen participation. Various

approaches to regulating AI systems exist, but regulated self-regulation that ensures company self-regulation while reserving state regulation is preferable. For AI implementation in emerging industries, regulatory sandboxes can be beneficial; however, controlling the risks that AI systems can cause is important. Procedures and policies are needed for risk management. In this regard, the draft European Union (EU) Regulation on AI is instructive by prohibiting AI systems that gravely infringe on human dignity or personality rights or pose an imminent threat to human life and safety. Regulating high-risk AI is essential, and for such high-risk AI systems, a risk management system must be established promptly. The risk management system generally consists of risk investigation and observation, assessment, and management and control. It is necessary to register high-risk AI systems in a database and establish a system to track them to investigate risks properly. In addition, based on the recorded data, high-risk AI systems should be assessed continuously throughout their life cycle. Moreover, regulatory governance should be strategically designed to manage and control risks effectively. The digital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r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esent significant challenges for modern countries. Thus, urgent action is warranted for a normative response and an overhaul relevant legislation in light of these developments.

Keywords: Digital Transform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Personal Rights,  
Regulated Self-Regulation

[ 논문투고일 2023. 6. 7.      논문수정일 2023. 7. 11.      게재확정일 2023. 7. 24. ]

## 인공지능과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연구\*

최 종 선\*\*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조정실 법무팀 차장

###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유통하는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 및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인공지능 및 허위조작정보의 명확한 법적 개념을 마련하지 않고 규제 입법을 하는 경우 어떤 내용의 인공지능 또는 허위조작정보가 규제 대상이 되는지, 어느 범위까지 적법한지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공지능 및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개념, 보호 대상 등이 불명확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용 가능한 현행 법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축적하여 개념 정의, 보호 범위 등을 명확하게 마련할 수 있는 시점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둘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편향되는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정보 등으로 인하여 특정인·특정 집단·특정 의견 등을 무시하거나 차별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이용자가 이러한 알고리즘 편향성을 인식하

\* 본 논문은 저자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 의견이 아닌 개인적 견해를 밝힙니다. 세심하고 정성스러운 심사를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lso I would like to thank Professor Jackie Harrison(Head of department) and Dr Irini Katsirea(Reader in International Media Law) for inviting me as Advanced Visiting Fellow at Sheffield University's department of Journalism in the United Kingdom.

\*\* c0j0s0@hanyang.ac.kr, JO4CJ@sheffield.ac.uk, 법학박사

지 못하여 정확한 가치 판단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허위 조작정보 확산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편향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알고리즘에 대하여 공인된 기관이 마련하여 제공한 알고리즘 검증프로그램을 통하여 언제든지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진실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과정을 이용자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정보의 추천서비스를 자제하도록 하여 확증편향의 문제점도 함께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규명하여야 한다. 사법부의 종국적 판단 이전에 행해진 행정부의 허위성 판단이 사법부의 종국적 판단과 상이한 경우에는 인터넷상 언론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허위조작정보 규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럽연합과 같이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선별적이고 순차적인 규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편향된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을 통하여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함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 불분명하여 민사책임에 있어서의 행위책임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한, 편향된 인공지능을 통하여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 삭제 또는 차단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가해자 특정, 인공지능이 악용되었다는 사실 및 특정 정보의 허위성 등을 피해자가 입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그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 등의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 상대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주제어: 인공지능, 허위조작정보, 알고리즘, 딥페이크, 여론조작

## 목 차

- I. 서론
- II. 인공지능과 허위조작정보
  - 1. 정의
  - 2. 인공지능 활용 및 허위조작정보 사례
  - 3. 인공지능 및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제도
  - 4. 소결
- III. 법률적 쟁점 및 시사점 제언
  - 1. 법률적 쟁점
  - 2. 인공지능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시사점 제언
- IV. 맺은 말

## I. 서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주택 안의 전자 장비를 제어하거나, 공장 및 농장 등의 설비를 제어하는 스마트 컨트롤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자동차 자율주행, 지도나 지름길 안내(navigation), 텍스트나 음성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챗봇(chatbot) 등의 서비스는 인간의 생활에 편의를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궁금한 정보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 대화방식으로 수많은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ChatGPT<sup>1)</sup>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한편,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전파하는 데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왜곡성 및 허위성 등을 판단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어렵게 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즉, 객관성·투명성·중립성 등을 갖춘 인공지능 기술 또는 진실한 사실 정보 그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특정한 결과를 유도하거나 얻어내기 위하여 인간을 속이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하려는 의도성을 지닌 인공지능 기술 또는 정보는 여

<sup>1)</sup> <https://openai.com/blog/chatgpt> (2023년 5월 4일 방문)

론을 호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 개인의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사회적 차별 등 법적 권리를 제한<sup>2)</sup>하여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어렵게 하여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다양성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때로는 많은 시간이 지난 후 거짓이라고 믿었던 것이 진실로 판명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라는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일반인들이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정치적, 성별, 지역별, 국가별 대립 구도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등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 스스로 올바르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하여 민의(民意)의 정확한 전달을 어렵게 한다. 또한, 특정 목적의 거짓된 정보 또는 유도성 정보 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스스로 그 정보의 거짓 및 유도 의사 등을 입증한 후 손해배상 또는 해당 정보 삭제 등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그 입증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기간 동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미 발생한 손해를 완전하게 구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 또는 정보가 진실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목적성·유도성을 지닌 허위의 사실을 전달하는지 여부를 이용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공지능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률적 정의규정,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 영역, 관리·감독 기구의 권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통 시킨 자에 대한 제재수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선행연구는 약 128편이 넘을 정도로 방대하다(DBpia 검색 기준). 특히, 신입 지원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허위 혹은 과

<sup>2)</sup> <https://www.osce.org/files/f/documents/6/8/302796.pdf> (2023년 5월 4일 방문)

장하여 채용담당자들의 검증방법에 대한 논문(구인혁, 2008)이 발표된 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인터넷상 여론조작 실태(강지현, 2019), 가짜뉴스 규제법안(홍완식, 2019), 인터넷상 허위조작행위에 대한 규제방향(박상민, 2019), 가짜뉴스 용어 및 개념정의(김민정, 2019),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지성우, 2019) 및 비판적 고찰(최종선, 2020),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법적 검토(최승필, 2020)”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조작정보(정영주·홍중윤·박유진, 2021),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헌법적 한계(이인호·이준형, 2021)에 관한 연구, 2022년에는 미국(고수운, 2022), 독일(박용숙, 2022), 프랑스(최지선, 2022), (강명원·심우영, 2022)의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선행연구 초창기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헌법적 한계 등의 비판적 고찰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규제 중심에서 신중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로 전환된 것이 특징이며, 최근에는 해외의 허위조작정보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연구가 되는 점이 특징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선행논문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공지능과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인공지능과 허위조작정보의 상관관계 및 악용 사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유통하는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국내외 법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고 관련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 II. 인공지능과 허위조작정보

### 1. 정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는 1956년에 미국 컴퓨터

과학자인 존 매카시(John McCarthy) 교수가 개최한 다트머스 회의(Dartmouth Conference)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존 매카시는 인공지능에 대하여 “과학과 기술 영역에서 지능 컴퓨터 프로그램 등 지능형 기계를 만드는 것으로 인간의 지능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관련이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식별가능한 방법으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sup>3)</sup> 또한 2017년 1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연합 가짜뉴스(fake news)와 관련된 회의에서, “뉴스라면 가짜가 아니고, 그것이 허위라면 뉴스가 될 수 없다”는 가짜뉴스(fake news)라는 용어의 모순성이 있으며, 모든 뉴스를 훼손하는 부정적 효과를 우려할 때,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논의 후<sup>4)</sup>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인공지능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명확하지 않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으로 이해한다.<sup>5)</sup> 한편, 유럽연합에 따르면, 경제적·정치적 등의 이득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거짓된 정보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허위조작정보(disinformaion)로 이해하고 있다.<sup>6)</sup>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개인, 사회집단, 조직 또는 국가를 고의로 속이거나 조작 또는 유해를 가하는 정보를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로 이해하면서 목적성, 의도성 등 유무에 따라 오보정보(misinformation ;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자신도 모

3) <http://jmc.stanford.edu/artificial-intelligence/what-is-ai/index.html> (2023년 5월 4일 방문)

4) <https://www.unesco.org/en/articles/solving-fake-news-starts-avoiding-term> (2023년 5월 8일 방문)

5)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2023년 5월 4일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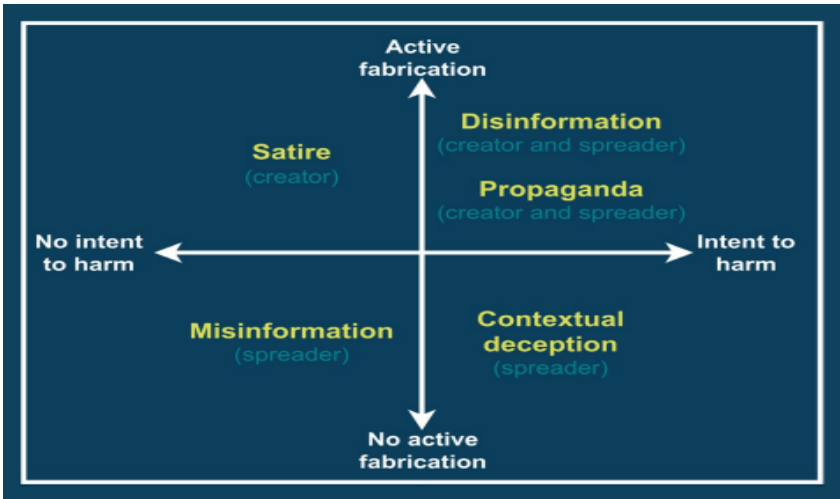
6)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online-disinformation> (2023년 5월 4일 방문)

르게 공유되는 정보로 개인, 사회집단, 조직 또는 국가를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조작 또는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는 것으로, 정보 유포자(spreeder)가 초기 오보정보를 생산하거나 조작하지 않는 정보), 문맥상 기만정보(Contextual deception ; 해당 기사와 일치하지 않는 헤드라인 또는 자신의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실을 잘못 전달하는 등 허위조작정보와 달리 정보 자체는 사실이고 조작되지 않았지만 그 정보가 사용되는 방식이 정직하지 않고 사람을 교묘하게 조작하거나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진 정보), 선전정보(Propaganda ; 정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및 개인이 집단적 사고방식, 가치, 견해 등을 채택하고 전파할 목적의 정보), 풍자정보(Satire ; 유머와 과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아이디어를 비판하는 언어, 영화 또는 기타 예술 작품으로 유머와 재치를 사용하여 사회의 이슈에 관심을 끌 수 있으나, 풍자정보가 공유되고 재공유됨에 따라 풍자의 본래 취지가 의도적으로 전파자에 의해 상실되는 경우 시청자들은 본래의 의미를 오해할 수 있다)와 구별하고 있다.<sup>7)</sup> 유네스코 “저널리즘, 페이크 뉴스와 허위조작정보 : 저널리즘 교육과 훈련을 위한 핸드북”<sup>8)</sup>은 특정인, 사회그룹, 조직 또는 국가에게 해를 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생산한 거짓된 정보(disinformation), 해를 가할 의도로 생산되지 않은 거짓된 정보(misinformation), 특정인, 사회그룹, 조직 또는 국가에게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는 현실에 기초한 정보(mal-informa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7) The Committee on Digital Economy Policy (CDEP), Disentangling untruths online : Creators, spreaders and how to stop them, OECD Going Digital Toolkit, 2022 ; [https://goingdigital.oecd.org/data/notes/No23\\_ToolkitNote\\_UntruthsOnline.pdf](https://goingdigital.oecd.org/data/notes/No23_ToolkitNote_UntruthsOnline.pdf) (2023년 5월 8일 방문)

8) <https://en.unesco.org/fightfakenews> (2023년 5월 12일 방문)

〈표 1〉 인터넷상 거짓 정보 유형(A typology of untruths online)<sup>9)</sup>



인공지능 기술 및 구현방식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부족하고, 정보의 허위성 및 게시자의 조작 의도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여 인공지능 및 허위조작정보의 범위 설정에 대한 이견(異見)이 법적 개념 정의의 어려움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관되고 완벽한 개념 정의는 아니지만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특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알고리즘 설계·운영하는 등의 수단을 활용하는 자동화된 컴퓨터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허위조작정보를 “방송·신문 등 기존 미디어 매체 또는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매체뿐만 아니라 음성·이미지·영상·문자 등 정보 유형을 불문하고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는 내용의 정보<sup>10)</sup>”로 정의하기로 한다.

<sup>9)</sup> Molly Leshner, Leveraging AI, big data analytics and people to fight untruths online, 2022 ; <https://oecd.ai/en/wonk/untruths-online> (2023년 5월 8일 방문)

<sup>10)</sup> 최중선 (2020). 허위조작정보 규제 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홍익법학>. 제21권 제1호, 367.

## 2. 인공지능 활용 및 허위조작정보 사례

### 가. 인공지능

유럽연합은 인공지능에 관한 백서에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과 신뢰 구축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기본권에 근본적인 가치를 두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인간중심과 감독(Human agency and oversight), 기술의 견고성과 안전성(Technical robustness and safety),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관리(Privacy and data governance), 투명성(Transparency), 다양성·차별금지·공정성(Diversity, non-discrimination and fairness), 사회적·환경적 복지(Societal and environmental wellbeing), 책임성(Accountability)” 7가지를 인공지능 윤리지침 필수요소(Guidelines on trustworthy AI in April 2019)로 하고 있다.<sup>11)</sup>

#### (1) 인공지능 시스템

인공지능 시스템이란 머신러닝, 로직(Logic) 및 지식 기반 접근법, 통계산출 등의 방식 중 한 가지 이상을 적용하여 개발된 것(ANNEX I)으로, 인간이 정한 목적을 위해 콘텐츠·예측·추천·환경에 영향을 주는 결정 등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sup>12)</sup> 인공지능 시스템은 기계 또는 인간이 데이터를 입력하면 현실과 가상의 환경을 판별하고 자동화된 기계학습 분석을 통하여 원하는 결과물을 생성하는 구조

11) 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 A European approach to excellence and trust, 2020 ; [https://commission.europa.eu/system/files/2020-02/commission-white-paper-artificial-intelligence-feb2020\\_en.pdf](https://commission.europa.eu/system/files/2020-02/commission-white-paper-artificial-intelligence-feb2020_en.pdf) (2023년 5월 9일 방문)

12) EU Artificial Intelligence Article 3 Definitions ;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the-act/> (2023년 5월 30일 방문)

로 시스템 자동화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sup>13)</sup>

## (2) 인공지능 활용

인공지능은 농업, 건강, 과학, 교육, 노동, 산업, 사회복지, 조세, 환경, 무역,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sup>14)</sup> 인공지능은 인간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전략적인 기술로,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정밀한 의료진단과 효과적인 질병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농업 생산성 향상, 기후 변화 대응, 생산성 향상, 예측관리 기술을 통한 생산시스템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sup>15)</sup>

미디어 분야에서는 언론인들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관련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알고리즘(algorithms)과 자동화(automation) 기술을 사용하는 인공지능 저널리즘(AI Journalism), 데이터 또는 경험을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학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을 뜻하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sup>16)</sup>) 등이 활용되고 있다.<sup>17)</sup>

런던정치경제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미디어 씽크탱크 폴리스(media think-tank Polis)가 인공 지능 및 관련 기술과 관련하여 32개국의 71개 뉴스 조직 116명의 기자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된 Journalism AI 보고서<sup>18)</sup>에 따르면, 응답자

13) OECD AI 정책연구소, <https://oecd.ai/en/ai-principles> (2023년 5월 8일 방문)

14) <https://oecd.ai/en/policy-areas> (2023년 5월 8일 방문)

15) <https://ec.europa.eu/futurium/en/european-ai-alliance/have-your-say-artificial-intelligence-white-paper-european-approach-excellence.html> (2023년 5월 9일 방문)

16) National Ai Initiative Act SEC. 5002, [15 U.S.C. 9401] DEFINITIONS, (11) MACHINE LEARNING ; <https://www.ai.gov/wp-content/uploads/2023/04/National-Artificial-Intelligence-Initiative-Act-of-2020.pdf> (2023년 5월 30일 방문)

17) <https://www.eidosmedia.com/blog/tecnology/AI-in-Journalism> (2023년 5월 10일 방문)

18) <https://blogs.lse.ac.uk/polis/2019/11/18/new-powers-new-responsibilities/> (2023년 5월 10일 방문)

절반 미만은 뉴스 수집(news gathering) 목적, 3분의 2는 뉴스 생산 목적, 절반 이상은 뉴스 배포를 위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기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68%), 이용자에게 보다 적절한 콘텐츠 제공(45%), 업무 효율성 향상(18%)’이 인공지능 사용 동기가 되었다고 하며, 대부분의 답변자는 언론기관이 윤리적이고 편집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 저널리즘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알고리즘이 편향되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부정확성 또는 왜곡으로 특정 사회 집단이나 특정 견해를 가진 자에 대한 차별의 우려가 있고, 거짓된 정보 등을 판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거짓된 정보 확산에 악용될 수 있어 국민들의 편견 또는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 나. 허위조작정보 사례

### (1) 대선 후보자 비위 오인 사건

2016년 12월 미국 대선 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워싱턴 인근 피자 가게 코메트 핑퐁(Comet Ping Pong) 지하실에서 아동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이트를 통하여 확산되자,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피자가게를 직접 찾아가 충격을 난사한 사건이다.<sup>19)</sup>

### (2) 아동납치범 오인 사건

2017년 5월 인도 자르칸드 주(Jharkhand state)에서 아동 유괴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는 잘못된 소문(rumours)을 진실로 믿은 사람들이 무고한

<sup>19)</sup> <https://www.nytimes.com/2016/12/05/business/media/comet-ping-pong-pizza-shooting-fake-news-consequences.html> (2023년 5월 12일 방문)

시민 6명을 아동납치범으로 오인하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잘못된 소문이 언제, 어떻게 퍼지게 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sup>20)</sup>, 서양의 국가와 달리 인도의 가짜 뉴스는 대부분 왓츠앱(WhatsApp)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전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등 휴대폰으로 접한 오인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sup>21)</sup>

### (3) 유권자 오인 정보 유통 사건

공직선거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sup>22)</sup>되면서(제82조의4) 후보자, 정당 등이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뉴미디어를 활용<sup>23)</sup>한 선거운동(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장이 산하 사이버팀 직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작성, 찬반클릭, 트윗과 리트윗 행위 등의 사이버 활동을 하면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행위<sup>24)</sup>은 공무원의 지위를 활용하여 인터넷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유권자 오인 정보를 전달한 사건이다. 인터넷은 접근성, 전파성 및 비용 측면에서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sup>25)</sup>되기도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 또는 딥페이

20) <https://www.bbc.com/news/world-asia-india-39971412> (2023년 5월 12일 방문)

21) <https://www.bbc.com/news/world-asia-india-40657074> (2023년 5월 12일 방문)

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 1997. 11. 14.] [법률 제5412호, 1997. 11. 14., 일부개정] 제82조의3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통신의 게시판·자료실등 정보저장장치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여 선거구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제방·토론실 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3) 인터넷상의 카페 활동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활동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인터넷 카페의 개설 경위와 시기, 구성원 및 온라인과 오프라인상 활동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2190 판결

24)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25)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결정 등

크<sup>26)</sup> 기술 등을 이용한 왜곡 정보 등이 인터넷에 확산되는 경우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 (가) 한국

#### 1) 대선후보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사건

이회창이 1997. 12. 18.자 제15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신한국당 후보로 선출된 1997. 7.경부터 국민회의 의원들은 이회창 후보의 장남과 차남이 모두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판정을 받았다가 입영 시 정밀신체검사에서 체중미달로 5급 면제판정을 받고 귀향처리된 것에 비리가 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하였으나,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회창은 약 2%의 지지율 차이로 낙선하였다.<sup>27)</sup>

26)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이미지 또는 영상속의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등의 미디어 합성기술로 이해되고 있다. 딥페이크라는 용어는 2017년 레드(Reddit) 이용자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인터넷 뉴스와 검색 사이트에 얼굴 변환 기술을 사용한 포르노 영상을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었다. ; <https://mitsloan.mit.edu/ideas-made-to-matter/deep-fakes-explained> (2023년 5월 17일 방문)

27) 그 후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의혹 보도의 진실성 및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을 밝히면서 “이 사건 보도들로서 원고(이회창 후보를 추천하고 선거운동을 했던 정당 ; 한나라당)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크게 훼손되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의혹 제기자 및 이를 언론 보도한 자)은 그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혹 제기자)의 경우 자신의 발언 내용이 사회적으로 미친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병역면제비리 의혹과 관련한 제보를 일삼은 점에 비추어 배상할 금액을 1억원, 의혹을 보도한 자들에게는 각각 3천만 원, 2천만 원의 배상 금액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3332 판결, 2002. 11. 27. 제16대 대통령 후보 이회창의 아들 이정연이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것은 비리라는 취지로 이회창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179센티미터 45킬로그램 인간미이라"라는 제목의 책자를 출간하고, 2002. 12. 3. 한겨레신문에 179cm의 키에 49kg의 몸무게는 불가능하므로 이정연이 위 조건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것은 비리라는 취지로 이회창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물을 게재한 사실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은 부족하므로, 이것이 진실임을 전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책자의 발간과 광고물의 게재 행위에 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2) 인공지능 대선후보 선거운동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후보자가 등장하여 가상 후보자를 통한 선거운동이 등장하였다.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므로 가상 후보자를 활용한 선거운동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진실이 아닌 사실이나 유권자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방해요소가 된다. 즉, AI 후보자는 실제 후보자의 외모와 목소리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은 실제 후보자와 가상의 후보자를 구별하기 어렵고, 실제 후보자의 국정철학, 각종 정책기조들과 다른 내용이 전달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림 1] AI 대통령 후보 이미지



(나) 미국

1)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오인 정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 클린턴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내용, 클린턴이 IS를 포함한 이슬람 지하디스트에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는 내용 등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전파된 바 있다. 오하이오 주립 대학의 연구<sup>28)</sup>에 의하면, 2012년 오바마 대통령 지지자 중 일부는 위와 같은 사

없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062 판결

28) Richard Gunther, Paul A. Beck, Erik C. Nisbet (2018). Fake News May Have Contributed to Trump's 2016 Victory, Ohio State University.

실이 아닌 정보를 진실이라고 믿고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당의 대통령 후보인 클린턴을 지지하지 않는 등 다수의 유권자들이 위와 같은 사실이 아닌 정보로 인하여 투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2) 트럼프 체포 이미지 유포 사건

2023년 3월 21일, 영국 온라인 탐사매체 벨링캣(Bellingcat) 설립자인 엘리엇 히긴스(Eliot Higgins)의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진행되는 사진<sup>29)</sup>이 게시된 후, 약 652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직전 성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뉴욕 맨하튼지검에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 기사를 접한 엘리엇 히긴스는 이를 시각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AI art generator)을 이용하여 생성한 체포 이미지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에게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다수의 이용자들은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체포된 것으로 착각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었다.<sup>30)</sup>

## 3) 2020년 대통령 선거 개표 의혹 보도 사건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후보가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투표 및 개표 집계기가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동되도록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었으며, 집계 기기에 결함이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주장은 폭스뉴스 기사로 보도되면서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의심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였다. 2021년 3월 투표 시스템 회사 도미니언은 이런 의혹 보도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폭스 뉴스 미디어를 상대로 16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29) <https://twitter.com/EliotHiggins/status/1637927681734987777> (2023년 5월 23일 방문)

30)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3/03/22/trump-arrest-deepfakes/> (2023년 5월 23일 방문)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 회사(Dominion Voting System Corporation) 등의 원고와 폭스 뉴스 네트워크(Fox News Network) 및 폭스회사(Fox Corporation)의 피고 사이의 명예훼손 소송<sup>31)</sup>에 대하여,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Delaware Courts)이 배심원들과 재판을 시작하기 전인 2023년 4월 18일 양 당사자는 피고가 원고에게 약 7억 8,750만 달러(약 1조 391억원)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다.<sup>32)33)</sup>

#### (다) 유럽

##### 1) 독일

2017년 실시된 연방의회 선거 이슈 중 하나가 난민 정책이었으며, 사회민주당(SPD)은 난민 가족입국 완화정책을, 기사당(CSU)은 난민 상한제를, 기민당(CDU)은 난민 가족입국 강화정책을 주장하였다. 기민당(CDU)과 사회민주당(SPD)의 양자토론 과정에서 방송 토론 패널이 사회민주당(SPD) 마르틴 슐츠(Martin Schulz)의 과거 난민에 대해 “난민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것은 금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유럽 드림(dream)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다”라는 연설 내용을 “난민이 금보다 낫다”고 연설한 것으로 왜곡하여 질문하면서 보여준 영상 및 사진이 방송을 통해 전달<sup>34)</sup>되면서 유권자들에게 ‘난민 수용을 무조건적으로 찬성한다’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2017년 독일 공영방송 ZDF 기자들은 거짓된 정보가 많이 유통되고 있는 페이스북에 극우주의 성향의 게시글을 유통시키면 어떤 일이

31) US Dominion, Inc., et al. v. Fox News Network, LLC, et al.; <https://courts.delaware.gov/opinions/> (2023년 5월 25일 방문)

32) <https://www.foxnews.com/media/fox-news-media-dominion-voting-systems-reach-agreement-over-defamation-lawsuit> (2023년 5월 25일 방문)

33) <https://www.nytimes.com/video/business/100000008864999/dominion-fox-news.html?searchResultPosition=9> (2023년 5월 25일 방문)

34)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jongheesalo&logNo=221353750786> (2023년 5월 26일 방문)

발생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가상의 계정(한스마이어)을 만들고 “난민들을 집으로 들이지 말라, 메르켈 총리의 난민 정책을 비판하면 자녀의 양육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등의 극우주의 성향의 게시글을 유통시키자 극우 성향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친구 요청을 많이 하였고, 이러한 게시글에 대해 어떠한 반대 의견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실제 통계를 근거로 “난민 수가 증가하였지만 범죄는 크게 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게시자가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등 반응을 보이며 친구 관계를 끊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sup>35)</sup>

## 2) 영국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the Department of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보고서에 의하면 허위조작정보는 분열·과장·왜곡을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라고 평가한다. 러시아 투데이(Russia Today ; RT)와 스푸트니크(Sputnik)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된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와 관련된 261개의 미디어 사설을 발표하였는데, RT와 스푸트니크는 브렉시트 탈퇴 캠페인 기간 동안 투표 포기 정보보다 유럽연합을 반대하는 정보가 트위터에서의 적극적으로 이용된 것을 확인하였고, 스완지 및 버클리 대학교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브렉시트 탈퇴 캠페인 48시간 동안 러시아 계정에서 브렉시트 관련 트윗 156,252개의 게시물과 45,000개의 브렉시트 관련 메시지가 게시된 것을 확인한 바 있다.<sup>36)</sup> 이 연구 결과는 영국 내 중요한 브렉시트 탈퇴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에 러시아가 트위터를 통하여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하면서 개입하였다는 정황을 보여주었다.

<sup>35)</sup>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424373> (2023년 5월 27일 방문)

<sup>36)</sup> House of Commons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 (2018). Disinformation and fake news\_Interim Report, 43 ;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719/cmselect/cmcumeds/363/363.pdf> (2023년 5월 28일 방문)

### 3. 인공지능 및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제도

인공지능 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률 위반 우려가 있게 된다. 문제는 인공지능 기술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이용자들이 그 악용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앞서 살펴보았듯이 민주주의의 중심축을 이루는 다양한 의견 개진 및 토론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은 이성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함에 있어 방해요소가 되어 여론을 호도하는 교묘한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규제 법률은 신기술 개발 창의성과 속도를 저하시키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조작정보 규제 법률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다양한 의견 수렴의 수단이 되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한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sup>37)</sup> 인공지능 악용 및 이를 이용한 허위조작정보 유통의 문제점 예방을 위한 규제 법률과 신기술 촉진 및 헌법상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균형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국의 문화적·정치적 여건

37) 인공지능을 통한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는 법률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 대상과 범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이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 법률이 시행된다면 규제자의 주관적 재량이 개입될 우려가 있고, 피규제자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어떤 표현을 함에 있어 위축될 수 있고(chilling effect) 이로 인하여 표현행위를 하기 전에 자기 검열을 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위험성은 결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게 된다. 또한 모든 허위조작정보가 헌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성의 정도, 게시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대상 여부를 판별해야 할 것이다. ; 김현귀 (2016).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규제. <헌법이론과 실무>, A-3, 70면(결론적으로 혐오표현도 일종의 표현행위인 이상 표현의 자유에 의한 헌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무리 그 내용이 혐오를 조장하거나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공론에 아무런 기여가 없을 정도로 순수하게 혐오적인 표현이 아닌 이상에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거나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 또는 학문적·예술적 표현인 경우까지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인공지능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각국의 법제도를 살펴보고 바람직하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 가. 인공지능 관련 법규범

### (1) 국내

#### (가) 인공지능 관련 법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제21대(2020-2024) 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로 검색(2023년 5월 29일 현재)을 하면, 총132건의 의안이 검색된다. 이 법안 중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거나,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존엄성 침해, 차별·편견 등의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률안은 “[2110148]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안민석의원 등 10인), [2101823]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의원 등 11인), [2103515]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양향자의원 등 23인), [2104772]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민형배의원 등 10인), [2111261]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필모의원 등 23인), [2111573]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이용빈의원등31인), [2113509]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윤영찬의원 등 12인), [2115314]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과대학교법안(안민석의원 등 13인), [2118726]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2인), [2120353]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의원 등 14인)” 10개 법안으로 이 중 7개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악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 인권 침해 등의 문제점 예방도 함께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나)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sup>38)</sup>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sup>39)</sup>의 편향적·차별적 정보 제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 6월 30일 추천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자율적 실천규범을 제시하였다. 이 원칙은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효과에 대한 정보 공개,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투명성, 편향성을 배제하는 공정성,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sup>40)</sup>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4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이행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에 기초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권고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호,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및 설명 의무 부과, 최소한의 개인정보 활용,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의 권리 등의 차별금지, 인공지능 위험성에 따른 규제 차별화” 등이다.

(2) 국외

(가) 미국

---

38)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200&boardId=1113&boardSeq=51454> (2023년 5월 29일)

39)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콘텐츠 배열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디어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노출시키는 서비스를 뜻한다.

40)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7961&menuid=001004002001> (2023년 5월 29일 방문)

1) 트럼프 정부 인공지능 행정명령(American AI Initiative)<sup>41)</sup>

2019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제13859호)으로 미국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발표면서 인공지능 연구 투자 확대, 인공지능 컴퓨팅 및 데이터 소스 활용, 인공지능 기술 표준 마련 등 5가지 목표를 핵심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sup>42)</sup>을 발표하면서 경제와 국가 안보, 사생활 보호, 시민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인권·법치주의·저작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미국인의 가치를 함께 보호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 2) 2020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법(The National AI Initiative Act of 2020)

2020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법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의 목적을 위해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후에는 그 효력을 다하는 일몰제로 규정되어 있다.<sup>43)</sup>

## (나) 유럽

1) 유럽연합(EU) : 인공지능의 조화로운 규제를 위한 제안(Proposal for a Regulation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_ Artificial Intelligence Act<sup>44)</sup>)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1년 4월 21일 인공지능의 조화로운 규칙 제정(인공지능법)을 제안하였다. 2017년 유럽 이사회는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호, 디지털 권리, 윤리 기준 등의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

41)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ai/executive-order-ai/> (2023년 5월 30일 방문)

42) Guidance for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s ;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11/M-21-06.pdf> (2023년 5월 30일 방문)

43) National Ai Initiative Act SEC. 5101. [15 U.S.C. 9411]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 <https://www.ai.gov/wp-content/uploads/2023/04/National-Artificial-Intelligence-Initiative-Act-of-2020.pdf> (2023년 5월 30일 방문)

44) [https://eur-lex.europa.eu/resource.html?uri=cellar:e0649735-a372-11eb-9585-01aa75ed71a1.0001.02/DOC\\_1&format=PDF](https://eur-lex.europa.eu/resource.html?uri=cellar:e0649735-a372-11eb-9585-01aa75ed71a1.0001.02/DOC_1&format=PDF) (2023년 5월 30일 방문)

2019년에는 유럽 시민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2019 Conclusions on the Coordinated Plan on the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Made in Europe)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영향 또는 새로운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020년 2월 19일 인공지능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향한 백서를 발표하면서 인공지능의 보급 확대와 함께 EU 가치, 기본권, 신뢰성, 인간의 존엄성 등의 위험에 대응할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특히 2020년 10월 21일에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불투명성(opacity)·복잡성(complexity)·편향성(bias)·예측불가능성(unpredictability)·부분적 자동화(partially autonomous behaviour)에 있어 기본권 및 법률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2) 영국 :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혁신적 접근 방법에 관한 정책백서  
(Policy paper, A pro-innovation approach to AI regulation)<sup>45)</sup>

2023년 3월 29일 영국은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혁신적 접근 방법에 관한 정책백서를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이점도 있지만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로 인하여 새로운 위험 또는 인공지능 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고,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위험·편견·차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고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인공지능 규제의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경제 분야 인공지능 이용과 개발 책임을 알리고 안내하기 위해 “안전성·보안성 및 견고성(Safety, security and robustness), 적절한 투명성과 설명가능성(Appropriate transparency and explainability), 공정성(Fairness), 책임성과 거버넌스(Accountability and governance), 경쟁성과 보상(Contestability

4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i-regulation-a-pro-innovation-approach/white-paper> (2023년 5월 30일 방문)

and redress)”의 5대 원칙을 혁신프레임워크 토대라고 강조하고 있다.

3) 독일 : 연방정부 인공지능 전략(Federal Government Strategy on Artificial Intelligence)<sup>46)</sup>

2018년 7월 18일 독일 연방정부는 인공지능 전략을 위한 주요 내용을 발표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사생활보호 및 평등의 원칙 등의 유럽인의 기본적 가치를 존중·불법적인 차별금지·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의 시민 참여·고도의 보안 수준 유지 등을 강조하였으며 인공지능 개발자와 이용자 사이에 윤리적·법적 한계를 알리고 높은 수준의 법적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20년에는 인공지능의 이용으로 경제적·사회적·개인적 이익도 도모하지만 그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투명성·추적가능성·적절한 통제수단·검증가능성·신뢰성·보안·견고성·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알고리즘으로 인한 왜곡·차별·조작 또는 기타 오용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47)</sup>

## 나.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규범

### (1) 국내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제21대(2020-2024) 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허위조작정보’이라는 용어로 검색(2023년 5월 29일 현재)을 하면, 총 19건의 의안이 검색되며, ‘가짜뉴스’라는 용어로 검색하면 총 17건의 의안이 검색된다. 허위조작정보와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지금까지도 혼용되

46) [https://www.bmwk.de/Redaktion/EN/Downloads/E/key-points-for-federal-government-strategy-on-artificial-intelligence.pdf?\\_\\_blob=publicationFile&v=1](https://www.bmwk.de/Redaktion/EN/Downloads/E/key-points-for-federal-government-strategy-on-artificial-intelligence.pdf?__blob=publicationFile&v=1) (2023년 5월 31일)

47) [https://www.ki-strategie-deutschland.de/files/downloads/Fortschreibung\\_KI-Strategie\\_engl.pdf](https://www.ki-strategie-deutschland.de/files/downloads/Fortschreibung_KI-Strategie_engl.pdf) (2023년 5월 31일 방문)

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양자의 명확한 법률적 정의가 마련되지 않은 점, 진실하지 않은 정보가 뉴스라는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점 등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안 중에는 언론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211222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영상과 음성을 조작해 가짜 영상·음성을 만들어 내는 딥페이크(Deepfake) 정보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법안([21144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211070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미디어의 역기능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을 강조하는 법안([2103202]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필모의원 등 12인) 등이 대표적이다.

## (2) 국외

### (가) 미국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언방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48)</sup> 또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sup>48)</sup> [https://www.senate.gov/civics/constitution\\_item/constitution.htm#amdt\\_1\\_\(1791\)](https://www.senate.gov/civics/constitution_item/constitution.htm#amdt_1_(1791)) (2023년 6월 3일 방문) ; Amendment I (1791)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Decency Act of 1996 ; CDA) 제230조<sup>49)</sup>는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 중 일반 통신사업자 규제(common carrier regulation)에 관한 조항으로 쌍방향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sup>50)</sup>가 “해당 정보가 헌법상 보호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음란 또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거나 폭력적 정보 등”을 선의로 차단 및 조치 등을 취하더라도 민사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근거 규정이다. 이처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미국에서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 (나) 유럽

##### 1) 유럽연합(EU) :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sup>51)</sup>)

불법 콘텐츠,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또는 기타 사회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정된 디지털서비스법은 이용자 보호 원칙 등을 포함한 기본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안전성·예측가능성·신뢰성이 담보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개서비스 사업자의 적절한 기능 등에 대해 규율한다. 호스팅 사업자의 경우, 불법적인 행동 또는 불법 콘텐츠 유통 여부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불법 콘텐츠 유통 등을 인지한 경우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등을 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제6조)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포함한 호스팅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명백한 불법 콘텐츠를 빈번히 제공하는 이용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전 경고 후 그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제

49)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47-section230&num=0&edition=prelim> (2023년 6월 3일 방문)

50) 면책 규정의 대상이 되는 쌍방향 서비스 제공자(interactive computer service)에는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해당된다. ; <https://www.supremecourt.gov/qp/21-01333qp.pdf> (2023년 6월 3일 방문)

51)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22R2065> (2023년 6월 3일 방문)

23조), 월 평균 이용자 수가 4,500만명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추천시스템(Recommender systems)에 적용되는 옵션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제38조).

2) 영국 :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Counter-Disinformation Data Platform ; CDDP<sup>52)</sup>)

CDDP는 잠재적 해를 유발하거나 공익을 위협하는 인터넷상 잘못된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온라인 오보 및 해를 입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작성된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플랫폼이다.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of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 DCMS)에서 영국 개인정보보호법(UK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GDPR)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소셜미디어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분석하여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 유해성에 대응하기 위한 증거기반의 접근법을 활용한다. 이러한 정보 수집의 근거 법률은 영국 GDPR(Article 6(1)(e)) 및 2018년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8<sup>53)</sup> 8(d))으로, 공공기관 직무 수행 및 공익을 위해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고, 특히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러한 데이터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3) 독일 :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법 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Gesetzes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 NetzDG<sup>54)</sup>)

---

52)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unter-disinformation-data-platform-privacy-notice/counter-disinformation-data-platform-privacy-notice> (2023년 6월 5일 방문)

53)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8/12/section/8/enacted> (2023년 6월 5일 방문)

54) <https://www.gesetze-im-internet.de/netzdg/BJNR335210017.html> (2023년 7월 10일 방문)

2017년 10월 1일 시행된 NetzDG은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거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텔레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소셜 네트워크)에게 적용된다. 이 경우 텔레미디어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지는 저널리즘 및 편집 디자인 등이 포함된 경우 이 법상 소셜 네트워크로 간주되지 않는다(제1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불법 콘텐츠에 대한 효과적이고 투명한 처리절차를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민원이 접수된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불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삭제 또는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조). 불법 콘텐츠는 독일 형법 “국가·인종·종교 단체 등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자, 단체나 개인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의 평화를 훼손하는 행위(Section 130 Incitement of masses)”,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행위(Section 185 Insult)”, “타인을 비하하거나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신용에 해를 가하는 행위(Section 187 Defamation)”, “성적 자기결정권, 신체적 존엄성 등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하는 행위 등(Section 241 Threatening commission of serious criminal offence)”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제1조제3항<sup>55)</sup>). 즉, NetzDG은 “공공연한 범죄선동, 국민선동,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등” 독일 형법에 따른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규제<sup>56)</sup>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24시간 이내 처

55) (3) Rechtswidrige Inhalte sind Inhalte im Sinne des Absatzes 1, die den Tatbestand der §§ 86, 86a, 89a, 91, 100a, 111, 126, 129 bis 129b, 130, 131, 140, 166, 184b, 185 bis 187, 189, 201a, 241 oder 269 des Strafgesetzbuchs erfüllen und nicht gerechtfertigt sind. ; German Criminal Code Section 1 Scope. Unlawful content shall be content within the meaning of subsection (1) which fulfils the requirements of the offences described in sections 86, 86a, 89a, 91, 100a, 111, 126, 129 to 129b, 130, 131, 140, 166, 184b in connection with 184d, 185 to 187, 241 or 269 of the Criminal Code and which is not justified.

56) 독일 형법상의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표현물이 네트워크집행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 박용숙 (2022). 허위조작정보의 규제방안에 대한 시론적 고찰 -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을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4호, 152.

리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로, 표현 내용의 허위성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sup>57)</sup>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규범으로 소개하는 것이다.

#### 4. 소결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악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 인권 침해 등의 문제점 예방 및 인공지능의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활성화와 함께 사생활 보호, 시민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적 권리도 함께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영향 또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신뢰성, 인간의 존엄성 등 시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며, 인공지능 시스템의 불투명성·복잡성·편향성·예측불가능성 등에 있어 기본권 및 법률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영국 및 독일의 경우에는 정책백서 또는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하면서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 및 위협·편견·차별의 문제를 해소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인공지능의 투명성·추적가능성·적절한 통제수단·검증가능성·신뢰성·보안·견고성·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알고리즘으로 인한 왜곡·차별·조작 또는 기타 오용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수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나, 허위조작정보의 명확한 법적 개념의 어려움, 피해자 구제를 위한 5배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언론포

57)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의 대상이 되는 게시물은 모든 ‘가짜뉴스’가 아니라 ‘혐오표현’(hate speech)<sup>85)</sup>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 지성우 (2019). 허위조작정보(소위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182.

현의 자유 침해 논란 등으로 허위조작정보 규제 입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며,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호스팅 사업자에게 불법 콘텐츠 유통 여부 인지 시 해당 콘텐츠 삭제 또는 접근 조치 제한 의무와 함께 일정한 요건하에 법적 책임을 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반복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용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전 경고 후 그 이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소셜네트워크 사업자에게 공공의 평화 훼손,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에는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분석하여 허위조작정보 유해성에 대응하기 위한 증거기반 접근법을 활용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 Ⅲ. 법률적 쟁점 및 시사점 제언

#### 1. 법률적 쟁점

##### 가. 인공지능 및 허위조작정보 개념의 모호성

법제도를 통하여 특정 분야를 진흥시키거나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제도 내용에 따른 집행보다는 집행자의 재량

에 따라 각기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인공지능 및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개념은 살펴본 바와 같이 명확한 정의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할 경우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의 인공지능 또는 허위조작정보가 규제 대상이 되는지, 어느 범위까지 적법한지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를 어렵게 하고, 규제자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또는 각자의 가치관 등 주관적 영향에 따라 규제 대상 및 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유럽연합이 인공지능의 영향력과 신뢰성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기본권 보호에 근본적인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중심과 감독(Human agency and oversight), 기술의 견고성과 안전성(Technical robustness and safety),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관리(Privacy and data governance), 투명성(Transparency), 다양성·차별금지·공정성(Diversity, non-discrimination and fairness), 사회적·환경적 복지(Societal and environmental wellbeing), 책임성(Accountability)” 7가지를 인공지능 윤리지침 필수요소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공지능의 법적 개념, 규제의 대상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피규제자 예측가능성 확보가 불충분하다. 허위조작정보의 경우에도 애초 뉴스 정보에서 거짓된 정보가 유통되면서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논의되다가 거짓된 정보는 뉴스라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의도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유통시키는 경우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유통시키는 경우 등 목적성, 의도성 여부에 따라 오보정보(misinformation), 문맥상 기만정보(contextual deception) 등으로 세분화되는 등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 나. 편향된 알고리즘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인공지능을 악용하더라도 이용자들은 그러한 목적성 및 의도성을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설계자 및 작동 결과 등에 따라 인위적으로 가공된 정보를 접하게 되고, 이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 접근 기회를 상실하고 편향된 사고를 하는 등 인공지능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작동시키는 구심점이 되는 알고리즘을 미디어 매체와 결합하여 악용하는 경우에는 미디어 수용자들로 하여금 매우 제한되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목적성·의도성을 지닌 정보를 수용하게 되어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다양성 확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편향되는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정보 등으로 인하여 특정인, 특정 집단, 특정 의견 등을 무시하거나 차별할 우려가 있으며, 이용자가 이러한 알고리즘 편향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가치 판단의 기회를 상실하고 허위조작정보 확산 수단으로 인공지능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

#### 다. 진실과 거짓 판단의 어려움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개념은 명확하지 않지만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 여부 판단이 전제되어야 인공지능을 이용한 허위조작정보 유통의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다. 어떠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판단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찬반이 팽배한 이슈에 대한 진실성 여부 판단은 쉽지 않다. 2023년 사이버범죄 트렌드<sup>58)</sup>에 의하면,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조작정보 등으로 인한 피해사건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와 관련된 불법콘텐츠 범죄가 2021년 28,988건, 2022년 29,25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

58)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1&q\\_bbscttSn=20230317103332394](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1&q_bbscttSn=20230317103332394) (2023년 6월 7일 방문)

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입장<sup>59)</sup>이다. 이처럼 진실한 사실 여부는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가진 판사가 소송의 양당사자의 법정공방을 통하여 전체 문맥의 취지를 고려하여 객관적 사실과의 합치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법적 쟁점이 된 진실성 여부는 재심절차 등을 통하여 반복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통하여 소송 당사자 간의 진실 여부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판결에 승복을 하는 것과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사실에 대한 진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결과가 언제나 진실하느냐 하는 문제는 구별하여야 한다. 즉,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앞서 진실과 거짓 여부의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허위조작정보의 진실성 여부 판단의 주체를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로 할 경우 사법부의 종국적인 판단에 앞서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인터넷상 유통 여부를 규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sup>60)</sup>하므로 인터넷상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 라. 법적 책임 주체

편향된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을 통하여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함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배상의 책임을 편향된 알고리즘 설계자에게 물을 것인지, 아니면 편향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한 자에게 물을 것인지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 불분명하여 민사 책임에 있어서의 행위책임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한 편향된 인공지능을 통하여 유

59)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

60) 인터넷 내용규제에 있어 자율규제가 정부의 법적 규제보다 나은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 김민정 (2020). 유럽연합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disinformation) 자율규제 사례 고찰. <언론과 법>, 제19권 제1호, 196.

통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 삭제 또는 차단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다.

## 2. 인공지능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시사점 제언

### 가. 인공지능 및 허위조작정보 악용 사례 분석을 통한 단계적 접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는 대표적으로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하여 특정 사람의 모습, 목소리 등을 조작하는 것으로 실제 당사자의 초상권, 명예훼손 등의 법익을 침해하는 동시에 이용자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혼동케 하는 것이다. 허위조작정보 악용의 대표적 사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한 허위조작정보를 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뉴미디어를 통하여 유통시킴으로써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선거 이슈에 대한 입장을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의 그릇된 판단을 유발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악용사례 및 허위조작정보 사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및 허위조작정보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규제 법률을 마련하기 보다는<sup>61)</sup> 현재 문제점으로 발생하는 사례 위주로 분석하여 공통의 분모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미 발생한 인공지능을 악용한 허위조작정보는 형법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신용훼손, 사기죄 등, 공직선거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위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61) 기존의 법률과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자율규제만으로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 입법에 착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 안수길 (2019). 가짜뉴스에 맞서는 독일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의 내용과 쟁점. <법학논총>, 제36권 제1호, 134-135.

죄,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등 현행 법률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겠다. 즉, 인공지능 및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개념, 보호 대상 등이 불명확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행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인공지능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례 분석 결과가 축적되어 개념 정의, 보호 범위 등을 명확하게 마련할 수 있는 시점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표 2〉 인공지능을 악용한 허위조작정보 : 현행법상 적용 가능한 법률

구분	현행 법률	비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방 목적 거짓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②누구든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	허위 사실 유포 금지

구분	현행 법률	비고
	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영상 유포 금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 나. 신뢰성 확보 및 진실성 판단 등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

인공지능을 악용한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악용했다는 사실, 유통되는 정보가 진실하지 않다는 점 등을 이용자, 관리·감독 주체들이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인공지능을 악용하여 진실하지 않은 정보를 생산·유통하는 자들이 스스로 인공지능을 악용했다는 사실, 유통되는 정보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알고리즘 편향성 여부, 진실성 논란의 정보 등을 이용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고리즘의 경우 이용자들이 쉽게 그 편향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명하고 언제든지 검증할 수 있는 알고리즘 검증프로그램을 공인된 기관이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진실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과정을 이용자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정보에 대한 추천서비스를 자제하도록 하여 확증편향의 문제점도 함께 해소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이 인공지능의 영향력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 보호에 큰 가

치를 두고 “인간중심과 감독, 투명성, 책임성, 기술의 견고성 및 안정성” 등 7가지의 인공지능 윤리지침을 강조하는 사례와 허위조작정보 진실성 여부 판단을 사법부의 종국적인 판단 이전에 행정부가 하는 경우 초래될 우려가 있는 인터넷상 언론표현의 자유 제한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규제 법률 마련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미국의 사례도 그 시사점이 크겠다.

#### 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따른 선별적·순차적 규제

인공지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인공지능 알고리즘 편향성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의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 인간의 존엄성 보호,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및 설명 의무 부과, 최소한의 개인정보 활용,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의 권리 등의 차별금지, 인공지능 위험성에 따른 규제 차별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해외의 사례를 비추어보면 인공지능을 악용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인공지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화로운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 발표, 법률 제정을 위한 제안, 규제 법률 마련 등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설명가능성, 적절한 통제수단, 검증가능성, 지속가능성, 윤리적·법적 한계 명시 등 규제 프레임 마련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우리나라는 법원으로 하여금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찬반 의견이 팽배하여 진척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으나, 독일과 같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독일 형법에 위배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24시간 이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 경우도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허위조작정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호스팅 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또는 월 평균 이용자 수가 4,500만명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잠재적 해를 유발하거나 공익을 위협하는 인터넷상 잘못된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온라인 오보 및 해를 입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작성된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CDDP)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공지능을 악용한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이용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을 상대로 선별적이고 순차적인 규제 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인공지능을 이용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마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 능력을 높이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선별적이고 순차적인 규제 제도를 도입한 유럽연합의 사례도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 라. 입증책임의 전환 등 피해자 보호

인공지능을 악용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민법 제750조), 가해자 특정, 인공지능이 악용되었다는 사실 및 특정 정보의 허위성 등을 피해자가 입

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그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 등의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허위성 여부의 입증을 가해자에게 전환하더라도 그 입증이 어려운 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는 약한 정도의 소명 의무를 부여하고, 인공지능을 악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특정 정보가 진실하다는 사실에 대해 가해자의 일반적 입증의무를 부여한 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 IV. 맺은 말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은 좋은 정보만 이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이 구축되지 않는 한 나쁜 정보, 정확하지 않은 정보 등이 함께 유통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좋은 정보를 선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정보제공자는 좋은 정보만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통시켜 여론을 호도하여 민주주의의 다양성이라는 핵심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정의의 어려움으로 관련 규제 입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인공지능을 악용하여 생산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유발되는 민주주의의 위협, 선의의 피해자 양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있지만, 효과적인 규제 입법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유통하는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 및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인공지능 및 허위조작정보의 명확한 법적 개념을 마련하지 않고 규제 입법을 하는 경우 어떤 내용의 인공지능 또는 허위조작정보가 규제 대상

이 되는지, 어느 범위까지 적법한지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공지능 및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개념, 보호 대상 등이 불명확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용 가능한 현행 법률을 적극적으로 활용<sup>62)</sup>하여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축적하여 개념 정의, 보호 범위 등을 명확하게 마련할 수 있는 시점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둘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편향되는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정보 등으로 인하여 특정인·특정 집단·특정 의견 등을 무시하거나 차별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이용자가 이러한 알고리즘 편향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정확한 가치 판단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허위조작정보 확산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편향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알고리즘에 대하여 공인된 기관이 마련하여 제공한 알고리즘 검증프로그램을 통하여 언제든지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진실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과정을 이용자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정보의 추천서비스를 자제하도록 하여 확증편향의 문제점도 함께 해소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이 인공지능의 영향력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 보호에 큰 가치를 두고 “인간중심과 감독, 투명성, 책임성, 기술의 견고성 및 안정성” 등 7가지의 인공지능 윤리지침을 강조하는 사례와 허위조작정보 진실성 여부 판단을 사법부의 종국적인 판단 이전에 행정부가 하는 경우 초래될 우려가 있는 인터넷상 언론표현의 자유 제한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규제 법률 마련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미국의 사례도 그 시사점이 크겠다. 셋째,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규명하여야 한다. 사법부의 종국적 판단 이전에 행해진 행정부의

---

62) 박용숙, 위의 논문, 161.

허위성 판단이 사법부의 종국적 판단과 상이한 경우에는 인터넷상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허위조작정보 규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럽연합과 같이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선별적이고 순차적인 규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편향된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을 통하여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함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 불분명하여 민사책임에 있어서의 행위책임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한, 편향된 인공지능을 통하여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 삭제 또는 차단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가해자 특정, 인공지능이 악용되었다는 사실 및 특정 정보의 허위성 등을 피해자가 입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그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 등의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 상대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 ■ 참고 문헌

- 강지현 (2019). 인터넷상 여론조작의 실태와 규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287-315.
- 고수윤 (2022). 허위조작정보의 규제에 대한 소고 - 미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규제를 참고하여 -,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4호, 73-110.
- 구인혁 (2008). 신입사원의 허위정보 제공 성향의 상관 요인과 검증방법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제15권 제1호, 37-51.
- 김민정 (2019). 가짜뉴스(fake news)에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로 - 가짜뉴스 규제 관련 국내 법안과 해외 대응책에 나타난 용어 및 개념정의 비교 -. <미디어와 인격권>, 제5권 제2호, 43-81.
- \_\_\_\_\_ (2020). 유럽연합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자율규제 사례 고찰. <언론과 법>, 제19권 제1호, 193-231.
- 김현귀 (2016).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규제. <헌법이론과 실무>, A-3, 1-120.
- 박상민 (2019). 인터넷상 허위조작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향 - 관련 현행법 및 입법안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1-24.
- 박용숙 (2022). 허위조작정보의 규제방안에 대한 시론적 고찰 -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을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4호, 137-168.
- 지성우 (2019). 허위조작정보(소위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157-192.
- 안수길 (2019). 가짜뉴스에 맞서는 독일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의 내용과 쟁점. <법학논총>, 제36권 제1호, 121-147.
- 이인호·이준형 (2021).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헌법적 한계 —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 및 5·18민주화운동특별법을 중심으로 -. <언론과법>, 제20권 제3호, 223-263.
- 최지선 (2022). 프랑스의 허위조작정보 대응에서의 국가안보 관점 - <2018 정보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언론과법>, 제21권 제2호, 85-128.
- 최종선 (2020). 허위조작정보 규제 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홍익법학>.

제21권 제1호, 364-391.

홍완식 (2019). 가짜뉴스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법과 정책>, 제25권 제1호, 329-357.

House of Commons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 (2018).  
Disinformation and fake news\_Interim Report.

Molly Leshner (2022). Leveraging AI, big data analytics and people to fight untruths online.

Richard Gunther, Paul A. Beck, Erik C. Nisbet (2018). Fake News May Have Contributed to Trump's 2016 Victory, Ohio State University.

The Committee on Digital Economy Policy (CDEP) (2022). Disentangling untruths online : Creators, spreaders and how to stop them, OECD Going Digital Toolkit.

White Paper (2020). On Artificial Intelligence - A European approach to excellence and trust.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결정 등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062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3332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2190 판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997. 11. 14.)

민법 (2023. 6.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2. 7.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 7. 4.)

형법 (2021. 12. 9.)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the-act/>

<https://blogs.lse.ac.uk/polis/2019/11/18/new-powers-new-responsibilities/>

[https://commission.europa.eu/system/files/2020-02/commission-white-paper-artificial-intelligence-feb2020\\_en.pdf](https://commission.europa.eu/system/files/2020-02/commission-white-paper-artificial-intelligence-feb2020_en.pdf)

<https://courts.delaware.gov/opinions/>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online-disinformation>  
<https://ec.europa.eu/futurium/en/european-ai-alliance/have-your-say-artificial-intelligence-white-paper-european-approach-excellence.html>  
<https://en.unesco.org/fightfakenew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22R2065>  
[https://eur-lex.europa.eu/resource.html?uri=cellar:e0649735-a372-11eb-9585-01aa75ed71a1.0001.02/DOC\\_1&format=PDF](https://eur-lex.europa.eu/resource.html?uri=cellar:e0649735-a372-11eb-9585-01aa75ed71a1.0001.02/DOC_1&format=PDF)  
[https://goingdigital.oecd.org/data/notes/No23\\_ToolkitNote\\_UntruthsOnline.pdf](https://goingdigital.oecd.org/data/notes/No23_ToolkitNote_UntruthsOnline.pdf)  
<http://jmc.stanford.edu/artificial-intelligence/what-is-ai/index.html>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200&boardId=1113&boardSeq=51454>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jongheesalon&logNo=221353750786>  
<https://mitsloan.mit.edu/ideas-made-to-matter/deepfakes-explained>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424373>  
<https://openai.com/blog/chatgpt>  
<https://oecd.ai/en/ai-principles>  
<https://oecd.ai/en/policy-areas>  
<https://oecd.ai/en/wonk/untruths-online>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719/cmselect/cmcumeds/363/363.pdf>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ai/executive-order-ai/>  
<https://twitter.com/EliotHiggins/status/1637927681734987777>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47-section230&num=0&edition=prelim>  
<https://www.ai.gov/wp-content/uploads/2023/04/National-Artificial-Intelligence-Initiative-Act-of-2020.pdf>  
<https://www.bbc.com/news/world-asia-india-39971412>  
<https://www.bbc.com/news/world-asia-india-40657074>

[https://www.bmwk.de/Redaktion/EN/Downloads/E/key-points-for-federal-government-strategy-on-artificial-intelligence.pdf?\\_\\_blob=publicationFile&v=1](https://www.bmwk.de/Redaktion/EN/Downloads/E/key-points-for-federal-government-strategy-on-artificial-intelligence.pdf?__blob=publicationFile&v=1)

<https://www.eidosmedia.com/blog/tecnology/AI-in-Journalism>

<https://www.foxnews.com/media/fox-news-media-dominion-voting-systems-reach-agreement-over-defamation-lawsui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i-regulation-a-pro-innovation-approach/white-paper>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unter-disinformation-data-platform-privacy-notice/counter-disinformation-data-platform-privacy-notice>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7961&menuid=001004002001>

[https://www.ki-strategie-deutschland.de/files/downloads/Fortschreibung\\_KI-Strategie\\_engl.pdf](https://www.ki-strategie-deutschland.de/files/downloads/Fortschreibung_KI-Strategie_engl.pdf)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8/12/section/8/enacted>

<https://www.nytimes.com/2016/12/05/business/media/comet-ping-pong-pizza-shooting-fake-news-consequences.html>

<https://www.nytimes.com/video/business/100000008864999/dominion-fox-news.html?searchResultPosition=9>

<https://www.osce.org/files/f/documents/6/8/302796.pdf>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1&q\\_bbscttSn=20230317103332394](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1&q_bbscttSn=20230317103332394)

[https://www.senate.gov/civics/constitution\\_item/constitution.htm#amdt\\_1\\_\(1791\)](https://www.senate.gov/civics/constitution_item/constitution.htm#amdt_1_(1791))

<https://www.supremecourt.gov/qp/21-01333qp.pdf>

<https://www.unesco.org/en/articles/solving-fake-news-starts-avoiding-term>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3/03/22/trump-arrest-deepfakes/>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11/M-21-06.pdf>

**ABSTRACT**

---

**A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sinformation\***

CHOI, JONGSUN

Adjunct Professor of Public Policy Graduate School at Hanyang University and  
Deputy General Manager of the Legal Team of the Planning and Coordination  
Office of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This paper discusses legal issues and implications concerning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disinforma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First, defining clear legal concepts of AI and disinformation poses challenges, leading to uncertainty in regulating and determining their legality and scope. Therefore, when legal concepts and protections of AI and disinformation are unclear and enacting laws to regulate them is challenging, existing laws should be actively used. Second, biased AI algorithms may lead to the risk of neglecting or discriminating against specific people, groups, and opinions based on inaccurate data or distorted facts. In addition, if users are unaware of such algorithm biases, there is a risk of abusing AI to spread false and manipulative information. Therefore, preparing and providing an algorithm verification program that allows users to verify biases at any time and offers transparency in the approval and opposition process is essential to mitigate this. Third, regulating disinformation necessitates

---

\* I would like to thank Prof. Jackie Harrison (Head of the Department) and Dr. Irini Katsirea (Reader in International Media Law) for inviting me as an Advanced Visiting Fellow at the Department of Journalism Studies at Sheffield University in the United Kingdom.

confirming its falsity. However, premature making false judgments before the judiciary's final judgment may impinge on the freedom of speech on the Intern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introduction of selective and sequential regulatory systems, such as forming a social consensus on the need to regulate disinformation and imposing certain obligations on Internet service providers with significant social influence rather than uniform regulations like those in the European Union. Fourth, the responsibility for damages to others resulting from the intentional or negligent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disinformation through biased algorithms remains unclear. Therefore, shifting the burden of proving the perpetrator's intention or negligence can strengthen victim protection.

Key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disinformation, algorithms, deepfakes,  
public opinion manipulation

[ 논문투고일 2023. 6. 14. 논문수정일 2023. 7. 17. 게재확정일 2023. 7. 24.]

## AI 창작물과 저작권권에 관한 탐색적 연구

조 연 하\*

미디어미래연구소 객원 연구위원, 언론학박사

### 국문초록

AI와 저작권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저작권재산권에 집중되었고, AI와 저작권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저작권권에 관한 기존 법리를 AI 창작물에 적용해봄으로써 AI와 같은 비인간 창작물과 저작권권의 관계와 쟁점을 검토하고 입법상의 개선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AI 창작물에 저작권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그 근거는 무엇인가이다. 저작권권에 관한 전체적인 의미를 다룬 판례와 AI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적 분쟁 사례 및 명시적인 판례가 거의 부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권에 관한 기존의 학술적 논의와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우선 저작권의 개념과 본질, 타당성 논쟁을 중심으로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각국의 저작권권 입법례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저작권권에 관한 법리를 토대로 하여 AI 창작물과 저작권권의 관계에 대해 탐색적으로 논의하였다. 그 결과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만 저작권을 인정하는 저작권의 일반 법리나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권권의 기본 원칙에 기초할 때, 인격적 이익이 없는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권 인정은 타당하지 않다.

주제어: 인공지능, 저작권, 저작권권, AI 창작,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 귀속

\* hanrover00@naver.com

## 목 차

- I. 서론
- II. 저작인격권의 법적 성격
  - 1. 저작인격권의 개념과 개별 권리
  - 2. 저작인격권의 본질
  - 3. 저작인격권 인정의 타당성 논쟁
- III. 저작인격권 관련 법제 검토
  - 1. 각국의 저작인격권 입법례와 그 특징
  - 2. 1957년 구 저작권법과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저작인격권
  - 3.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입법
- IV. AI 창작물과 저작인격권의 관계
  - 1. AI 창작물과 저작권에 관한 기존 논의
  - 2. AI 창작물에 저작인격권 부여의 타당성과 그 근거
- V. 결론

## I. 서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하면, 아마도 많은 사람이 2016년 3월 이세돌과 알파고(AlphaGo)와의 바둑 대결 사건을 떠올릴 것이다. 당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알파고는 바둑에 특화된 AI였다. 이제는 바둑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소설, 게임, 디자인, 신문 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창작의 주체가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2016년 네덜란드 기술자들과 공동 개발한 AI ‘넥스트 렘브란트(The next Rembrandt)’는 렘브란트 화풍을 그대로 재현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2021년 오픈 AI가 공개한 AI 이미지 생성기술인 ‘달리(DALL·E)’는 간단한 설명 텍스트를 입력하면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2014년 LA타임즈 저널리스트가 개발한 알고리즘 Quakebot은 지질연구소의 지진경고를 학습해서 지진 관련 기사를 자동으로 작성

하였다(Denicola, 2016). 최근 챗GPT 등의 AI 챗봇 시스템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문장작성 역량이 인간 작가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sup>1)</sup>

AI는 인간과 유사하게 사고하는 컴퓨터 지능을 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는 인간과 유사하게 사고하면서 자율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이용하여 인간 지능이 필요한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지성을 가진 존재 또는 시스템이다(조연하, 2020, 75쪽). 최근에는 빅데이터, 딥러닝 기술과 결합하여 대량의 정보를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해서 창작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문화예술 콘텐츠는 창의성과 감수성을 요구하는 인간의 전유물로 생각되어 왔으나, AI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콘텐츠 창작의 영역에 진입하고 있다. 종종 파괴적인 기술로도 여겨졌던 AI가 이제 산업 부문에 국한하지 않고 음악, 그림 등의 창작에 참여하면서 수많은 예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Bridy, 2016). 이에 따라 저작권법 연구영역에서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가 새로운 연구 주제로 추가되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인격적 이익도 보호 대상으로 한다. 저작자가 저작물에 관해 주장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moral rights)도 인격권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인격권은 권리 주체만이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성을 가진다. 또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을 보호하는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살아있는 자연인만이 저작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인간에게만 부여된다. 이에 근거할 때 AI 창작물에도 저작인격권이 부여되는지, 만약 부여된다면 누가 저작인격권을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AI의 콘텐츠 창작과 관련한 저작권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는 않았으나,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에서는 AI 창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와 누가 저작자가 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저작권을 귀속할 것인지가

1) IT World (2023, 1, 13). 기사 쓰는 AI 현실화...CNET, AI 작성 기사 73건.  
URL: <https://www.itworld.co.kr/news/273135>

가장 근본적인 쟁점이면서도 주요 관심사였다. 특히 “AI에 의한 결과물(output)”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존재하는지,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지”와 같이 저작권자 관련 문제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추어졌던 경향을 보인다(김도경, 2020, 478쪽). 그리고 저작권 중에서도 대부분 저작재산권에 집중되었던 경향을 보이는데, 이에 따라 AI와 저작인격권에 관한 연구가 더욱 중요해졌다(Miernicki, & Ng, 2019; Yanisky-Ravid, 2017). 국가별로 저작인격권의 보호 범위나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그에 관한 논의를 더욱 복잡하고도 어렵게 만들었다(Miernicki, & Ng, 2019)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은 AI 창작물과 저작인격권에 관한 논의가 그리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전통적으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 영역(personality sphere)” 보호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계나 기술이 만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저작권법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긴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 문제는 AI가 인간의 능력이나 이해가 미처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절실하다(Miernicki, & Ng, 2020, 319쪽). 이에 본 연구는 저작인격권에 관한 기존 법리를 AI 창작물에 적용해봄으로써 AI와 같은 비인간 창작물과 저작인격권의 관계 및 쟁점을 검토하고 입법 개선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AI 창작물에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그 근거는 무엇인가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저작인격권의 개념과 본질, 타당성 논쟁을 중심으로 법적 성격과 관련 입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저작인격권의 기본 법리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AI 창작물과 저작인격권의 관계에 대해 탐색적인 논의를 해보았다. 저작인격권 관련 법원의 판결 성향을 보면, 개별 권리인 공표권, 성명표시권이나 동일성유지권과 관련된 판례<sup>2)</sup>는 비교적 많이 존재하지만, 저작인격권에 관한 전체

2)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 7980 판결; 대법원 2000. 6. 13.자 99마7466 결정;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등.

적인 의미를 밝힌 판례<sup>3)</sup>는 별로 없다(계승균, 2008, 497쪽). 또한 아직 AI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적 분쟁 사례 및 명시적인 판례가 없으며, AI 창작물의 저작권권 관련 판례도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권에 관한 기존 학술적 논의와 입법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특별히 지금까지 형성된 저작권권의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자 하는데, 새로운 법리를 형성하거나 규범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기존 법리에서 해석이라는 도구를 통해 최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더 중요(계승균, 2021)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II. 저작권권의 법적 성격

### 1. 저작권권의 개념과 개별 권리

저작권권은 저작재산권과 함께 저작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권리로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상의 권리이다. 저작자에게 저작권이라는 정신적(spiritual) 권리를 주는 것은 저작자의 사상·감정이 표현된 저작물에 저작자의 인격이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기초한다(김경숙, 2012, 315쪽). 한마디로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인격(personality)을 보호하는 개념이 저작권권이다. 저작물을 저작자의 인격적 발현 또는 분리체로 보고, 다른 사람이 그 저작물을 다룰 때 저작자의 인격이 존중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여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저작권권은 저작물 이용을 통제하여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저작재산권과 구별되며(임원선, 2020, 116쪽), 특허권과 같이

3) 저작권권의 일신전속성 및 그 권한 행사 위임의 한계와 저작권권과 저작재산권의 개별 권리들이 저작권권이나 저작재산권과 독립적인 권리인지를 다루었다(대법원 1995. 10. 2 자 94마2217 결정;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2775 판결).

인격권이 부여되지 않는 다른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구별을 확실하게 해주는 권리이기도 하다. 저작인격권이 저작물을 만드는 사람들의 비상업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임을 의미한다. 독일 저작권법에 기초할 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와 저작물 사이의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개인의 인격 자체를 직접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의 직접적인 보호 대상이자 개인의 인격이 투영된 저작물을 보호함으로써 저작자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이규호, 2010; 이상정, 2019). 이것은 우리 저작권법상의 저작인격권 침해 내용이 저작물에 대한 침해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저작물에 저작자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저작자 의사와 상관없이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저작물 이용을 통해 저작자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경우 등이다. 이렇게 볼 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나 저작물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둘 사이의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보호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작자와 저작물 사이의 관계 보호는 저작인격권의 중요 요소이자 저작자의 창의적 결정을 위해서도 근본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프랑스의 판례와 1957년 저작권법, 베른협약, 그리고 저작인격권 보호에 비교적 인색한 미국의 저작권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저작자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한다(Leimer, 2011, p. 71). 일반적으로 영어의 ‘moral right’이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droit moral’에서 유래했다고 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용어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droit moral은 유럽 대륙에서 저작권 부여의 전통적 틀로 사용되는 경제적 권리의 반대말을 의미하며(Rigamonti, 2006, p. 355), 도덕 그 자체보다는 윤리적 행위 또는 공공이익에 기반한 권리라는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고려할 때 그 뉘앙스가 잘 전달되지 않았고, 오히려 영어의 ‘personal right’가 적합하다는 것이다(Liemer, 2011, p. 69). 또한 저작인격권 개념은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에서 자신의 개인주의와 개성을 표현한다는 개념에 기반을 두므로(Yonover, 1996, p. 86),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유럽 대륙법계에서 기원한 저작인

격권 보호 개념이 저작물의 도덕성에 관한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성과 개성의 보호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독일어의 인격권을 의미하는 Persönlichkeitsrecht(Rajan, 2011, p. 909)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정(2019)은 독일과 일본의 경우처럼 ‘저작자 인격권’이란 명칭이 저작권권의 본질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 보호 협약인 베른협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수용되었다. 베른협약이 성립된 초기에는 저작인격권 규정이 없었으나, 1928년 개정된 로마 회의에서 처음으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였고 1948년 저작인격권 인정을 의무화하였는데, 구체적인 입법은 각국에 위임하고 있다. 베른협약 제6조의2 제1항에서는 “저작자의 재산권과 독립하여, 그리고 이 권리의 양도 후에도, 저작자는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주장할 권리 및 이 저작물에 관련하여 그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는 왜곡·절단·기타 변경 또는 기타 훼손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저작인격권의 일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자신이 만든 저작물의 저작자로 지명될 수 있는 귀속권(attribution)과 저작물의 절단이나 왜곡에 반대하면서 완결성을 추구하는 권리(integrity)라는 두 가지 별개의 전형적인 저작인격권을 제시함으로써 저작인격권의 근본적인 성격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공표권의 누락과 자국에의 저작인격권 반영 여부를 회원국 자율에 맡겼다는 점이 베른협약의 한계(윤권순, 2018, 113쪽)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된다. 공표는 자기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공표권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저작권법에 구현된 것이며, 저작물이 공표됨으로써 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받는다(권태상, 2019, 202-203쪽)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저작물에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이유에 대해 대법원<sup>4)</sup>은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책임의 귀속을

4) 대법원 2004. 4. 21. 선고 97후860 판결.

분명히 하고 동시에 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저작자의 인격적 가치 보호에 그치지 않고 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 귀속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성명표시권의 공익적 기능을 찾을 수 있다. 동일성유지권 인정의 근거는 저작자의사에 반하는 타인에 의한 저작물 변경과 왜곡으로 인한 인격상 침해를 저작권법 차원에서 방지하는 것이다. 특히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에 완전성을 유지하고 문화유산으로서 저작물을 원상태로 후손에게 전달함으로써 저작자의 인격적 가치를 보호하고 일반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네트워크와 디지털 시대에 기술로 인해 위협을 가장 많이 받으며,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많이 남용되는 저작인격권 유형이기도 하다(박인희, 2018b). 게다가 권리의 보호 또는 인정 범위에 있어 저작재산권인 2차적 저작물작성권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분쟁의 소지가 큰 권리이기도 하다.

대부분 국가가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그것의 보호 범위나 유형을 통일되게 설명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저작인격권에 포함되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외에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접근권(right of access), 철회권(right of recall) 등을 인정하고 있다. 접근권이라고도 부르는 접근권은 저작물 양도 후에도 접근 조건이 원저작물이나 복제물 점유자의 정당한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원래의 저작자가 원저작물이나 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sup>5)</sup>이다. 또 철회권은 저작자가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후에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합법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이라도 유통단계에서 그 이용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오승중, 2020; 이해완, 2019; 임원선, 2020). 그 밖에 배타적 발행과 출판의 경우 저작물을 수정·증감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권리도 넓게는 저작인격

5) 미술저작물처럼 저작물을 수록 매체로부터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양도한 후에라도 저작물에 접근해 스케치하거나 촬영할 수 있는 권리를 예로 들 수 있다(임원선, 2020, 131-132쪽).

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저작권권의 유형이나 보호 범위의 복잡성은 이 권리가 다양한 문화적 이익을 반영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Rajan, 2017, p. 316). 각국의 경제·사회적인 여건이나 문화 정책의 차이로 각국의 실정법이 다르므로 저작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작권권도 마찬가지이다.

## 2. 저작권권의 본질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그동안 저작권에 관한 논쟁은 엄청난 경제적 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진 데 비해, 저작권법 역사에서 중요한 저작자의 저작권권은 늘 그늘에 있었다. 그 이유는 저작권권은 저작자 개인의 권리이며, 저작물의 귀속과 완결성과 관련된 것이고 보통 간접적인 상업적 결과를 수반하는 권리라는 저작권권의 본질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저작권권은 근대 저작권 담론을 지배하는 강력한 경제적 고려와 같은 저작권에 대한 기존의 사고방식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면서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의 가능성을 제안한다(Rajan, 2019, p. 257).

일반적으로 인격권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이익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사적 권리이다. 이것은 권리 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개인이 향유하고 행사하는 일신전속적인 속성을 가지며, 독일 연방대법원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권태상, 2019; 이재진, 2006). 일반적인 인격권은 성명권, 명예권, 초상권 등과 같이 구체성을 가지는 개별 인격권의 총체로, 그 본질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제10조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sup>6)</sup>는 이 조항이

6)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161 결정.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개인의 일반적인 인격권이 보장된다고 보았는데,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기본조건을 포괄적으로 보호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일반적 인격권’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현재 판결에 근거하면, 일반적 인격권이란 “기본권 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 또는 기본권 주체의 인격 발현을 위한 자유, 기본권 주체와 밀접한 인격적 연관을 가진 권리”로 정의된다(이부하, 2022, 145-146쪽).

저작인격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인격권과의 분리설과 일체설로 학설이 대립한다. 먼저 분리설에서는 일반적 인격권이 일반인의 인격적 가치를 보호한다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계를 보호하는 독자적인 영역을 가진다는 점에서 본질상 다르다고 본다(김형렬, 2012, 54쪽). 또 분리설에서는 권리 주체와 객체의 특수성에 주목한다. 즉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 누구에게나 보장되며, 보호 대상이 인격 그 자체이고 권리 주체의 인격에 대한 관계가 보호되는 권리이다. 이에 비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만 부여되며, 저작자 인격으로부터 독립한 저작물이 보호 대상이고,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계가 보호되는 권리이다(오승중, 2020; 이해완, 2019). 반면 일체설은 저작인격권이 저작행위를 하면 부여되는 권리인데, 누구나 저작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일반적 인격권과 다르지 않다는 시각이다. 또한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인격권 외에 일반적 인격권에 기하여 새로운 종류의 저작인격권 보호도 생각할 여지를 두어 저작자 인격을 더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김경숙, 2012, 318쪽). 실제로 대법원<sup>7)</sup>은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저작물 폐기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와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권리 주체와 객체의 특수성 때문에 헌법에서

7)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파생된 인격권으로서의 본질까지 다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체설이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인격권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일신전속성에 기반할 때, 결국 저작권권은 일반적 인격권의 특수한 형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저작권권은 저작재산권 성립요건인 창작성과 독창성 외에 인격, 비경제적 이익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저작재산권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작재산권은 창작물의 생산 장려에 객관적인 목적이 있지만, 저작권권은 이데올로기적 가치에 기반한다(Miernicki, & Ng, 2020). 저작권권은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므로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더라도 저작권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 점에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과 구별된다. 또한 동법 제38조에서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저작권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때도 저작권권은 여전히 독자적으로 보호된다.

저작권권도 저작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경우 제한을 받는다. 저작자의 정신적 가치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권을 제정한 초기와 다르게, 저작물의 재산권성이 중요시되는 거래일 때 저작권권의 일신전속성 인정과 양도성 금지의 필요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는 저작권권이 양도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많은 상황이 존재하며, 외국 입법례에서도 폭넓게 저작권권을 제한하고 있다(이광성, 2017).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같이 개작이 예정된 저작물, 업무상저작물, 공정사용에 의해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 저작권법의 공공 정책을 위하여 저작권권이 제한된다(정진근, 2014, 168쪽).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저작권권 각각의 개별 권리에 관한 조항에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저작자와 저작물 소유자 간의 분쟁과 마찰을 줄이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공공목적을 위해 공표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김경숙, 2012, 333쪽),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

용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성명 표시를 변경할 수 있고,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한 일정한 경우 저작물 변경을 허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발달에 따라 저작물 이용자와 저작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런 제한 규정을 통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유영선, 2006, 58쪽). 저작물이 사회구성원들의 사상과 감정 표현 도구로서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저작인격권에 의한 저작물 이용의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데, 사상과 감정의 표현은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하므로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저작인격권의 제한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정진근, 2014, 180-181쪽). 한편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행사 포기 또는 불행사 합의에 관해서는 배른협약이나 대륙법계 국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우리 저작권법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저작인격권이 그 성질상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어서 이를 포기하더라도 그와 같은 포기는 무효라는 법원 해석<sup>8)</sup>에 따라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격권의 주체는 오직 자연인 개인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 저작권법은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특별히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법인 등의 단체가 된다고 봄으로써, 창작자 원칙의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이렇게 법인 등에 저작인격권까지 포함하는 저작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할 뿐 아니라 불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다.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창작자인 피용자에게 저작인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박현경, 2010; 신재호·유용석, 2020; 이해완, 2020; 조영선, 2013; 한지영, 2022)가 지배적인데,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관련 규정의 개정이 추진<sup>9)</sup>되고 있다.

8) 서울지방법원 1997. 10. 24. 선고 96가합59454 판결.

9) 2020년 말부터 시작하여 2021년 초까지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입법과 의원입법으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창작자에게 부여할 것, 업무상저작물에 창작에 기여한 자를 표시할 것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3. 저작인격권 인정의 타당성 논쟁

저작권법에서 저작인격권을 저작자 권리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인격권 인정의 근거 또는 타당성,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석상의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 우선 저작인격권을 옹호하는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철학적인 논거는 저작자가 자신의 인격을 표현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저작물의 이용에서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의 훼손에 의한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둘째, 저작인격권을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부수적으로 산재한 보호 법리가 정리됨으로써, 저작자의 인격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뿐 아니라 저작자가 손쉽게 권리를 파악하고 구제받을 수 있다. 특히 계약 규정이나 불법행위법 만으로 소유자의 내용 변경 등을 방지하기 어려운 미술저작물과 같이, 일반법의 법리로 인정되기 힘든 구제책을 저작권법에 규정함으로써 인격적 이익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저작권법에 저작인격권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얻는 이점이다(이상정, 2019). 셋째,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입법 취지와 부합된다.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태도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일정한 범위에서 보호하는 정책적 배려라고 볼 수 있으며, 저작자 보호를 통해 더 많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동기부여가 되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강명수, 2013, 737쪽).

반면 저작인격권 인정이 타당하지 않거나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견해의 근거는 첫째, 일반법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판단할 수 있다. 계약법이나 불법행위법 등과 같은 기존의 일반적인 법리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 저작인격권 입법의 필요성이 떨어진다. 또한 베른협약에서 규정한 ‘저작자임을 주장할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당연히 보호되는 인격권이며, ‘무단 변경 이의 제기권’도 일반적 인격권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즉 일반법을 적용하여 베른협약의 요구사

향을 충분히 충족하므로 굳이 저작권법에 저작인격권을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강명수, 2013; 이상정, 2019).<sup>10)</sup> 둘째, 저작인격권의 일신전 속성과 양도불가성이란 속성으로 인해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저작물을 양도할 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저작권 양수인이 저작인격권의 양도불가성을 고려한 양도 대가 결정으로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할 수 있고, 저작물의 공표 여부 및 내용 등의 수정·가감 등을 당연시하는 일반 당사자들의 법 감정을 등한시 함으로써 저작자 및 저작물의 거래 안전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작인격권이 과연 저작자 보호를 위한 권리인지 의문시된다는 것이다(강명수, 2013).

셋째, 저작인격권을 지나치게 보호할 경우 성명표시권 침해, 2차적저작물 작성에 따른 저작권 침해, 그리고 공정이용의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정진근, 2014, 170쪽). 대법원<sup>11)</sup>은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 경우라 하여도 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저작물의 외형 내용을 수정, 증감하거나 그 표현형식을 바꿀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면 설사 저작물 변경으로 인해 그 가치가 높아졌다 해도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결국 저작인격권의 강한 보호는 패러디를 제한하고 개작을 불가능하게 하며, 저작물의 개선조차도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넷째, 저작인격권을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보상을 위해 일종의 저작재산권처럼 사용하는 최근의 경향(박인회, 2018a)이 저작인격권 인정의 타당성을 낮춘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근(2014)은 명예나 명성의 훼손이 없는 경우까지 저작인격권 침해를 인정하는 우리 저작권법 제도와 더불어 산업성이 강한 저작인격권 인정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180쪽). 저작권법이 문화 및

10) 저작인격권의 입법 이전에 불법행위법, 민법으로 인격권을 폭넓게 보호받았던 프랑스에 비해, 독일이 일반법으로 인격권을 보호하기 어려워서 매우 빠른 시기에 저작권법에 저작인격권 규정을 두었던 입법례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이상정, 2019, 53-54쪽).

11) 대법원 1962. 10. 29.자 62마12 결정.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산업성이 강한 저작물은 저작권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산업성보다 예술성이 중요한 시각예술저작물로 한정하여 저작권권을 인정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등 저작물 범위가 확대되면서, 저작권권을 저작자의 인격이 투영된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고가 모든 저작물에 설득력이 있는지가 문제이다(권태상, 2019, 190쪽). 이것은 AI 창작물의 저작권권 논의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 저작권권 인정으로 인한 쟁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권은 저작물 창작이란 인격적 요소가 존재하지만, 일반적 인격권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하기에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므로 일반적 인격권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진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김경숙, 2012, 321쪽), 저작권권이 정책적 배려로 입법화되었으므로 저작권권 규정을 삭제하거나 그 양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강명수, 2013, 741쪽) 등이 있다. 지금까지 저작권권과 관련하여서는 해석상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도 다양하였으며 판례도 일관되지 못했던 경향이 있다. 이런 혼란은 저작권권 문제해결에서 인격의 주체인 저작자를 도외시키고 저작물과 저작물과의 비교만을 판단기준으로 한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다 보니 저작물의 일부 이용과 저작물의 동일성 침해를 구분하지 못했고, 저작재산권이 적용되는 경우와 저작권권이 미치는 범위에 혼란을 가져왔던 것이다(이상정, 2019, 65쪽).

### Ⅲ. 저작인격권 관련 법제 검토

#### 1. 각국의 저작인격권 입법례와 그 특징

서양에서 저작권 입법 초기에는 저작권을 경제적 권리로만 파악하다가 18세기, 19세기의 계몽주의에 입각한 개인 존중 사상에 힘입어 인격권이 법적으로 승인되면서 독일, 프랑스 등의 대륙법계 국가에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1928년 베른협약 로마 규정에서 저작인격권 보호를 명문화함에 따라 다양한 법률 시스템과 문화를 대표하는 대부분 국가가 이를 수용하였고, 저작인격권 인정이 국제적 기준으로 확립되었다(이해완, 2019; Rajan, 2011). 이로써 베른협약은 다른 나라의 저작인격권 입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어서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2항에서 문학·예술적 작품에서 유래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였고, 1996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에서는 베른협약을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보강하면서 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부속 협정인 Trips 협정에서 저작인격권의 예외를 두었다(권태상, 2019; 박인희, 2018a). 이렇게 저작인격권은 다양한 국제조약에서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받았고, 대부분의 입법례에 저작자 권리로 규정되었다.

사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보호에 중심을 둔 영미법계에서는 저작인격권 보호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며, 저작재산권에만 치우쳐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이에 비해 저작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대륙법계에서는 저작물을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이나 인격적 가치의 산물로 보고 저작인격권을 본질적인 권리로 파악하면서(강명수, 2013; 배대현, 2006), 저작인격권 입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렇게 볼 때 저작인격권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저작권법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권리이다.

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 입법은 1709년 앤 여왕법이 효시이지만, 저작권권의 법제화는 그보다 훨씬 늦었다.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일반법을 통해 보호되다가 저작권법에 명문화된 것은 주로 20세기 이후이다(이상정, 2019). 저작권권은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도 프랑스에서 기원하였는데, 19세기 예술가의 창작물이 다른 사람 소유가 된 이후에도 작품의 완결성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탄생하였다. 즉 저작권권 입법은 예술은 예술가 영혼의 표현이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동의 없이 희석되거나 변경되면 안 된다는 가정하에 발전되었다(Hiatt, 2004, pp. 392-393). 프랑스에서는 19세기 판례를 통해 현대적 의미의 저작권권 이론과 주요 권리가 발전되었고, 20세기에 와서 1957년 저작권법<sup>12)</sup>에 저작권권이 명문화되었는데,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외에 저작물 완성권, 철회권, 과도한 비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6가지 저작권권을 인정하였다(강명수, 2013; 윤권순, 2019; 이상정, 2019). 제121조 이하에 저작권권을 규정하였는데, 우리 저작권법과 차이점은 시청각 저작물로 대상을 한정하여 저작자의 성명, 지위와 저작물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 일신전속적 권리 등과 같이 저작자 고유의 권리에 관한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망 후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와 같이 개정이 예정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있다(정진근, 2014, 174쪽)는 점이다. 또한 저작권권의 개별 권리가 더 많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저작권권이 발전된 대표적인 국가이다. 일찍이 1837년 프러시엔 저작권법에서 저작자에게 공표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1901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규정을 둬으로써(이상정, 2019; 허희성, 2011), 독일을 필두로 저작권권 입법이 시작되었다. 저작권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가 저작권권 조항인데, 동일성유지권 침해 판단에 명성, 성망의 훼손을 요구하지 않는 우리

12) 프랑스 저작권법은 저작권권의 정신, 의도, 기능이 가장 잘 표현되었다고 평가 받고 있다(Hiatt, 2004, p. 393).

저작권법과 달리 ‘정신적 또는 인격적 이익을 해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영국은 저작권격권에 대한 보호를 부정경쟁방지법, 명예훼손 등 일반 법리에 의해 규제해 오다가, 1988년 11월 저작권법을 대폭 개정한 「저작권, 디자인, 특허권에 관한 법률(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이하 CDPA)」에 저작권격권 보호를 명문화함으로써 저작권격권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제1편 제4장에 저작권격권 규정을 두고, 배른협약의 의무를 수용하여 저작권격권 규정을 폭넓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같은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과 차이를 보인다(강명수, 2013; 배대현, 2006; Dworkin, 1995). 제79조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인쇄 서체 디자인, 컴퓨터에서 기인한 저작물과 같이 산업성이 강한 저작물, 업무상저작물, 공정사용에 대한 상세한 저작권격권 제한조항을 둬으로써, 저작권격권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저작권의 공공목적 훼손 가능성을 낮추고, 저작물 배포의 자유와 이용 및 개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정진근, 2014, 175쪽)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영미법 국가 중에서도 미국은 저작권법에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표현의 촉진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에 중점을 둔 권리를 중심으로 규정함으로써(정진근, 2014, 176쪽), 저작권격권보다는 경제적 권리 보호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89년에 배른협약 가입 이후에도 저작권격권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국제적 추세에 따라 1990년 개정을 통해 연방저작권법에 저작권격권 보호 규정을 두었다. 그 결과물이 바로 VARA(Visual Artists Rights Act, 1990)이다. 이 법은 그림, 소묘와 같은 시각적 예술 저작물에 한정하여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인정하고 있어서, 저작권격권 보호 범위가 매우 좁고 제한적인 것이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다. 시각적 예술저작물로 보호 대상을 한정한 것은 사회적 필요에 따른 저작자와 문화의 완전성(원형) 보호가 문화와 예술발전이라는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이상정, 2019). 산업성 또는 상업성이 강한 저작물은 영국이나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저작권격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며, 저작권격권에도 공정이용(fair use) 원칙이 적용

된다는 점이 우리 저작권법과의 차이점이다.

국내에서 저작재산권 규정은 과학기술의 발달, 이용 형태의 변경 등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했으나, 저작인격권 규정은 1986년 전면 개정된 이래 큰 변화가 없었다. 저작권법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저작인격권의 개별 권리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오승중, 2020, 245쪽). 제14조 제1항에서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저작자 사망 후에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가 생존했다라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sup>13)</sup>고 규정함으로써 저작자 사후에도 생존 당시보다 더 엄격한 인격적 이익의 보호 요건을 요구한다. 저작인격권도 상속 대상임을 전제로 한 규정을 저작권법 여러 곳<sup>14)</sup>에 두고 있는 셈인데, 이에 대해 배대헌(2006)은 일신전속은 사망 후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저작자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정도는 명예훼손에 한하며 사자의 명예도 일정한 범위에서 보호되므로 생존 시 저작인격권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해석한다(157쪽). 또 저작권법 제15조에서 공동 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며, 제124조 제2항에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었다.

박인회(2018a)는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인격권 규정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저작자 일신 전속 규정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포기와 위임의 가능성 결정을 학설에 의존해야 한다. 둘째, 저작인격권 존속기간 규정의 부재로 인해 해석을 통하여 밝혀야 하는데, 해석상 업무상저작물은 그 권리가 영구히 존재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다른 어떠한 입법례보다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강한 보호가 권리 악용이란 문제를 유발하는데, 이것은 현행 법 규정의 해석

13)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제123조, 제127조, 제128조, 제137 제3호.

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일신전속성 규정을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으며, 저작인격권의 존속기간 규정을 신설하고, 동일성유지권 행사조건으로 베른협약에서 규정한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을 훼손’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188쪽).

## 2. 1957년 구 저작권법과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저작인격권

일반적으로 베른협약에서 창작자임을 주장할 권리와 무단 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권리가 각각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에 해당하거나 상응한다(김경숙, 2012; 박인회·이봉림, 2008; 오승중, 2020; 윤권순, 2018)고 본다.<sup>15)</sup> 이에 대해 강명수(2013)는 창작자임을 주장할 권리와 저작자의 실명 등을 표시할 권리, 그리고 명예나 명성을 해치는 무단 변경에 대한 이의제기 권리와 동일성을 해치는 자체를 금지하는 권리는 사실상 서로 상이하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1957년 구 저작권법(이하 구 저작권법)상 제14조의 귀속권<sup>16)</sup>과 제16조의 원상유지권<sup>17)</sup>이 베른협약의 저작자 주장권과 무단 변경 이의제기권과 매우 유사하다고 해석한다. 1957년 구 저작권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제정, 공포된 저작권법이면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제정한 최초의 저작권법이라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저작인격권 내용이 베른협약의 저작인격권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구분하지 않고 저작권의 권리 유형을 나열하고 있는데,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의 귀속권, 공

15) WIPO의 베른협약 해설서에서는 성명표시권을 저작자임을 주장할 권리, 저작물을 무명이나 이명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작품이 아닌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 사용을 금지할 권리로 구성된다고 설명하였다(신창환, 2004, 20쪽).

16)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한 재산적 권리에 관계 없이 또한 권리의 이전 후에 있어서도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17)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한 재산적 권리에 관계 없이 또한 그 권리의 이전 후에 있어서도 그 저작물의 내용 또는 제호를 개찬, 절제 또는 기타 변경을 가하여 그 명예와 성망을 해한 자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표권,<sup>18)</sup> 원상유지권, 변경권<sup>19)</sup>이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성격을 가진다. 제29조에서 특별히 그와 같은 4가지 권리는 영구히 존속한다면 존속기간의 무한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양도권에 관한 제42조 제1항에서 저작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저작인격권의 양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저작권의 일신전속성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구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에 한해서는 그 이후의 어떤 개정 저작권법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원상유지권만의 침해요건으로 ‘명예와 성망을 해 한 자’라고 규정하여 공표권, 변경권과 다른 특징을 반영했으며, 형사처벌 대상을 귀속권 및 원상유지권 침해로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저작자 명예훼손’으로 제한한 것이 큰 특징이다. 저작인격권의 보호 정도를 인격권 성질에 따라 달리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강명수, 2013, 743-744쪽). 이렇게 볼 때 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인격권적 요소와 재산권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단일의 권리(이해완, 2019, 448쪽)라고 보는 저작권 일원론을 부분적으로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벌칙 제69조에서 귀속권과 원상유지권 규정 위반으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만 저작인격권 침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주목할만하다.

한편 현대 과학기술의 핵심이자 기술적 산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은 콘텐츠의 생산, 제공과 소비 수단으로 사용된다. 특히 컴퓨터 생성물(Computer-generated works; 이하 컴퓨터 창작물)은 컴퓨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만든 결과물로, 둘 다 저작물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하나의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컴퓨터 창작물은 AI 창작물과 마찬가지로 기술이 창작한 비인간 저작물이란 점에서 저작인격권 인정에 제한이 따른다. 이에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sup>20)</sup>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현행

18) 미공표의 저작물의 저작자는 이를 공표하거나 또는 공표하지 않을 것을 자유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19)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과 제호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

저작권법과 달리 동 법에는 구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규정이 없으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에 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컴퓨터가 AI 창작물의 중요한 요소이며, 기술에 의존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인격권 규정이 AI 창작물의 저작인격권 논의에도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한 저작자의 권리로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현행법상의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조항을 두고 있다. 구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면서도, 제7조 제1항에서 ‘프로그램저작자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구분하고 있다. 역시 구 저작권법에서처럼,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제15조에서 프로그램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동 법에서 규정하는 프로그램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인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강명수, 2013; 이해완, 2019). 먼저 부정설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기술적·산업적 특수성상 문학예술 저작물보다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과의 관련성이 약하다는 점, 컴퓨터프로그램 특성상 잦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점, 저작권법의 일신전속성 규정이 동 법에는 반영되지 않은 점, 동 법의 프로그램저작권 양도조항(제15조)에서 저작재산권으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저작인격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을 부정하고 양도 및 포기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긍정설의 논거는 컴퓨터프로그램도 보호받는 저작물이란 점에서 저작권을 저작재산권·저작인

20)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법 범위로 보호하고자 1986년 제정된 단행법률로, “컴퓨터범죄” 관련 특별법의 성격을 가진다(정완, 1996, 256쪽). 동 법은 성격이 유사한 일반 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동일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2009년 4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통합되었다.

격권으로 파악하는 기본구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 동 법과 통합된 저작권법에 일신전속성에 관한 예외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점, 무엇보다도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 태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동 법(제31조)에서 동 법 규정 이외의 프로그램 보호에 관해 저작권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에 대한 이와 같은 상반된 해석은 컴퓨터 창작물, AI 창작물과 같은 비인간 창작물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입법에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AI 창작물의 저작물 유형별 특성에 기반하여 저작인격권 보호의 정도나 방식을 달리 할 수 있고, AI 창작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저작인격권 입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3.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입법

컴퓨터 창작물은 인간 저작자가 없는 상황에서 컴퓨터가 작성한 창작물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컴퓨터 내에서 사용되는 지시·명령으로 이루어진 표현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여 만든 특정한 결과가 컴퓨터 창작물이다. 유럽연합위원회는 1988년 녹색서(Green Paper)에서 모든 저작물은 충분한 기술과 그를 제작하기 위한 노동력 등이 충족되어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컴퓨터를 도구로 창작한 저작물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이용자가 저작자라고 해석한 바 있다(조연하, 2023, 349쪽).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자와 저작인격권에 관한 입법례는 영국 등 소수 국가에서 볼 수 있으나, AI 창작물의 저작자와 저작인격권에 관한 입법례는 아직 없다. 이에 컴퓨터 창작물에 관한 입법 검토는 AI 창작물 저작권 입법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컴퓨터 창작물, AI 창작물과 같은 비인간 창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입법적인 대안 논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법이 바로 영국의 CDPA(1988)이다. 동

법 제178조에서는 컴퓨터 창작물을 “인간 저작자가 없는 상황에서 컴퓨터가 창작한 저작물”로 정의하고 제9조 제3항에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을 “저작물의 창작에 필요한 조치를 한 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79조에서 저작인격권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인데, 컴퓨터프로그램과 컴퓨터 창작물 등에 저작인격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의 가장 근원적인 근거는 기계는 창작을 할 수 있으나 인격이 없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창작물은 “저작물이지만 저작자는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이양복, 2018, 378쪽).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 현실 적합성(practicality)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프로그램 특성상 실질적으로 저작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저작인격권을 인정함으로써 얻는 실익보다 장애 요소가 더 많은 것이다(Dworkin, 1995, p. 252).

CDPA의 컴퓨터 창작물 조항은 제정 당시보다 훨씬 진화된 AI 기술이 만든 저작물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관여하지 않은 컴퓨터를 전제로 하는 정의 조항은 앞으로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수준의 AI 창작물을 보호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손승우, 2016; 허세현, 2021)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권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과 더불어 저작인격권 부여의 예외와 같이 인간 창작물 저작권과 일부 차별화되는 조항을 두고 있는 동 법은 AI 창작물의 저작권 입법 형태로 인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는 저작인격권에 관한 동 법의 조항을 좀 더 구체화하고,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의 인정 범위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기도 한다.

뉴질랜드 저작권법(1994)도 기본적으로 영국과 같은 접근방식을 취한다. “컴퓨터 제작”에 관한 정의 규정(제2조)을 두고 저작물과 관련하여 “컴퓨터 제작물”을 인간 저작자가 없는 상태에서 저작물이 컴퓨터로 생성된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 아울러 ‘저작자’를 저작물 창작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한 사람으로 규정(제5조)하면서, 컴퓨터로 제작된 어문저작물, 연극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의 경우에는 창작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한 사람이 저작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양복, 2018; Bridy, 2016).<sup>21)</sup>

## IV. AI 창작물과 저작권권의 관계

### 1. AI 창작물과 저작권에 관한 기존 논의

문학, 음악, 미술 등 창작의 영역에서 AI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에 근거하여 작품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냄으로써 대단한 창작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AI는 인간과 유사하게 사고하면서 자율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이용하여 인간 지능이 필요한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지성을 가진 존재 또는 시스템이다(조연하, 2020, 75쪽). 아직은 콘텐츠 분야별로 AI의 활용도와 AI 창작물의 완성도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종래의 AI 기술의 한정된 영역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로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인간이 관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인간 창작물과 비슷하거나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로 인해 지적 창작물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AI 창작물에 대해서는 AI가 창작한 저작물 정도로 설명되고 있을 뿐, 학술적인 관점에서 개념 정의가 거의 시도되지 않고 있다. 윤선희·이승훈(2017)은 ‘인간이 외부에서 인식 가능하게 된 AI 스스로 생성한 표현(162쪽)’으로, 정원준(2019)은 ‘인간의 직접적인 관여 없이 알고리즘 학

21) 미국은 저작권법에 저작자를 인간으로 제한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저작권청의 실무지침에 따라 인간 창작물만이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인간이 아닌 AI가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차상욱, 2020; 최재원, 2017).

습을 통해 창작 능력을 가진 컴퓨터 또는 컴퓨팅 기반의 기계장치로부터 생성된 창작물(3쪽)로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면 AI 창작물은 ‘인간의 관여 없이 AI가 학습을 통해 컴퓨터 장치 등으로부터 스스로 생성한 표현물’로 정의된다. AI 창작은 초안 작업이나 2차 창작과 같은 인간의 창작활동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빠른 속도로 대량의 창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창작과정이 불투명하며, 창작기술이 정교해지면서 인간 창작물과 외관상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저작자의 판단과 저작권재산권 귀속 주체의 결정이 어렵다(손승우, 2021; 조연하, 2023)는 것이 AI 창작물의 특징이다.

기존 논의에서는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 의견이 대립한다. 인간을 전제로 하는 저작권 제도의 취지와 저작권법상 저작물성 및 창작 주체에 대한 법적 해석에 기반할 때, AI 창작물 보호의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견해(김현경, 2017; 손승우, 2016; 윤선희·이승훈, 2017; 이양복, 2018; 차상욱, 2017)가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AI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설사 보호하더라도, 대량 생산과 반복적인 창작의 가능성, 인간 창작물과 구분의 어려움 등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 범위나 방식에서 인간 창작물과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부분 긍정적이다. 영국의 CDPA(1988) 제12조에서 컴퓨터 창작물 보호기간을 창작된 해로부터 50년간으로 제한한 것이 그 예이다. AI 산업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AI를 활용한 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결국 보호 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인간 창작물과 차별화해서 AI 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견해본다.

AI가 저작권법 영역에 가져온 가장 큰 난제는 누가 AI 창작물의 저작자인가이다. AI는 기술발전 정도, 작동방식과 과학기술의 추구유형, 인간과의 관계 또는 인간의 관여 정도에 따라 약한 AI와 강한 AI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이다. 약한 AI는 자체적인 판단 능력은 없지만, 인간이 알

고리즘, 데이터, 규칙 등을 입력하면 주어진 조건에서 입력된 정보를 분석하여 한정된 문제를 해결한다. 반면 강한 AI는 지각력을 가지고 스스로 인식하고 독립성을 가지며, 자율성 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속 진화한다. 약한 AI 창작물은 AI가 인간의 창작영역을 넓히는 수단일 뿐이고 창작과정에 인간이 관여하므로 별도의 논의 없이 인간 창작물로 포섭하여, 실제 창작에 참여하여 최종 창작물을 산출한 AI 사용자 또는 프로그래머에게 저작자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강한 AI는 인간과 거의 동일하게 창작하는 독자적인 인격체로 볼 수도 있는 점에서 저작자 지위 부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강한 AI가 창작한 순수 AI 창작물의 경우, 우선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민법 제3조와 제34조에 따라 AI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 규정에서 자(者)는 사람을 의미하며 AI에 인간과 같은 감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AI를 저작자라고 보기 어렵다(이양복, 2018). 선진외국의 많은 연구에서도 현재의 AI 기술 수준과 인간중심 철학 사조를 근거로 AI에 대한 저작자 지위 부여를 부인한다(정상조, 2019, 14쪽). 게다가 창작물은 저작자 개인의 창작적인 특성이나 개성이 반영된 무체물이므로, 인간이 아닌 저작권 주체는 생각하기 어렵다. AI의 창의력은 알고리즘을 따른 단순한 규칙일 뿐이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보더라도, AI에 대한 저작자 지위 부여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 때 현행법상 AI에 AI 창작물의 저작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는 큰 제약이 따른다. AI와 같은 기술이나 기계에 권리가 부여되려면 법인격이 필요하며(Bridy 2012; Yu 2017), 사회적 합의는 물론이고 법인격 주체로 인정받기 위한 법 개정 등 입법론적 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이다.<sup>22)</sup>

22) 이와 관련하여 2017년 2월 유럽연합 의회가 통과시킨 ‘로봇 시민법 결의안’에서는 AI(로봇)에 ‘전자 인간’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 바 있다(조연하, 2023, 349쪽).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론 또는 입법론에 기초할 때, AI 창작물의 저작자 후보로 AI를 개발한 프로그래머, AI를 사용하여 창작한 사용자(운영자), AI 소유자 또는 투자자, AI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사용자와 AI를 공동저작자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다만 누구를 저작자로 확정할 것인지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 지위 부여의 가능성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경향을 보인다(조연하, 2023, 308쪽). 결국 AI가 AI 창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없다면, AI 창작물이 저작물성을 인정받는 경우 인간 중에서 실질적으로 누가 창의적 입력에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별 사례별로 저작자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Miernicki, & Ng, 2020, p. 324). 즉 AI 창작물 생성을 주도한 자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최종적으로 창작물을 만들어낸 AI 사용자에게 저작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더 많은 창작을 유도하는 등 기존 법체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적절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정영덕·윤박, 2021; 조연하, 2020).

저작자 판단이 저작자 적격을 논하는 것이라면, 저작권 귀속 주체는 창작물의 타당한 권리자를 논하는 것이다(조연하, 2023, 322쪽). 저작자 지위를 부여한 자에게 반드시 저작권을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어서, 누구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킬 것인지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와 별개의 문제이다. AI가 창작 도구로만 사용되는 창작물의 경우, AI는 반복 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할 뿐 창작성을 발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저작물에 대한 자연인의 권리 주체성을 보호하고 저작권법 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라도 약한 AI 단계에서는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창작 관여자인 인간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인간에게 귀속시키는 경우라도 제작과정에서 창의적인 노력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권리 귀속 관계를 나누어 구분해야 하는데(손승우, 2016; 이양복, 2018), 역시 사용자에게 권리를

---

법안의 핵심은 전자 인간이 자연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게 하는 것인데,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전자 인간에게 자연인, 법인과 다른 제3의 법인격을 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차상욱, 2020; 최재원, 2017).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맥락에서 사무엘슨(Samuelson, 1986)은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컴퓨터프로그램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며, 전통적인 저작권법 원칙에도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기계는 창작물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불필요하므로 지식재산권을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저작권 귀속 판단에서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반면 향후 강한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창작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설사 창작의 표현 주체를 AI로 보더라도, 권리 귀속의 주체는 역시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 저작권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주어지는 배타적 권리라고 보는 현행 저작권 제도에 따르면, AI가 학습하여 스스로 창작한 저작물을 하나의 권리 대상으로 포섭할 수 없으므로(손승우, 2016), AI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를 AI보다는 인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정원준(2019)도 현행법상 AI에 대한 저작권 귀속이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창작에 기여한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면서, AI가 독자적으로 만든 창작물을 공유물로 인정하거나 AI 자체에 저작자 지위를 부여하되 다른 특정 주체에 대한 권리 귀속이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저작자 지위 부여와 권리 귀속의 주체를 분리해서 판단하자는 것이다. 결국 AI가 계속 진화 중인 기술이란 점에서 AI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를 명백히 정할 수는 없으나, AI 사용자 또는 개발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킬지, 사용자와 개발자가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할지는 기본적으로 저작물 창작에 대한 AI나 인간의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개별 사안별로 달리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지만 이 역시 각국의 저작권법이나 입법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다(조연하, 2023, 330쪽).

## 2. AI 창작물에 저작인격권 부여의 타당성과 그 근거

AI 창작물은 스스로 학습을 통해 성과를 보이는 AI의 특징이 잘 나타

난 결과물이다.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기존 논의는 AI 창작물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라는 저작물 요건을 충족하는지, 충족한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는지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AI 창작물의 저작인격권 인정의 타당성 논의도 AI 창작물이 저작인격권의 보호 객체인 저작물인지를 판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창작성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따라 AI 창작물의 창작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어떤 저작물이든 기본적으로 표현과 창작성이라는 저작물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작물성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과 인간의 의식에서 결정되는 창작성을 저작물성 판단기준으로 보는 현행 저작권법적 해석을 토대로 하면, 순수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의 타당성은 낮다. 또 인간의 창작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저작권 제도의 취지에 기반하더라도, 인간 통제 없이 AI가 행하는 창작행위 자체는 인간의 행위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AI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

저작인격권이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고, 저작자에게만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AI 창작물의 저작인격권 논의에 앞서 무엇보다도 저작자에 관한 논의가 요구된다. 대륙법계에서는 저작물을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이나 인격적 가치의 산물로 보고 저작인격권을 본질적인 권리로 파악한다. 이에 저작물의 창작자인 저작자에게 저작인격권이 부여되며, 이를 통해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 인격을 보호한다. 이처럼 저작자의 인격적 발현 보호에 기반하는 저작인격권의 본질에 기초할 때,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전제로 하여 저작인격권을 인정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저작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며 저작인격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자 인격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일단 약한 AI 창작물은 인간 창작물에 준하여 저작자를 판단하면 되므로, 저작자로 볼 수 있는 AI 사용자 또는 프로그래머에게 저작인격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면 된다. 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고 그에 대한 침해책임도 물을 수 있어서 저작인격권 문제가 비교적 명백

한 편이다.

하지만 순수 AI 창작물은 강한 AI가 실질적인 창작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인간이 아닌 AI는 저작자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격을 갖추고 있는 존재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권의 귀속 주체로 인정하기 어렵다. AI에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의 훼손으로 인해 침해되는 인격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권권이 저작물에 체화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보호하는 개념이라고 볼 때, 순수 AI 창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체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순수 AI 창작물의 창작에서는 AI 사용자의 통제권과 자율성의 범위가 버튼을 누르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이 경우 AI 창작물에 사용자의 개성이 인격적으로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김현경, 2017, 366쪽). 저작권권의 일신전속성 규정이 부재한 구 저작권법과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그리고 컴퓨터 창작물에 저작권권을 인정하지 않는 영국의 CDPA에 기반하더라도, AI 창작물의 저작권권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상 살펴본 대로, 순수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권 인정의 타당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AI 창작물에 저작권권을 인정할지는 AI 산업의 육성과 기술 및 콘텐츠 창작에 대한 투자와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저작권 정책에 따라 만약 인간 창작물과 차별화하여 보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저작자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타당성이 가장 높은 인간에게 저작권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에 동일성유지권을 제한하는 프랑스, 컴퓨터 창작물이나 산업성이 강한 저작물에 저작권권 제한조항을 두고 있는 영국, 산업성이 강하고 유통의 규모가 큰 상업적 저작물에는 저작권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미국 등의 저작권권에 대한 태도는 산업재산권성 또는 상업성을 갖는 저작물의 저작권권 해석과 관련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크다(정진근, 2014, 178쪽). 이것은 저작물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 저작권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와 창작물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줌으로써 저작물이 단순한 재화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창작의 동기와 문화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한마디로 저작자의 창작 감정과 창작원칙을 알게 해주는 권리이다(계승균, 2008, 507쪽). 그와 같은 저작인격권의 공익적인 기능이 좀 더 강조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AI 창작물의 기술적·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작인격권 인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다면, AI 창작물의 저작인격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안도 검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처럼 저작물 유형별로 제한할 수도 있겠으나, 원상유지권의 침해요건 규정과 형사처벌 대상의 한정 등과 같이 저작인격권 성질에 따라 보호 정도를 달리 규정하는 구 저작권법에서처럼, 저작인격권 유형별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있다. 기존 논의에서 AI 창작물과 인간 창작물을 구별하는 표시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에 성명표시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저작인격권 중에서도 일반 공중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기능이 강조되는 동일성유지권으로 한정하여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같은 맥락에서 브리디(Bridy, 2016)는 AI 창작물에 저작인격권을 부여한다면 권리의 유형별로 차이를 둘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완결성 권리는 근본적으로 저작자의 인격 영역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AI 창작물에 부여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귀속권과 관련해서는 저작인격권의 공적 기능을 토대로 “기여권”이란 새로운 권리를 중간 해결책으로 제안하였다. AI의 프로그래머나 사용자에게 저작자가 아닌 기여자 지위를 부여하고, 저작물이 AI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

AI 창작물의 저작자 판단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서, AI의 프로그래머, 사용자, 소유자 또는 투자자 등이 저작자 후보로 논의되고 있다. 시나 소설, 그림 등의 전통적인 저작물에서는 저작자의 감정적 요소가 강한 권리로 여겨졌고, 저작인격권의 핵심인 저작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환경이 창작 형태 내지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온라인상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이용으로 인해 몇 번의

유통 후에는 누가 저작자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작권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저작권권에 대한 법리적인 침해라기보다 기술 환경적인 침해에 해당한다(계승균, 2008). 이와 같은 기술발전이 초래한 저작자 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한 저작권권 보호의 문제는 AI 창작물에도 일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자주의의 예외를 업무상저작물에 적용하여, 법인 등의 단체에 저작권권까지 부여한다. AI 창작물을 업무상저작물로 취급한다면, 프로그래머를 코드로 구성된 저작물의 저작자로 보는 오류를 피하고 실행 불가능한 기술이나 기계에 대한 법적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이점이 있다(Bridy, 2016, p. 400). AI의 발전을 위해 직무상저작물의 ‘고용인’과 ‘고용주’를 재해석해서 컴퓨터 생성물의 저작자를 AI 개발자나 소유자와 같은 인간으로 정해야 한다는 일부 학자들(Bridy, 2012; Hristov, 2017)의 주장에 기초하면, AI 창작물의 저작자 지위를 인간이나 법인에 부여함으로써 저작권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업무상저작물 저작자 추정원칙이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 V. 결론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저작자는 중간에 개입하는 기업이나 저작물의 최종 소비자가 결코 누릴 수 없는 인격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Ginsburg, 2003b, p. 1068). 저작자만이 저작권권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간이 아닌 AI가 창작한 저작물도 그와 같은 저작권권을 향유할 수 있는가에 주목하고, 저작권권의 기본 법리를 AI 창작물에 적용해보려는 목적에서 시도한 탐색적인 연구이다.

저작권법이나 저작권 일반 법리에 따르면, AI가 창작한 저작물에 저

작인격권을 부여할 수 없다. 35여 년 전에 제정된 영국의 CDPA에서도 예외 규정을 두고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기초하면,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인정의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AI는 기본적으로 저작인격권이 요구하는 인격적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의 전통적인 원칙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AI에 저작인격권을 인정한다면 진정으로 포스트 휴먼 시대가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 시대가 오면 저작권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있다(Miernicki, & Ng, 2020, p. 327)는 다소 비관적인 주장도 있다. 한편 저작물의 가치 향상에도 불구하고 저작자 동의 없는 내용의 수정, 증감과 형식의 개편을 금지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sup>23)</sup>을 토대로 할 때, 저작물로서 가치가 커질 수 있는 AI 창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변경의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강한 저작인격권 보호는 현대기술발전에 따른 창작환경과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전통적인 형태의 창작에서는 권리 귀속이 창작의 중심에 있었다면, 현대의 사이버 세계에서 창작은 정보화 사회라는 미명 아래 정보의 공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또한 저작인격권의 침해 양상도 속도, 범위나 질·양 등에 있어서 이전과 비교하여 많은 점에서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계승균, 2008, 507-508쪽). 현재로서는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보호의 타당성이 떨어지지만, 앞으로 저작인격권의 기본 법리에 변화가 생긴다면 AI 창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해 구 저작권법에서처럼 저작인격권 종류에 따른 입법의 차별화를 피할 수도 있다. AI와 같은 비인간이 창작하는 저작물에 저작인격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3) 대법원 1962. 10. 29.자 62마12 결정.

## ■ 참고 문헌

- 강명수 (2013). 저작인격권에 관한 고찰. <동아법학>, 제58호, 725-759.
- 계승균 (2008). 저작인격권의 특질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전남대)>, 제28권 제1호, 491-511.
- \_\_\_\_\_ (2021). 인공지능 창작물의 현행 법규범 내에서의 활용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82-2호, 228-253.
- 권태상 (2019). 저작인격권의 성질과 내용에 대한 고찰: 민법상 인격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87호, 189-225.
- 김경숙 (2012). 저작인격권의 제한과 공정이용-UCC의 이용활성화의 관점에서. <법학연구(부산대)>, 제53권 제2호, 313-343.
- 김도경 (2020).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 공정이용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전북대)> 통권 64집, 477-522.
- 김현경 (2017). 저작권 귀속법리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고찰. <성균관법학> 29권 1호, 331-374.
- 김형렬 (2012). <저작인격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인회·이봉림 (2008). 저작인격권의 일신 전속성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제30호, 235-258.
- 박인회 (2018a). 저작인격권의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인하대 법학연구소)>, 제21집 제2호, 187-208.
- \_\_\_\_\_ (2018b). 동일성유지권의 비판적 고찰. <법학논문집>, 제42집 제2호, 293-333.
- 박현경 (2010).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영산법률논총>, 제7권 제2호, 139-163.
- 배대헌 (2006).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법리에 관한 검토. <산업재산권>, 제21호, 147-192.
- 손승우 (2016).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 83-110.
- \_\_\_\_\_ (2021). 인공지능 창작물의 현행 법규범 내에서의 활용방안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통권 제182-2호, 254-255.
- 신재호·유용석 (2020). 업무상저작물제도 개정방향에 관한 검토. <산업재산

- 권), 제65호, 193-226.
- 신창환 (2004). 미국 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 문제. <계간 저작권>, 제17권 제2호, 19-30.
- 오승중 (2020). <저작권법 강의>. 서울: 박영사.
- 윤권순 (2018). 저작인격권의 역사적 기원. <미디어와 인격권>, 제4권 제1호, 89-123.
- 윤선희·이승훈 (2017).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활용-‘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52호, 155-197.
- 이광성 (2017). 저작인격권의 내용과 제한에 관한 교육적 함의. <법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129-149.
- 이규호 (2010). <저작권법: 사례·해설>. 진원사
- 이부하 (2022).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고찰을 통한 일반적 인격권의 구체화-. <미디어 인격권>, 제8권 제3호, 133-169.
- 이상정 (2019). 저작인격권의 연혁과 해석상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소고. <정보법학>, 33-70.
- 이양복 (2018).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 쟁점. <경영법률>, 29집 1호, 369-401.
- 이재진 (2006). <언론 자유와 인격권>. 서울: 한나래.
- 이혜완 (2019). <저작권법(제4판)>. 서울: 박영사.
- \_\_\_\_\_ (2020). 창작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안 연구. <산업재산권>, 제65호, 109-191.
- 임원선 (2020).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제7판)>. 한국저작권위원회.
- 정상조 (2019). <인공지능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AI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 좌담회 발제집, 3-70.
- 정연덕·윤 박 (2021).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 판단. <일감법학>, 48호, 243-269.
- 정 완 (1996).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7권 1호, 255-283.
- 정원준 (2019).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정책적 과제. <정보통신방송정책>, 제31권 제6호, 1-27.
- 정진근 (2014). 저작인격권에 관한 재고찰. <계간 저작권>, 제27권 제3호, 167-190.

- 조연하 (2018). <미디어 저작권>, 서울: 박영사.
- \_\_\_\_\_ (2020).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쟁점: 저작물성과 저작자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9권 제3호, 71-113.
- \_\_\_\_\_ (2023).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 서울: 박영사.
- 조영선 (2013). 현행 업무상저작물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제언. <계간 저작권>, 제26권 제3호, 34-65.
- 차상욱 (2017). 인공지능(AI)과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쟁점: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법조>, 제66권 제3호, 183-235.
- \_\_\_\_\_ (2020).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쟁점에 대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33권 1호, 5-69.
- 최재원 (2017).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주체.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제11권 제1호, 117-137.
- 한지영 (2022).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서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소고. <계간 저작권>, 제35권 제4호, 131-178.
- 허세현 (2021). AI 창작물 보호에 관한 법 적용의 한계. <법학논총(전남대)>, 제41권 제3호, 201-223.
- 허희성 (2011). <2011 신저작권법 축조개설>(상). 명문 프리컴.
- Bridy, A. (2016). The evolution of authorship: work made by code. 39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 395-401.
- Denicola, R. C. (2016). Ex Macina: Copyright Protection for Computer-Generated Works. 69 *Rutgers University Law Review*, 251-287.
- Dworkin, G. (1995). The Moral Right of the Author: Moral Rights and the Common Law Countries. *Columbia-VLA Journal of Law & the Arts*, Spring/Summer 1995, 229-266.
- Hiatt, E. B. (2004). The “Dirt” on Digital “Sanitizing”: Droit Moral, Artistic Integrity and the Directors Guild of America v. Clean Flicks Et Al. 30 *Rutgers Computer and Technology Law Journal*, 375-397.
- Liemer, S. P. (2011). On the Origins of Le Droit Moral: How Non-Economic Rights Came to be protected in French IP Law. 19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65-116.
- Miernicki, M., & Ng, I. (2019) Machines, attribution and integrit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oral rights. *Jusletter IT* 21, February 2019.

- URL: [https://jusletter-it.weblaw.ch/en/issues/2019/IRIS/machines\\_-\\_attributio\\_a400b1d060.html\\_\\_ONCE&login=false](https://jusletter-it.weblaw.ch/en/issues/2019/IRIS/machines_-_attributio_a400b1d060.html__ONCE&login=false).
- Miernicki, M., & Ng, Irene (2020).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oral rights. 36 *AI & Society*, 319–329.
- Rigamonti, Cyrill P. (2006). Deconstruction Moral Rights,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47, No. 2, 353–412.
- Rajan, M. T. S. (2011). Creative Commons: America’s Moral Rights? 21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905–969.
- \_\_\_\_\_ (2017). The Public Interest Case for American Moral Rights: A Response to the Symposium “Authors, Attribution, and Integrity: Examining Moral Rights. 8 *George Mason Journal of Commercial Law*, 314–348.
- \_\_\_\_\_ (2019). Moral Rights: the Future of Copyright Law?.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Vol. 14, No. 4, 257–258.
- Samuelson, P. (1986). Allocating Ownership Rights in Computer-Generated Works. 47 *University of Pittsburgh Law Review*, 1185–1228.
- Yanisky-Ravid, S. (2017). Generating Rembrandt: Artificial Intelligence, Copyright, and Accountability in the 3A Era-The Human-Like Authors are already here- A New Model. 2017 *Michigan State Law Review*, 659–726.
- Yu, Robert (2017). The Machine Author: What Level of Copyright Protection is Appropriate for Fully Independent Computer-Generated Works? 165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245–1270.

**ABSTRACT**

---

## A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I Generated Works and Moral Rights in Copyright

Cho, YounHa  
Guest Research Fellow, Media & Future Institute

Most discussions about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focus on the author's economic rights, which enable copyright holders to derive income from others' use of their literary or artistic works. In contrast, the relationship between AI and the author's moral rights, which safeguard the personal connection between a creator and their work, remains relatively obscure.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rights in copyright and works generated by nonhuman AI entities, seeking a legislative proposal for reform by applying fundamental legal principles governing moral rights in AI-generated works. Due to the scarcity of judicial cases dealing with the overall meaning of moral rights and conflict cases on the copyright in AI-generated works, this research examines existing discussions on moral rights and relevant legislative cases. To discuss the fundamental legal doctrines of moral rights, this research analyze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moral rights, with a specific focus on their concepts, nature, and debates concerning the validity of granting moral rights within the scope of copyright. This research also reviews the legislation cases, such as laws on moral rights in France, Germany,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he Copyright Act of 1957 of

Korea; former law for the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of Korea, which was integrated into Copyright Act in 2009; copyright laws on computer-generated works, such as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of 1988 in the United Kingdom. The findings indicate that granting moral rights to AI-generated words, devoid of personal rights, is not justifiable based on general legal doctrines of copyright, which solely confer rights to human beings, and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moral rights that protect the personal and spiritual interests of authors as represented in their works.

Key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copyright, moral rights, AI creation, copyrighted work, author, copyright attribution

[ 논문투고일 2023. 6. 19.    논문수정일 2023. 7. 20.    게재확정일 2023. 7. 24. ]

## 피의사실 보도의 요건

### - 윤리적 범죄 수사 보도를 위한 원칙 -

박 영 흠\*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국문 초록

언론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지만 바람직한 보도를 위한 기준과 원칙은 정립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의자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법적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는 저널리즘 원칙을 적절히 조화시켜 윤리적 피의사실 보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이다. 연구는 법원 판례와 언론 윤리강령을 기초로 피의사실 보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요건을 시론적으로 도출해 제안했다. 연구는 첫째, 피의자가 공인일 경우, 둘째, 국민 안전과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경우, 셋째,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서 유무죄 여부에 다름이 없는 경우 피의사실 보도가 가능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넷째, 독립적 취재와 교차 검증, 다섯째, 수사 기관과 피의자 사이의 균형, 여섯째, 정보원의 투명성이 필요하며, 일곱째, 수사 단계별 중계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안의 취지는 모든 피의사실 보도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도, 피의사실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언론은 제한된 조건에서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피의사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데 있다. 연구는 또한 제시한 피의사실 보도의 요건을 몇 가지 실제 범죄 수사 보도 사례에 적용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해보았다.

주제어: 피의사실, 범죄 수사 보도, 언론, 언론윤리

\* pyh98@kpf.or.kr

## 목 차

- I.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 II. 기존 판례와 윤리강령 검토
  - 1. 법원 판례 분석
  - 2. 언론윤리강령 분석
- III. 정당한 피의사실 보도의 요건
  - 1. 피의자가 공인일 경우
  - 2. 국민 안전과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경우
  - 3. 반사회적 중대 범죄의 경우
  - 4. 독립적 취재와 교차 검증
  - 5.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의 균형
  - 6. 정보원의 투명성
  - 7. 수사 단계별 중계 보도 지양
- IV. 보도 사례를 통한 요건의 적용
  - 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보도 사례
  - 2.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관련 보도 사례
  - 3. 사법농단 수사 관련 보도 사례
- V. 결론을 대신하여

### I.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 단계에 피의사실을 취재진에 공표하고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관행에 대한 논란이 생산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 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근자에 피의사실 공표와 보도에 관한 격렬한 논란을 촉발한 것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 대한 수사였지만, 이 문제에 관한 논란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2010년 한명숙 전 총리 수사, 2011년 박노현 서울시 교육감 수사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됐다. 사건의 성격은 조금씩 달랐지만, 국민 관심이 집중되는 대형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선별적으로 제공하여 수사에 유리한 환경

을 조성하고 피의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한다는 비판은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규정되어 있다.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53년 제정된 이래로 실제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수사기관 종사자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사실상 규범력을 잃고 사문화되어 있으며, 현실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흔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크고 작은 범죄 수사 관련 보도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의사실 공표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충돌하고 있다. 국가의 범죄 수사 기능, 수사공무원의 직무상 중립성, 공정한 재판 기능, 범죄 피의자의 인격권과 명예 등이 피의사실 공표에 의해 침해당할 수 있다(조기영, 2022). 다만 법 이론적 접근과 별개로 사회적 차원에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불거진 것은 다른 무엇보다 피의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봐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광범위하게 유포해 피의자에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면 피의자가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확정된 범인으로 미리 낙인찍힐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낙인 효과로 인한 피해는 나중에 무고함이 밝혀진 뒤에도 손쉽게 회복되지 않는다.<sup>1)</sup> 전문 법관조차 언론이 형성한 유죄에 대한 선입견에 배치되는 판결을 하기가 쉽지 않다(김성룡, 2014)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언론 보도로 인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예단을 갖게 될 우려가 있으며, 강고하게 형성된 부정적 여론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데

1) 1998년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과 2004년 쓰레기 만두소 사건은 무분별한 피의사실 보도 이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미 기업은 폐업이나 도산한 뒤였고 결국 피해 구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 사례다.

부담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김기창, 2005; 김현숙, 2019).<sup>2)</sup> 이는 헌법 제26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초상과 성명 등의 공개로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김현숙, 2019).

법무부는 이러한 논란에 대응해 훈령으로서 2010년 1월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제정한 바 있고, 이후 2019년 12월 이를 한층 강화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형사사건의 피의사실 공개를 엄격히 금지하고 공개소환 금지,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 일체 금지, 구두 브리핑 폐지 등 기존의 공보 관행 대부분을 금지하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등 취재·보도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박희봉·한동섭, 2020).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기관의 피의사실 보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사실 공표죄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법조항이 아니다. 물론 언론인도 피의사실 공표죄의 공범이나 교사범이 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피의사실 공표와 피의사실 보도는 밀접히 연관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행위는 아니다(임찬중, 2019). 기자가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피의사실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으며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공보 과정을 통해 취득한 경우도 많으므로 피의사실 보도는 그 자체로 위법이 아니다. 따라서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를 논하면서 언론의 모든 피의사실 보도가 똑같은 위법성이 있다고 간주하거나 무조건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죄 행위의 결과물인 것처럼 오인하는 일각의 시선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와 관련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죄 논쟁에서 제기되는 이슈들과 별개로 따져봐야 할 지점들이 있다.

2)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에게는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현숙, 2019).

범죄 수사에 관한 보도는 19세기 미국에서 대중 상업 신문이 등장할 때부터 뉴스의 핵심 소재이자 독자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 대중 언론의 탄생 때부터 범죄 보도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뉴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기 장르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언론의 범죄 보도 대부분이 공소 제기 전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박용규, 2011) 공판 개시 이후 단계부터 언론이 관심을 갖지 않는 문제 (박영흠, 2020)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판 청구 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범죄 수사 보도를 죄악시해선 곤란하다. 범죄 수사 보도에도 일정한 순기능이 있고, 때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범죄 수사 보도는 첫째, 범죄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형성하고 범죄의 확산이나 추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범죄에 대한 여론을 형성해서 형사사법기관의 활동 및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해준다. 셋째, 사회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와 규범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법적·도덕적 규범의 형성과 내면화 및 사회 안정화에 기여한다. 넷째, 밀행적 성격을 갖는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 또는 관행을 드러냄으로써 그러한 기관들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공한다.<sup>3)</sup> 다섯째, 수사력을 집중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피의자의 소재 파악이나 검거에 기여한다. 이러한 범죄 수사 보도의 긍정적 기능은 언론 본연의 역할인 환경감시 기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승선·김연식, 2008).

만약 수사기관을 통한 범죄 수사 취재와 보도가 봉쇄된다면 발생하는

3) 특히 정치권력이나 재벌 등이 공소 제기 전 수사기관에 압력이나 청탁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 또는 축소시킬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감시 행위는 매우 중요하다. 피의사실 보도를 엄격히 금지하는 경우 이처럼 권력이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소 제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도를 할 수 없어 국민들이 해당 사실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은폐될 가능성이 크므로, 내사나 수사 단계에서도 범죄사실에 관한 보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부작용도 있다. 피의사실 보도 일체가 부정될 때 언론은 기소 시점에 이르러서야 기사를 쓸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범죄 발생과 기소 시점 사이의 시간적 거리 때문에 사실상 뉴스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잃게 된다. 이는 단순히 언론기관의 손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적 관심사나 중요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심석태, 2016). 특히 선출직 고위공직(후보)자의 권력형 비리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는 공익에 부합하고 때로는 긴급성을 띠며, 이러한 정보를 전달받는 것은 주권자 시민의 정당한 권리에 해당한다.

알 권리는 헌법에 조문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1991. 5. 13. 90헌마133 결정)과 법원 판례를 통해 실제적인 헌법적 권리로 자리 잡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르면 알 권리는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로서, 그 자유권적 성질의 측면에서는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으며, 개인은 접근 가능한 정보원, 특히 신문·방송 등 매스미디어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헌법재판소, 1998. 10. 29. 98헌마4 결정). 공중이 의사나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의 중요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높아진 현대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알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권적 성격을 띠게 되면서 그 의미가 더 커지고 있다(이재진, 2022). 물론 알 권리가 유보 조항에 의해 제한될 순 있으나 그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알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제한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허경미, 2013).

이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비판 이후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일체에 대한 공개금지를 원칙으로 삼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개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

적이 제기됐다(문재완, 2020a). 또한 수사기관의 대다수 공보 규정이 과도한 수사기관 중심주의, 정보원의 단절, 개별적 접촉 회피 현상 초래, 공개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장치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박희봉·한동섭, 2020). 과도한 취재 제한으로 인해 부정확한 추측성 보도와 허위조작정보가 범람하면 피의자의 인권이 오히려 더 심각하게 침해당할 소지도 있다(문재완, 2020a).<sup>4)</sup> 따라서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두 권리는 모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이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전적으로 배척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의사실 보도를 바라보는 비판적 시선에 일관성이 없는 것도 문제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피의사실 보도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보도로, 이와 다른 피의사실 보도는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보도로 평가하는 이중적·모순적 양태가 광범위하게 확산해 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많은 이들이 진영 논리에 입각해 자신이 소속된 정파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수사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수사를 놓고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임찬중, 2019). 예컨대 조국 전 장관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보도를 비판했던 이들 중 상당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농단 수사는 환영했고 후자의 수사를 비판했던 이들 중 상당수는 전자의 수사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식이다. 이처럼 피의사실 보도에 대한 평가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검찰과 경찰이 모두 광범위한 피의사실 유포를 하는 상황임에도 비판적 논의는 정치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검찰 수사 보도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공판 청구는커녕 송치가 되기 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일반 시민의 피의사실과 관련한

4) 법무부는 2022년 7월 공보의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오보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감안하여 서면자료 외 공보방식을 다양화하고 수사 담당자의 직접 공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선하여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보도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수사 대상이 누구든 간에 피의사실 보도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일관된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겠지만, 명확한 기준의 정립과 사회적 합의가 지연되면서 관련된 논의가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정당한 피의사실 보도가 맹목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검찰과 언론의 정치적·경제적 이득을 노린 비윤리적 피의사실 공표·보도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피의사실 보도가 불가피하다면, 논쟁을 정파적으로 소모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공익적 목적과 효과가 큰 ‘좋은’ 피의사실 보도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립하여 순기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언론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데 검찰 수사와 관련된 피의사실 보도가 큰 영향을 미치고 범조 보도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비등하면서 취재 현장에서도 바람직한 범죄 수사 보도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원하는 상황이다. 피의사실 보도를 무조건 최악시하는 규범적 비평을 넘어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논의가 필요한 단계다.

그러나 피의사실 공표죄 존치의 적절성에 대한 법학자들의 논의와 비교할 때 피의사실 보도에 관한 언론학자들의 논의는 많지 않다. 피의사실 보도 관련한 명예훼손 청구 소송에서 기각과 인용의 요건을 언론학 관점에서 분석한 김희경·유수정(2022)의 연구와 판례 분석을 통해 피의사실 보도가 법적으로 면책받는 요건을 밝힌 정영주·박성순(2020)의 연구, 수사공보규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토대로 알 권리와 인격권이 조화된 범죄 보도 방향성을 고민한 박희봉·한동섭(2020)의 연구를 제외하면 관련한 논의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그간 피의사실 보도와 관련된 논의는 법학계에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비판적 논의와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연구는 저널리즘의 고유한 가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보니 범죄 수사 보도 일체에 대한 부정적 시선 아래 수사기관의 범죄 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모든 범죄 보도는 공판 청구 이후에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김기창, 2005; 김태홍, 2013; 김봉수, 2019). 언론의 자유나 알 권리가 무제약의 기본권이 아님을 들어 형사사건에 대하여 일정 기간 보도 제약을 두는 것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거나(김기창, 2005) ‘알 권리 도그마’의 과잉을 지적하며 피의자의 인격권과 알 권리 또는 언론의 자유 간 이익교량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조기영, 2022), 심지어 공소 제기 전까지뿐 아니라 1심 재판 종결 전까지 피의사실의 공개를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까지 제안한다(한상훈, 2021).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까지 지연될 뿐이라는 것이다(박상기, 2013).

본 연구는 이처럼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피해 법익에 치중하여 알 권리의 훼손에 대한 소극적 관심에 그치는 접근을 넘어, 저널리즘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언론학적 관점에서 피의사실 보도 논쟁을 재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피의사실 보도가 사법과 언론이라는 상이한 영역 간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법적 논의에 지나치게 경도되기보다 사법적 원칙과 저널리즘 윤리를 적절히 조화시킨 해법이 요구된다. 물론 이러한 연구가 기존 논의를 뒤집어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격권의 중요성을 도외시하고 알 권리의 중요성만을 강변하는 방향이 되어선 곤란하다. 무분별한 피의사실 보도의 폐해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분명 설득력이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정치 갈등을 사법화하고 형사사건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형적 정치문화(김기창, 2005)에 언론이 동원되거나 협력했다는 지적도 부정하기 어렵다. 뉴스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저널리즘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은 이러한 우려와 비판을 불식시키며 변화를 통해 책임 있는 응답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균형 있게 충족시킬 수 있는 정당한 피의사실 보도의 요건을 제안할 것이다. 피의사실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기자들이 맞닥뜨리는 조건은 상황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띠는 한계는 불가피하지만, 현장

의 언론인들이 실무에 참조하거나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요건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보도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와 한계를 판시한 법원 판례와 바람직한 피의사실 보도의 방향을 기술한 언론 윤리강령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정당한 피의사실 보도의 요건을 도출할 것이다. 이어 요건의 모호성을 부분적이거나 극복하고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몇 가지 실제 보도 사례를 가져와 제안된 요건과 대비하고 보도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검토할 것이다.

## II. 기존 판례와 윤리강령 검토

### 1. 법원 판례 분석

법원이 형사 판례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경우는 드물지만, 피의사실이 공표된 결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인용되거나 기각된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요건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이 피의사실 공표행위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기준에 부합한다면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보도해도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피의사실 보도는 그 자체로 위법이 아니므로 위법성의 조각과 직접적 관련성은 없지만,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피의사실 공표와 보도의 요건을 참조한다면 윤리적으로 정당한 피의사실 보도의 요건을 도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해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런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125, 10222 판결).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발표는 ▲ 일반 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 ▲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공식 절차에 따라야 하며 ▲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언론 보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도 함께 내렸는데, “신문보도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라는 또다른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과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위법성의 조각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고, 이러한 이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서는 보도 목적의 공익성과 보도 내용의 공공성, 보도 매체의 성격과 보도 내용이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인가의 여부, 보도의 근거가 된 정보원의 신빙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과 공정성 및 그 표현 방법,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 등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私人)의 경우 가급적 익명을 사용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 10125, 10222 판결).

또다른 여러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언론이 피의사실 보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고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79262 판결). 한편 대법원은 또다른 사건 판결에서도 보도 내용이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달리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도가 없고 보도의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해 피해 구제만으로 명예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므로, 언론기관은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보도 내용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요컨대 법원은 피의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조건으로 보도 목적의 공익성과 보도 내용의 공공성 및 긴급성을 제시하였고,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는 증거가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면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기사 작성 방식에서 피의자의 혐의를 확정된 범죄로 오해하지 않도록 내용과 표현에 주의하고, 피의사실 정보를 입수한 경로와 방법이 확실하고 투명해야 하

며, 피의사실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정영주·박성순, 2020; 김희경·유수정, 2022). 이상의 항목들은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해석해도 무방해 보인다. 다만 이러한 요건들은 공공성·객관성·공정성 등 언론학 내에서도 논쟁의 소지가 있는 다분히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과 주체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질 소지가 있으므로,<sup>5)</sup> 구체적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고 자의적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높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 내용을 상세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 2. 언론윤리강령 분석

국내 언론단체나 언론사가 마련한 언론윤리강령과 준칙에도 범죄 수사 보도로 인한 피의자의 명예훼손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저널리즘을 실현하기 위한 조항들이 다수 규정되어 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채택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이 일반적 보도준칙을 제시한 제3조를 보면, 제8항(피의사실의 보도)에서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는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뒤, 그 1항(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에서 ‘언론인은 형사사건의 피의

5) 피의사실을 공표한 수사기관과 이를 보도한 언론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의 판결을 분석한 김희경·유수정(2022)은 법원조차 보도의 진실성과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준과 적용 방식은 일관되지 않았으며, 보도의 표현 양식과 관련해서도 독자가 오인할 수 있는 단정적 표현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자 및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현행범인 경우와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경칭의 사용 여부는 개별 언론사의 편집정책에 따른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2011년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에도 참조할 만한 조항들이 있다. 이 준칙의 제2장(인격권)은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뒤,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언론은 범죄 사건의 경우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규정하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및 피해자,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윤리적인 범죄 수사 보도에 대한 고민을 담은 준칙을 마련한 언론사들도 있다. 공영방송 KBS는 2020년 개정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서 '모든 범죄의 피의자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단정적 표현을 금지했다. 또한 ▲ 피해자의 신원 파악 등과 같이 사건수사를 위해서 공개수사가 불가피한 경우 ▲ 연쇄범죄의 가능성이 있어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공표가 필요한 경우 ▲ 국정에 관한 사항이나 국민이 의혹을 가지는 사건 등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피의사실을 보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피의자의 전과, 프라이버시, 가족관계 등을 보도할 때 과연 보도할 만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흥미를 위해서 피의자의 신상에 대해 보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직자 또는

대기업 고위관리자 등의 경우, 직책이나 직함이 범죄사실, 사고 등 기사 내용의 일부를 구성할 때는 직책, 직함을 익명처리된 성명 표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자사 취재보도준칙에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을 따로 마련해놓고 있다. 2020년 개정된 이 세칙의 기본원칙을 보면, ‘독립적 취재와 보도’ 조항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사실 확인을 통한 객관적 보도 및 진실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사기관이나 피의자 또는 다툼이나 분쟁의 관련자들 가운데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소홀하게 취재하지 않는다. 또한 그 보도가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유의한다’고 명시했고, ‘사건 관련자의 신원 보도’ 조항에서는 ‘공인이 아니거나 공익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증인 및 피해자는 물론 수사 대상자, 그리고 가족 등의 이름, 거주지, 소속 기관, 직위 등을 함부로 보도하여 그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신원에 대한 보도는 더욱 주의한다’고 밝혔다. 이 세칙의 ‘수사 단계의 취재 보도’ 조항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1) (신중하고 정확한 기소 이전 보도) 수사 기관이 기소하기 전까지는 독립적 취재, 교차 검증 등을 통해 사실을 최대한 확인하는 노력을 한 뒤 신중하게 보도한다. 관련 사실의 실체는 재판 단계에 가서야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신속성보다 정확성을 우선한다.

2) (일방적, 단정적 보도의 지양) 범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 수사(내사 포함) 또는 고소·고발 단계에서는 수사 대상자에게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혐의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거나 제목을 달지 않도록 유의한다.

3) (발표 주체의 공개) 보도에 등장하는 혐의 내용 등 사실관계는 출처와 취재원을 최대한 자세하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취재원이 익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취재보도 준칙의 익명처리 원칙에 따른다.

4) (익명 보도) 수사 기관 관계자를 익명으로 인용하여 보도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그 발언의 사실 여부는 다른 경로를 통해 추가 확인하여 교차 검증하고, 피의자의 반론을 반영한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반론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사실을 기사에 밝히되, 이것이 수사 기관 관계자 발언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란 점을 각별히 유의한다.

5) (수사 대상자 호칭의 구분) 범죄 혐의를 받는 수사 대상자는 수사 기관 입건 전에는 용의자, 입건 뒤에는 피의자로 표현하되 피의자가 현행범이거나 범죄를 인정할 만한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인질 사건과 같이 범죄행위가 다수에게 공개된 경우에는 범인(인질범, 유괴범, 납치범 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6) (수사 대상자 실명 공개) 수사 대상자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은 당사자 의사에 반해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통상 3급 이상) 등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의 경우, 범인의 체포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상 필요한 경우, 다수 언론에 의해 그 실명이 널리 공개되어 익명 유지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편집국장 등 취재보도 부문의 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결정한다.

7) (수사 대상자의 가족, 친인척, 지인의 신원 보호) 수사 대상자의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의 신원은 수사 대상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여,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을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사 대상자의 실명 공개 기준에 준하여, 공인이거나 널리 알려진 인물인 경우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편집국장 등 취재보도 부문의 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결정한다.

8) (반론 보장) 반론과 교차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방의 진술이나 주장만으로는 진실에 닿을 가능성이 낮은 만큼, 반론을 기사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상황, 어떤 단계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쪽 주장을 길게 나열해 기정사실화한 뒤 짧게 반론을 덧붙이는 보도는 지양하고, 처음부터 충분한 반론을 반영한 종합적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 ① 공소장 등 수사 기관의 공식 발표를 기사화할 경우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반론을 충분히 반영한다. 이들의 입장을 직접 취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피의자 쪽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관련자를 취재하여 최대한 균형감 있게 보도하도록 한다.
- ② 피의자 쪽 주장을 기사화할 경우에도 한쪽의 주장임을 명백히 하고, 수사기관 쪽 반론 또는 해명을 함께 실도록 한다.
- ③ 반론은 기사 제목의 주제 또는 부제에 반영한다. 반론을 반영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확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기사에 반영하고, 후속 보도를 통해서라도 다루도록 노력한다.

9) (선입관 조장에 유의) 수사 대상자의 수사 기관 출석 또는 출석 연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태도 등 혐의와 직접 관련 없는 사안을 보도할 경우엔 독자에게 유무죄에 관련한 선입관을 심어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보도한다. 수사 대상자의 범죄 전력도 독자에게 선입관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수사 중인 사안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해 보도 여부를 결정한다. 독자를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 수 있는 감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도 최대한 피한다.

10) (사생활 보호) 수사 대상자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의 사생활은 범행 동기 등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이상 보도하지 않는다. 그 가족이나 주변 인물에 대한 취재보도가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한다.

11) (오보 대응 및 사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해도, 수사 단계의 보도에서 오보나 표현의 잘못 등이 인정되면 이를 시인하고, 당사자의 권익이 최대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분명하고 충분하게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과의 뜻을 함께 밝힌다.

윤리강령이나 준칙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조건이나 상황을 모두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없으므로 결국 도덕과 규범을 일반론적으로 천명하게 되는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확인하도록 노력한

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존중해야 한다’,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항상 유의한다’, ‘각별히 주의한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만으로는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지침이 되기 어렵다. 예컨대 피의자의 반론을 기사에 반영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노력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 ‘최선’이라 할 수 있으며, 노력했지만 끝내 취재에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윤리는 의무와 강제의 영역이 아니며 일정한 추상성을 떨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더라도, 이처럼 추상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이는 결과적으로 언론윤리에 대한 무관심을 야기한다. 따라서 기존 강령이 제시한 언론윤리의 방향성을 반영하되 이를 좀더 미시적 현실 수준으로 끌어내려 어떤 보도까지 가능하고 어떤 보도를 해선 안 되는지, 어떤 노력과 주의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참조 가능한 비교적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Ⅲ. 정당한 피의사실 보도의 요건

이 장에서는 앞서 검토한 법원 판례와 언론의 윤리강령을 종합하여 피의사실 보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요건을 도출해 제안한다. 앞의 세 가지 요건은 피의사실 보도가 가능한 대상 사건이 무엇 인지를 규정하는 요건이며, 뒤의 네 가지 요건은 피의사실 보도의 형식과 방법에 관련한 요건이다. ‘무엇을’ 보도할 것이며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를 규정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최악시해선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피의사실 보도는 지극히 제한된 사안에 대하여 엄격히 정제된 방식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요건들은 탐색적 차원으로서 필요충분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계속 보완되거나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 1. 피의자가 공인일 경우

공인이 피의자인 사건의 수사 내용 및 피의사실은 보도할 수 있다. 법원은 공인<sup>6)</sup>에 대한 언론 활동의 경우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명예훼손 책임을 면제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원칙은 피의사실 보도에도 유사하게 적용되어야 한다.<sup>7)</sup> 공인이 피의자인 범죄는 대중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이 크다는 점에서 당연히 알 권리의 영역에 속해 있으며, 사인과 달리 공인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경제적·상징적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로 인한 권리 침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물론 공인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그가 가지고 있는 방어적 수단의 수준에도 큰 차이가 있으며, 언론은 공인 피의자의 유형을 준별하여 보도의 방식과 수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나 재벌 총수 등의 권력형 비리 사건의 경우 검·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기소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안을 탐사하여 수사기관이 밝혀내지 않은 새로운 피의사실을 발굴하고 수사 과정을 감시하는 일은 언론의 본령에 해당하므로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

이 같은 원칙은 뒤집어 말한다면 사인(일반 시민)에 대한 범죄 수사

6) 공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획정한 기준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법원도 공인 개념을 명확히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공인으로 인정된 판례와 선행 연구(심석태, 2016; 이승선, 2020)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직무에 부여된 재량권이 크고 대중에 갖는 영향력이 막대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공직 입후보자뿐 아니라 판·검사, 법무·국방·감사·치안·세무·금융 분야 공직자, 언론·문화·체육 분야의 유명인사, 대기업 경영자와 재벌 총수 등을 공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7) 대법원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의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보도와 피의사실 공개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인의 피의사실은 보도 대상’이라는 요건은 언론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보도와 선정주의를 정당화하는 명분이 아니라, ‘보도 대상이 공인의 피의사실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무차별적 보도를 제한하는 근거로 작용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실적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보도자료나 중간수사 발표 등을 통해 사인의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보도는 비록 익명으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근절돼야 하는 관행이다. 아울러 여기서 한 가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범주는 공인의 가족이다. 배우자·부모·자녀 등 공인의 가족은 엄밀히 말한다면 사인이므로, 범죄가 공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다면 보도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가령 공인의 자녀가 학원폭력이나 음주운전 등 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공인인 부모가 범죄를 은폐하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등 범죄 수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상당한 물증이나 정황이 없는 한 이러한 사안은 보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다만 공인의 가족 또는 친인척이 공인과의 관계를 내세워 부당한 대가나 특혜를 제공받는 등 공인의 지위와 연관성이 분명할 경우엔 공인이 직접 연루되지 않은 사인의 범죄라 하더라도 당연히 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2. 국민 안전과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경우

피의자가 사인이라 하더라도 국민 안전과 제도 개선 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을 보도할 수 있다. 이 요건은 법원 판례에서 모호하게 표현된 공익성과 공공성이라는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론이 범죄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포싱 등 신종 범죄나

전세 사기 등 정보의 유무가 범죄 피해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고하여 범사회적으로 확산하는 피해를 줄이는 것은 언론의 공적 역할에 해당한다. 특히 빨리 보도되어 공유될수록 추가 피해자 양산을 막거나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긴급성이 있을 때 보도의 필요성은 한층 더 커진다.

또한 범죄 수사 과정에서의 보도가 부당한 사법 관행을 변화시키거나 정책·법령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피의사실 보도는 정당화될 수 있다. 예컨대 2020년 ‘n번방’ 사건으로 불린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의자 조주빈은 공인이 아니었지만, 체포 이후 송치 전 단계에 이미 수사 과정과 피의사실이 상세하게 보도되었고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뜨거운 분노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철저한 수사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미온적 태도를 견지해온 검·경과 법원을 압박했다. 뒤늦게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검찰은 유사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재수사에 들어갔고(최형원, 2020. 3. 25.), 법원은 새로운 양형 기준 마련에 나섰다(박지애, 2020. 3. 25.). 피의사실 보도가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해악을 알려 여론을 촉발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sup>8)</sup>

### 3. 반사회적 중대 범죄의 경우

중대 범죄의 경우 유무죄 다툼이 없는 피의자에 한하여 피의사실을 보도할 수 있다. 이 요건 역시 보도 목적의 공익성 및 보도 내용의 공공성과 관련이 있다. 납치, 테러, 연쇄살인, 친족살인, 혐오범죄, 인신매매 등의 반인륜·반사회 범죄처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 공동체의 기본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사건으로서 피의자가 현행범이거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등 유죄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 보도가 가능

<sup>8)</sup> 최근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의사실 보도가 피해자 보호조치와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는 여론을 불러일으킨 것도 유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하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 법무부의 연방검사 업무지침에 따르면, 이미 사건 내용이 대중에게 상당히 알려진 경우, 수사 중에 있다는 사실이나 수사 진행·진척 상황의 공개로 시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사실 공표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김봉수, 2011). 피의사실 보도를 억압하고 적절한 공보 절차가 뒤따르지 않으면 허위정보에 기반한 소문을 양산할 수 있기도 하거니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수사에 대한 정보 제공은 국민의 알 권리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만 무유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성급히 범인을 단정하는 보도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며, 피의사실에 관한 불확실하거나 과장된 추측성 보도는 오히려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자제되어야 한다. 또한 반사회적 중대 범죄의 범위를 지나치게 폭넓게 잡아 무분별한 범죄 보도가 이루어지는 일 역시 용납될 수 없으므로, 어떠한 범죄까지 중대 범죄로 간주할지에 대한 언론계의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신상 공개를 결정한 사건들의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귀납적으로 보도 가능한 범죄의 기준을 도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때에도 범죄 내용에 대한 보도와 피의자의 신원에 대한 보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피의자의 신상과 사생활을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일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인격권 침해 예방할 수 있다(이승선·김연식, 2008). 앞서 언급한 조주빈의 사례와 같이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 개인적 서사를 공개하는 보도가 정당한지에 대한 별도의 고민이 필요하다. 법원 판례와 언론 윤리강령에서도 사인의 경우 가급적 신원 노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와 같이, 신상 공개가 가져올 공공적 이익과 그로 인한 피의자 및 가족의 인격권 침해 등을 비교衡量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다.

#### 4. 독립적 취재와 교차 검증

위에 열거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의사실 보도는 수사기관의 발표나 확인이 아닌 독립적 취재를 통해 엄격한 교차 검증을 통과한 사실을 근거로 이뤄져야 한다. 언론인들이 말하는 ‘객관적 사실’의 요건은 선형적으로 결정돼 있는 게 아니라 직업집단 내부의 인식과 관행 속에서 담론적으로 구성된다. 그간 한국 언론의 ‘사실성’ 요건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복수 취재원에 대한 삼각확인을 요구하는 해외 언론의 그것과 비교할 때 매우 관대했으며, 특히 전통적으로 범죄 수사 보도의 경우 오로지 수사기관의 일방적 발표와 확인만으로 사실성이 충족된다는 것이 기존 경찰·법조 기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관행적 인식이었다. 권력 감시를 위한 의혹 제기라는 언론의 책무를 수행한다는 논리가 명분을 제공했고, 강제 수사권이 없는 언론의 필연적 한계가 부실한 사실성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발표나 확인이 그 자체로 사실을 구성한다는 도그마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우며, 범죄 수사 보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느슨한 요건이 적용되었던 관행을 재고하고 오히려 반대로 더 엄격한 사실성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보도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진실성과 상당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언론이 실체적 진실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그 한계 속에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편의적으로 사실을 구성하는 것은 피의자의 명예와 인격에 미치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고려할 때 분명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공인에 대한 피의사실 보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언론 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에 해당하는지 상당성을 잃은 악의적인 공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서 ‘취재 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들고 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수사기관의 발표나 관

계자의 개별적 확인만으로 기사를 쓰는 것은 관행상 범죄 수사 보도의 주요한 취재 방식이었지만, 법원은 수사 관계자의 비공식적 확인이나 정보 제공에 의존해 보도한 경우 이것만으로 진실 오신의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며(이승선·김연식, 2008),<sup>9)</sup> 수사기관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경우에도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김희경·유수정, 2022). 설령 수사기관이 공식 절차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받아쓴 경우 상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실제적 진실인 것처럼 기사화되고 여기에 위법성 조각의 효과까지 부여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양재규, 2017).

요컨대 수사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취재를 통한 확인과 검증이 피의사실 보도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아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의 눈높이를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일방적 발표나 보도자료를 받아쓰는 ‘발표 저널리즘’은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정보를 문답의 맥락상 추정하여 ‘알려졌다’, ‘전해졌다’와 같은 무주체 서술어로 기사에 담아내는 관행도 마찬가지다. 언론은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수사기관에 의해 발표되거나 유출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교차 검증해야 하며, 수사기관 외부에서의 취재를 통해 검증되지 않았다면 해당 피의사실은 가급적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sup>10)</sup> 그럼에도 부득이 보도해서 알려야 할 공적 이유가 있다면, 보도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과정과 보도를 결정한 이유를 투명하게 밝히고 보도 사실이 교차

9) 대법원은 수사 진행사항에 대한 정당한 발표권자가 아닌 사람의 비공식적인 확인을 거쳤거나 구속영장 사본 등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를 단순히 열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53425 판결).

10) 외부 취재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취재가 어렵다면 어떻게 할 이냐는 질문은 언제나 명확하고 일관된 해답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언론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의적 해석을 하는 것보다 가급적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수적 대응을 하는 쪽이 바람직할 것이다.

검증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음을 고지해야 한다. 물론 피의사실은 본질적 속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검증에 한계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모든 피의사실은 최종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니다), 이럴 땐 다음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5.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의 균형

수사기관과 피의자 측의 주장을 균형 있게 전달하며, 피의사실이 수사기관의 일방적 주장임을 기사에 명시해야 한다. 법정에서 엄격히 적용되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리로 발전한 것으로서 형사절차 이외의 일반법 영역에 확대 적용되지 않으며, 언론이 무죄추정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문재완, 2020b). 그럼에도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언론도 피의자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죄추정 원칙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윤리적으로 그 보도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는 언론인들이 주체가 되어 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인권보도준칙 등에서도 힘주어 천명한 바 있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피의사실과 피의자 측 주장의 균형성을 위해 힘쓰는 노력이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발표하는 피의사실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의 일방 당사자에 불과한 수사기관의 주장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열거한 피의사실 보도 대상이 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 중에 드러난 의혹을 단정적 사실처럼 보도해선 안 되며 피의자 측 해명과 반론이 양적·질적으로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한겨레 시행세칙에서도 밝히고 있듯 수사기관의 주장을 중심으로 서술하다가 마지막에 짧게 반론을 덧붙이는 형식적 기사는 지양해야 한다. 기사 구조, 문장의 배열 방식과 단어 표현 등 모든 측면에서 피의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의혹에 불과하며 피의자 측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음을 환

기시시켜야 한다. 물론 공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측은 입장 표명을 꺼리기 마련이므로 취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취재가 성사되지 않을 때는 가급적 피의사실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 보도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피의자 측과 접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사에 상세히 명시하고, 출고 이후라도 계속 접촉을 시도하여 의견을 반영, 기사를 수정해야 한다.

기사 본문뿐 아니라 제목에도 쌍방의 주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 기사 내용상으로는 제법 비중 있게 피의자 측 주장을 반영하였더라도 제목에는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피의사실만 강조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 판례 역시 독자가 기사 전체를 꼼꼼히 읽고 전체 맥락을 파악한 뒤 피의사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고 전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독자들은 기사 제목이나 일부 단어만으로 전체 내용을 추측하거나 맥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김희경·유수정, 2022), 현실의 뉴스 소비 행태에 맞춰 윤리적 요건도 설정되어야 한다. 최근 자살 사건 보도 시 자살예방 기관이나 긴급 도움 요청 방법을 안내하는 문구를 기사 하단에 첨부하는 일이 일반화된 것처럼, 필요하다면 피의사실 보도 시 해당 정보가 수사기관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함을 고지하거나 확정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유죄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문구를 상시 첨부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만하다.

## 6. 정보원의 투명성

정보 출처와 취재원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존 범죄 수사 보도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공식적 차원의 피의사실 발표를 기사화하는데도 발표 주체인 수사기관 담당자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식 브리핑의 경우조차 ‘관계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 수사 보도의 주어를 무조건 경찰이나 검찰로 상정하는 기사 작

성 관행(예컨대, ‘서울중앙지검은’)도 일반화되어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피의사실이 유포되면서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다. 수사기관 관계자가 수사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언론을 선별하여 은밀히 피의사실을 누설한 뒤 책임을 피해 가고 언론은 이를 단독으로 기사화하면서 수사기관과 언론이 유착하는 행태로, 익명 보도 관행이 양측의 공생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다.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공식 절차에 따라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봤을 때 위법적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창구를 통하여 정보를 습득한 보도라면, 법적으로 언론의 책임을 묻기 어렵더라도 그 보도는 윤리적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언론이 정보 출처를 감추는 관행을 계속 이어간다면 정당한 피의사실 보도마저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의 결과물이라고 간주하는 독자의 맹목적 불신을 피해 가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언론은 비공식적 절차를 통한 위법적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가담하여 단독 취재를 하던 관행과 절연하고 수사기관을 취재하여 밝혀낸 모든 피의사실의 취재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보도자료·브리핑 여부를 정확히 표기하고 해당 경찰관과 검사의 이름 및 직함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물론 공직자들이 노골적으로 익명을 요구하고 실명을 적는 기자의 후속 취재를 거부하는 한국의 왜곡된 공보 관행에서 취재원을 실명 인용하는 변화는 개별 언론인이나 언론사 차원의 결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sup>11)</sup> 기자단 전체의 합의와 단합된 행동을 통해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비로소 투명한 실명 인용이 윤리적 보도 요건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따져봐야 할 문제는 수사기관 내·외부에서 수사 과정의 비위와 관련된 제보를 한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 보도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럴 땐 익명 보도를 하는 이유를 상세히 밝히고 취재원이 위협해지지 않

11) 한겨레 시행세칙에서도 발표 주체의 실명 공개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보도에서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당 취재원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sup>12)</sup> 나아가 이런 예외적 경우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취재원의 실명을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 7. 수사 단계별 중계 보도 지양

출국금지·압수수색·소환조사 등 수사 단계에서 파생되는 단편적 사실 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언론은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단계별 이벤트를 ‘발생 사실’이라는 이유로 일일이 중계하는 관행을 고집해왔고, 이는 자연스럽게 수사 관련 보도의 과잉을 초래했다. 피의자의 출석이나 강제수사가 진행된다는 보도가 피의사실과 함께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주입되면 일반 독자들은 부지불식간에 수사기관이 두고 있는 혐의가 확정된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고, 이는 유죄의 낙인을 형성해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 피의자가 검찰청에 출두하는 장면이 본인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되면서 인격권이 침해될 소지도 있다. 혐의의 경중이나 실제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당연히 행하는 절차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중계식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물론 단계별 수사 과정 전달 보도가 모두 잘못된 건 아니다. 전·현직 고위공직자나 재벌 총수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두하는 장면은 알 권리를 위해 언론이 전달할 필요가 있고 역사적 기록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압수수색·구속 등 일부 강제수사는 수사의 방향이나 피의사실의 본질에 관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한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언론사의 자체 판단을 통해 제한적으로 보도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언론의 범죄 수사 보도는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수사기관의 사소한 행위 하나하나를 모두 기사화하며, 이런 파편화된 사실 보

12) 예컨대, 다른 취재원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별다른 설명 없이 ‘법조계에 따르면’과 같이 모호하게 처리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도가 남발되다 보니 수사 관련 보도가 폭증하고 필요 이상으로 주목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다.<sup>13)</sup> 이 요건은 피의사실 보도가 사안의 핵심에 집중하고 피의자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면서 최대한 절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아울러 피의사실의 본질과 무관한 조사 과정에서의 에피소드나 가십 등 주변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행태도 지양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의 부분적 진술, 조사받는 태도나 개인 서사 등 사소한 정보를 강조하여 대중의 즉흥적 관심을 자극하거나 피의자를 모욕주는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 수사기관과 달리 언론은 법적 처벌 여부를 넘어 도덕적 비판도 함께 수행할 수 있지만, 이런 비판은 사법적 판단을 앞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고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IV. 보도 사례를 통한 요건의 적용

이 장에서는 본 연구가 제안한 피의사실 보도의 요건을 몇 가지 범죄 수사 보도 사례에 적용하여 보도의 정당성을 가리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따져볼 것이다. 실제 사례를 참고하고 인용하는 이유는 본 연구를 수행하기 이전의 보도를 소급하여 재차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피의사실 보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기준 없이 비판받았거나 반대로 관습적으로 당연시됐던 기사들을 평가해보는 과정을 통해 앞서 제시한 요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향후 피의사실 보도의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생산적 목적임을 밝혀둔다.

13) 2023년 3월 배우 유아인이 마약류 투약 혐의 관련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언론사 취재진 앞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한다”는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연예인의 마약 투약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나 재벌 총수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와 비교할 때 시민의 사회적 삶에 미치는 영향과 공적 의미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 이런 경우까지 장기간 출석 조사를 마치고 나온 직후 귀가 장면을 보도하는 건 알 권리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 국민의 알 권리와 대중의 알고자 하는 욕망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 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보도 사례

최근 피의사실 보도와 관련해 가장 뜨거운 논란을 촉발한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사였다. 조 전 장관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인으로서 그의 수사 과정 중 피의사실에 대한 보도는 그 자체로 정당화되기에 충분하다. 고위 공직(후보)자인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취재와 보도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다만 당시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의 부인과 자녀를 함께 겨냥했고 언론도 이들의 입시비리 의혹에 높은 비중을 두고 보도한 점을 놓고 일각에서 사인인 가족들까지 보도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검토가 필요하다. 2023년 2월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sup>14)</sup> 본 연구 이후 선고가 이뤄질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에서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조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피의사실이 공인인 조 전 장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언론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엔 충분할 것이다. 이러한 정황과 앞서 언급한 ‘피의자가 공인일 경우’ 요건에 비춰볼 때 조 전 장관 가족의 피의사실에 대한 보도는 충분히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sup>15)</sup>

14) 이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도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해당 범죄에 공모했음이 인정된 바 있다.

15) 이밖에도 조 전 장관 수사 보도에 대한 비판에는 언론의 기능과 취재 메커니즘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작용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많은 기사가 검찰 취재원에 의존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보도 전체를 싸잡아 검찰발 ‘받아쓰기’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2019년 8월 19일자 한국일보의 <조국 딸, 두 번 낙제하고도 의전원 장학금 받았다> 기사와 8월 20일자 동아일보의 <고교때 2주 인턴 조국 딸 의혹논문 제1저자 등재> 기사, 8월 20일자 경향신문의 <조국 ‘사모펀드 투자’ 다음 해... 운용사에 ‘얼굴 없는 53억’> 기사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이전 단계에 언론이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 선제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탐사보도 사례이다(검찰이 공개수사에 착수한 시점은 서울중앙지검이 부산대와 고려대, 응동학원 등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2019년 8월 27일이었다. 이날을 기점으로 이전까지는 주로 언론이 자체 취재를 통해 선제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보

그러나 보도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개별 기사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여지는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밝혀낸 피의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피의사실을 전달하는 방식에 신중을 기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소홀하다면 보도의 윤리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2019년 9월 17일 조선일보의 <[단독]“조국 가족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수법, 영화 기생충과 닮았다”> 기사는 다섯 번째 원칙인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의 균형’을 잃고 수사기관의 주장에 편향된 시각에서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작성된 기사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리드로 시작된다.

딸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가 동양대 재직 중 아들 조모(23)씨에게도 총장 직인이 찍힌 증명서를 여러 장 위조해 발급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앞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본지에 “정 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동안 딸을 포함해 모두 4명에게 임의로 (상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고, 검찰도 이같은 혐의를 입증할 여러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수사기관 외부, 즉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동양대 관계자를 별도 취재해 정 교수가 표창장과 수료증을 위조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앞서 제시한 ‘독립적 취재와 교차 검증’의 요건을 상당 부분 충족시킨 것으로, 검찰 취재원에만 의존하는 전형적 기사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추가적 사실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위조했다’는 단정적 표현을 쓰는 것은 위험하다. 아직 해당 사실은 검찰과 동양대 측의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나중에 정 교수

---

도가 많았고, 이후로는 검찰의 수사 진척 상황을 파악해 알리는 보도가 많아졌다). 또한 언론이 제기한 의혹 중에는 기소나 유죄 판결에 이르지 않은 경우도 많았지만, 이런 이유로 강제수사권이 없는 언론의 의혹 제기를 모두 비윤리적이라 단정한다면 결과적으로 권력 감시 기능의 위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기사에 담긴 피의사실은 최종적으로 실제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기사가 작성된 단계에서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면 확정된 범죄자가 아닌 피의자로서 정 교수의 입장이 함께 제시되며 기사가 양적·질적으로 균형을 갖춰야 하지만, 기사에 정 교수 측의 입장은 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이 내놓은 반박(‘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실제로 봉사활동을 해서 받은 표창장”이라고 주장했다’)이 단 한 줄 첨부되어 있을 뿐이다.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는 모호한 근거로 검찰 측 수사 결과를 기정사실로 단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균형을 잃은 기사 작성 방식이다. 기사 제목에서 피의자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발언(“기생충과 닮았다”)을 따옴표를 통해 그대로 인용한 것도 문제가 있다.

여섯 번째 요건인 ‘정보원의 투명성’도 떨어진다. ‘동양대 표창장과 수료증 등을 대조하는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기나 형태가 거의 똑같았다고 한다’, ‘실제 표창장은 더 늦게 위조된 단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와 같이 취재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피의사실이나 수사 진척 상황을 전하는 문장이 계속 등장한다. 결정적 증언을 했고 제목에 인용된 발언을 하는 등 기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재원인 동양대 관계자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익명이 불가피했다면, 얼마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취재원인지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라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

## 2.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관련 보도 사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았다. 2016년 12월 20일 한겨레는 <[단독]우병우 “해경 상황실 서버 수색 말라”...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 기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를 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의 교

신 기록이 저장된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특검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조국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요직에 있었던 공인으로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과정을 알리고 피의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에 해당하므로, 공판 청구 전 해당 사실을 보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될 순 없다. 특검으로부터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결국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 판단 아래 우 전 수석을 기소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는 데 그쳤고 끝내 불기소 처분됐지만 우 전 수석이 수사팀에 전화를 걸었던 사실은 법리상 형사처벌 가능성과 별개로 국민이 알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으며, 공소 제기 전까지 보도를 할 수 없게 한다면 이러한 사안에서 알권리의 침해는 불가피해진다는 점에서 피의사실 보도의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된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도 유죄를 단정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기사는 리드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단정적 표현을 쓰고 있다. 전화를 걸었던 행위와 그 내용이 외압으로서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기사를 작성한 근거는 “검찰 및 특검의 여러 관계자들이” 한겨레 취재진에 그렇게 밝혔다는 사실뿐이다. 직권남용죄는 법리상 유죄 입증에 대단히 어려우며 수사가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도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사를 단정적으로 쓰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검찰 및 특검의 여러 관계자들’은 기사 전체에서 ‘검찰 관계자’, ‘특검팀 핵심 관계자’로 인용되며 어떤 성격의 취재원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독자가 신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고 우 전 수석의 전화를 받은 광주지검 수사팀 등 수사기관 외부 취재원을 통한

독립된 사실 확인은 없었다. 피의자 측 반론은 “우 전 수석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는 한 문장에 그쳤다. 물론 피의자 측이나 기타 취재원에 대한 추가 취재가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며 피의자 측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기사 내용만 놓고 봤을 때 결함이 있다는 평가는 불가피하다.

### 3. 사법농단 수사 관련 보도 사례

국민일보는 2018년 11월 27일 <[단독]檢,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이르면 30일 동시 구속영장 청구> 기사를 통해 사법농단 수사를 벌이던 검찰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획하고 있음을 보도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법관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은 사실로 확인된다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그 수사 과정과 피의사실이 국민의 알 권리 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관련 피의자들 역시 전·현직 사법부 최고위직 법관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공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의사실 보도가 정당하다고 해서 언론사들이 앞다퉀 모든 수사 단계를 중계식으로 보도하는 행태까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해당 기사는 “검찰이 이르면 오는 30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리드로 시작한다. 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뉴스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그러나 아직 영장이 청구된 것도 아닌데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단독으로 서둘러 보도할 만큼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실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점에서 보도해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제 구속영장은 기사가 적시한 11월 30일이 아닌 12월 3일 청구됐다는 점에서 시점도 맞

지 않았다. 기사는 또한 “검찰은 27일 고 전 처장을 세 번째 불러 조사한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일정도 구체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는데, 이처럼 ‘수사 단계별 중계 보도 지양’의 요건을 어겨 수사 일정과 계획을 먼저 알아내거나 넘겨짚어 보도하는 취재 경쟁은 과잉 보도를 야기하고 독자의 관심을 사안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자칫 검찰의 불필요한 ‘보여주기’식 수사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또한 이 기사는 피의자들이 “수사에서 비협조로 일관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크다”거나 “이들이 혐의 부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 “혐의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고 있다”는 검찰의 전언을 위주로 구성된 반면 피의자 측의 소명이나 입장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다섯 번째 요건인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의 균형성’을 현저히 잃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문장이 ‘검찰은’, ‘검찰에 따르면’, ‘검찰 고위 관계자는’과 같은 익명 취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알려졌다’, ‘전해졌다’, ‘과악됐다’는 의미가 불분명한 서술어로 끝맺고 있어 ‘정보원의 투명성’ 요건을 확보하는 데도 실패하고 있다.

## V. 결론을 대신하여

최근 한국 사회에서 피의사실 보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만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옥석을 가리지 않고 모든 피의사실 보도를 배척하거나 반대로 피의사실 보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옹호하는 주장이다. 전자는 주로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후자는 법조 기자들을 중심으로 한 언론계에서 제기된다. 접점을 찾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일방적 주장만 쏟아지다 보니 논의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적 보도가 반복된다. 수사기관은 자의적 기준에 따라 피의사실 공개

를 과잉 제한하는 공보 규정이나 훈령을 제정하여 알 권리의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평행선을 달리는 양극단의 주장에서 비합리적 측면을 배제하고 타당성 있는 측면을 취합하여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정당한 피의사실 보도의 윤리적 요건을 정립하여 실천함으로써 정당하지 않은 피의사실 보도가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법원 판례와 언론 윤리강령을 기초로 피의사실 보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을 도출해 제안했다. 모든 피의사실 보도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도,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보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언론은 제한된 조건에서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피의사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본 연구는 탐색적 차원에서 그간 논란이 되었던 요소들을 중심으로 일곱 가지 요건을 제시했지만,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요건을 보강하고 정교화하여 기자사회 전체가 현장에서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논문에서 제안한 일곱 가지 요건을 모든 보도에서 언제나 충족시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건 사실이다. 현장의 언론인들은 진실 보도의 위축을 초래한다고 우려하며 현실적으로 실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독립적 취재를 통한 교차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할 요건으로 제시한 부분은 취재원이나 시간의 한계상 현실에서 곧바로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취재 여건상 당장 실현할 수 없더라도 규범과 준거로서 일정한 요건을 설정하고 점진적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건 오늘날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언론으로서선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요구다.

뉴스 이용자들은 이미 언론에 매우 높은 수준의 윤리적 실천을 요구하고 있으며, 취재·보도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언론에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중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의 핵심에 범죄 수사 보도가 자리 잡고 있다. 언론의 존립 기반이자 뉴스의 소비자인 이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한다는 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할 뿐 아니라 현

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뉴스 생산 현실을 이유로 지금의 관행을 타협 없이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언론은 신뢰의 위기도, 산업의 위기도 극복하지 못한 채 어떠한 윤리의 구속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유사 언론에 자리를 내주고 말 것이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원칙을 언론인들에게 제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 참고 문헌

- 김기창 (2005). 피의사실 보도의 문제점. <피의사실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발제집> 16-39.
- 김봉수 (2011).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의 규범적 한계에 관한 고찰: 형법 제126조의 사문화 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9권 1호, 55-78.
- \_\_\_\_\_ (2019). 피의사실공표죄의 해석상 문제점과 그 실효성 확보 방안. <형사법연구>, 31권 3호, 173-197.
- 김성룡 (2014). 대중매체를 통한 범죄혐의 보도와 형사사법: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5권 4호, 350-354.
- 김태홍 (2013). 수사기관의 언론에 대한 범죄정보제공의 제한. <동아법학>, 61호, 89-122.
- 김현숙 (2019).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경찰법연구>, 17권 3호, 73-100.
- 김희경·유수정 (2022). 법원의 피의사실 보도 면책요건에 대한 언론학적 분석. <한국방송학보>, 36권 2호, 34-71.
- 문재완 (2020a).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헌법적합성 검토. <외법논집>, 44권 1호, 101-123.
- \_\_\_\_\_ (2020b). 범죄보도와 무죄추정원칙. <언론과 법>, 19권 2호, 77-111.
- 심석태 (2016). <사례와 쟁점으로 본 언론법의 이해>. 서울: 컬처룩.
- 박상기 (2013). <형법학>. 서울: 집현재.
- 박영흠 (2020). 법조 뉴스 생산 관행 연구: 관행의 형성 요인과 실천적 해법. <한국언론정보학보>, 101호, 268-304.
- 박용규 (2011). 한국 신문 범죄보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156-185.
- 박지애 (2020. 3. 25.). 'n번방' 양형기준 마련에 착수한 대법원... 국민의견 담길까. <파이낸셜뉴스> URL: <https://www.fnnews.com/news/202003251447590369>
- 박희봉·한동섭 (2020). 범죄보도에서 알 권리와 인격권의 조화: 수사공보규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19권 1호, 97-143.
- 양재규 (2017). 범죄수사 관련 보도자료 기사화(일명 '수사기관 처널리즘')의 법적 문제점. <미디어와 인격권>, 3권 1호, 179-208.

- 이승선 (2020). ‘공인’이란 누구인가?. <언론과 법>, 19권 2호, 115-162.
- 이승선·김연식 (2008).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제19권 가을호, 65-94.
- 이재진 (2022). 알 권리 개념의 변화와 새로운 지평. <언론중재>, 165호, 4-17.
- 임찬중 (2019). 피의사실공표·보도 필요성과 정당성 조건. <관훈클럽>, 2019년 겨울호, 11-18.
- 정영주·박성순 (2020). 피의사실보도의 언론면책 요건과 쟁점. <언론과 법>, 19권 1호, 61-95.
- 조기영 (2022).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69집, 165-195.
- 최형원 (2020. 3. 25.). ‘n번방 운영자 1년 선고’에 항소도 안한 검찰... 부라 부라 재수사, <KBS>, URL: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10101&ref=A>
- 한상훈 (2021). 피의사실 공표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전적, 절차적 예방의 모색. <형사정책>, 32권 4호, 247-283.
- 허경미 (2013).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죄의 논쟁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51호, 283-308.

■ **ABSTRACT**

---

## The Requirements for the Report of Facts of Suspected Crime

- Principles for Ethical Criminal Investigation Reporting -

Young Heum Park  
Senior Researcher, Korea Press Foundation

The media's indiscriminate reporting of facts related to suspect crimes has been a recurring source of social controversy, yet clear standards and principles for responsible criminal investigation reporting have not been established. There are conflicting arguments, either dismissing all reporting of suspect crime facts or advocating that such reporting is entirely acceptable.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seeks to establish standards for ethical criminal investigation reporting by striking a balance between judicial principles focusing on the rights of the suspect and journalistic principles emphasizing the public's right to know. Drawing from court precedents and journalistic codes of ethics, the study identifies and proposes seven requirements to justify reporting of facts related to suspected crimes. It argued that such reporting is permissible under the following cases: first, when the suspect is a public figure; second, when it contributes to public safet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third, when there is no dispute about the guilt or innocence of serious antisocial crimes. Nevertheless, the study also argued that the following requirements should be met even in these cases. Fourth, independent reporting and cross-verification are

required. Fifth, there must be a balance between investigators and suspects. Sixth, transparency of sources is necessary. Seventh, there should be no live coverage of each investigation stage. The proposed approach advocates against a strict prohibition on all reports of facts related to suspected crime while cautioning against indiscriminate coverage. Instead, it recommends that the media report carefully and responsibly under limited and specific conditions. The study also applied the proposed requirements to actual cases of criminal investigation coverage to identify problems and improvements. It acknowledges the difficulty of meeting all seven requirements consistently in every story; however, news consumers increasingly demand exceptionally high ethical standards from the media, which faces a serious crisis of trust and must adapt to survive.

Keywords: facts of suspected crime, criminal investigation reporting, journalism, journalism ethics

[ 논문투고일 2023. 6. 19. 논문수정일 2023. 7. 10. 게재확정일 2023. 7. 24.]



## 미디어와 인격권 관련 규정

「미디어와 인격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미디어와 인격권」 연구윤리규정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작성규정

##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5. 4. 17.  
개정 2016. 10. 10.  
개정 2017. 2. 3.  
개정 2017. 8. 23.  
개정 2018. 8. 17.  
개정 2020. 9. 1.  
개정 2022. 4. 7.  
개정 2022. 5. 4.  
개정 2022. 6.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발간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구성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논문심사위원의 위촉
3.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게재 결정
4. 그 밖에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제3조(회의의 소집)** ① 회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의 요구가 있는 때에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를 정하여 편집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의의 소집과 관련된 실무는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발간 주무부서가 담당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의결방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편집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③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대체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 편집위원의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가 심의 대상이 되거나, 편집위원이 논문의 저자·저자의 소속기관·심사위원과 재정적 또는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논문의 작성·심사 및 발간 과정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 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논문의 구분)** ①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기획논문: 논문의 저자가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한 해당호의 특집 주제에 응모한다고 명시한 논문

나. 연구논문: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해당호의 특집 주제와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의 일반에 관한 논문 및 언론법제 관련 판례 평석 등

다. 특별논문: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타 학술대회 및 위원회 주관 학술행사 등에서 발표된 주제논문 중 저자가 게재를 희망하고 편집위원회가 게재의 필요성을 인정한 논문

- ② 기획논문에 응모하는 저자는 <미디어와 인격권> 기획논문 연구제 안서(별지 1)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의 청탁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제안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 ③ 기획논문의 경우, 주제 적합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논문의 주제를 미리 정하여 청탁할 수 있다.
- ④ (삭제)
- ⑤ 연구논문 및 특별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논문 투고 시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 투고신청서(별지 2)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 투고 기준)** ① 논문의 투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 2. 관련분야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관련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등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격 확인을 위해 투고하는 저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논문은 반려한다.
- 1. 타 학술지에 게재하였거나, 투고하여 심사 중에 있는 논문
  - 2. 기획논문과 연구논문에 이중 공모한 저자(공동저자 포함)의 논문
  - 3. 학문적 수준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논문
  - 4. 동일 저자에 의해 이미 다른 형태로 타 출판물에 발표된 논문.  
단, 논문의 저자는 선행 출판물과 투고 논문의 상이성에 대해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으며, 논문의 상이성 여부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 ④ 연구기관 발간분석보고서 및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논문 형식으로 수정·보완하여 투고한 경우는 편집위원장의 판단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되, 원문의 출처를 밝히고 게재할 수 있다.
- ⑤ 편집위원의 이름으로 투고된 논문의 심사과정은 편집위원회가 관리하여 심사의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위원의 위촉)**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 ③ 논문의 주제가 학자가 평가하기 힘든 실무적인 분야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실무가 중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투고 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 ⑤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은 심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교체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특정 심사위원에게 심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동일한 투고자에게 중복된 심사위원이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⑦ 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 사유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9조(심사절차)** ① 투고된 논문은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의 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성명과 소속 등을 밝히지 않는다.
- ③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으며, 해당호에 논문을 투고한 사람은 해당호에 투고된 다른 논문의 심사를 할 수 없다.
- ④ 심사위원은 학술지 발간에 관한 예규 제7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제10조(심사평가)** ①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은 5단계로 구분하되, 점수를 병기한다.

1. 현행 게재(A): 85점 이상
2. 부분 수정 후 게재(B): 75점 이상 85점 미만
3. 대폭 수정 후 당호 재심사(C): 65점 이상 75점 미만

- 4. 대폭 수정 후 차기호 재심사(D): 55점 이상 65점 미만
  - 5. 게재 불가(E): 55점 미만
- ② 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관련하여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심사결과와 통보 및 이의제기)** ① 위원회는 논문의 저자에게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심사 결과 통지서(별지 3)를 첨부한 언론중재위원회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 ② 논문의 저자는 심사결과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저자는 의견 또는 반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③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이의제기에 대한 최종 판단은 편집위원회가 결정하며,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맡길 수 있다.

**제12조(논문의 수정)** ① 제10조제1항제2호~제4호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수정요구가 있는 경우, 저자는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호 및 제4호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차기호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논문을 다시 제출하는 경우, 저자는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논문수정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별지에 기록하여 수정된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지적사항별로 ‘수정’ 또는 ‘수정불가’의 이유를 밝힐 수 있다.
- ③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정된 논문이 다시 제출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논문수정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정된 논문이 다시 제출된 경우, 편집위원회가 자체 심사를 하거나,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수정된 기획논문이 차기호에 제출된 경우, 해당 기획

논문이 차기호 기획주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연구논문으로 전환될 수 있다.

**제13조(게재 논문의 확정)** ① 게재 논문은 발간 기한에 맞춰 심사 및 수정절차를 완료한 논문 중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② 원고료는 편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게재를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지급하며, 게재가 최종 확정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게재 확정 사실을 통보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편집위원 및 각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의결: 2015년 4월 17일)

####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16년 10월 10일)

####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17년 2월 3일)

####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17년 8월 23일)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되, 제1조는 2015년 4월 30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의결: 2018년 8월 17일)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20년 8월 12일)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22년 4월 7일)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22년 5월 4일)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22년 6월 21일)

[별지 1]

**<미디어와 인격권> 기획논문 연구제안서**

<b>접 수 번 호</b>		<small>*위원회 기재</small>
<b>제안대상 주제</b>		
<b>성 명</b>	<b>국 문</b>	
	<b>영 문</b>	
<b>소 속 및 직 위</b>		<b>최종학위</b>
<b>주 소</b>	<b>직 장</b>	(우편번호: )
	<b>자 택</b>	(우편번호: )
<b>연락처</b>	<b>근 무 처</b>	
	<b>휴대전화</b>	
	<b>전자메일</b>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권 제○호  
 기획논문 주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연구를 제안합니다.

제안일자            년            월            일

제 안 자            \_\_\_\_\_ ( 인 )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중**

## 기획논문 연구제안서

### 1. 논문제목

가. 국문:

나. 영문:

### 2. 연구개요

### 3. 연구방법론

### 4. 연구내용

### 5. 관련 연구실적 목록

※ 응모 주제와 관련된 응모자의 연구실적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6. 기 타



[별지 3]

##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심사 결과 통지서

투 고 자		투고일	
논문제목			
심사결과			

### 1. 심사결과

※ 세부 심사의견은 별첨 '심사위원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유의사항

### 3. 이의제기 방법

<별첨>

## [심사위원 의견서]

심사평	
심사위원 ①	
심사위원 ②	
심사위원 ③	

##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5. 4. 17.  
개정 2017. 2. 3.  
개정 2018. 8. 17.  
개정 2019. 11. 29.  
개정 2021. 12. 2.  
개정 2022. 11.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발간에 관한 예규(이하 “학술지 예규”)에 따라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위반행위 발생 시 공정한 검증과 처리에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제출한 사람(이하 ‘연구자’라 한다) 및 해당 저작물의 심사·게재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연구자의 연구윤리)**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위조, 변조, 또는 표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 또는 누락하여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한다.)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하여 투고, 게재 또는 출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연구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학술자료 및 연구성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 ⑤ 연구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규정 준수확인서(별지 1)를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연구자는 본인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공동저자로 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별지 2)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해 이해상충이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① 학술지 예규 제5조에 따라 위촉된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위원(이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에 상관없이 학술지 예규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원고작성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논문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편집위원회가 정한 심사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 위반행위)** “연구윤리 위반행위”란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논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3조 제2항의 위조, 변조, 표절 행위 및 제3조 제3항의 행위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특히 연구자와의 특수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 저자표시 행위
3.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연구와 관련하여 사회과학 분야 등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제출된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언론중재위원회에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1인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심의대상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의 연구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심의)** ① 위원장은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과 관련, 제보 등을 통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 등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된 연구자 및 피검증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지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실성을 판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연구자 및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심의 및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⑧ 제보자 또는 피검증자 등은 연구윤리위원회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연구윤리위원회는 당해 조사와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 위원회가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한 때에는 논문의 게재를 즉시 중단한다.

②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된 논문이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다음회에 발간하는 학술지에 저자와 제목을 명시하여 게재 취소사실을 공시한다.

③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한 연구자는 향후 10년간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거나 발표를 할 수 없다.

④ 위원회가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한 경우 위원회는 학술지 예규 제10조에 따라 지급한 원고료를 전액 환수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조치와 함께 연구윤리 위반사실을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위원회는 심의 과정의 모든 기록을 심의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심의결과 보고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가 종료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심의위원, 증인, 참고인 등 심의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등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저자 소속과 직위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의결: 2015년 4월 17일)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17년 2월 3일)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되,  
제1조는 2015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의결: 2018년 8월 17일)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19년 11월 29일)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21년 12월 2일)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22년 11월 25일)

[별지 1]

##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서

### 논문제목

본인은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에 논문을 투고함에 있어 「연구윤리규정」에 명시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1.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투고되어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거나 심사를 거쳐 게재된 적이 없는 저자 본인의 지적 창작물입합니다.
2. 본 논문은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침해하거나 다른 출판물을 표절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보증합니다.
3. 본 논문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저    자	성    명	소속 및 직함	연    락    처	서    명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중**



##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작성규정

제정일 2015. 4. 17.

개정일 2016. 3. 25.

개정일 2018. 8. 17.

개정일 2022. 5. 4.

### 1. 논문 작성 일반규칙

- 가.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모든 논문의 작성은 워드프로세스 ‘한글’로 작성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https://pac.jams.or.kr>)으로 제출한다.
- 나.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80매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논문 편집은 A4 사이즈로 위아래 여백 각 35mm(머리말·꼬리말 0mm), 좌우여백 각 30mm, 글자체는 신명조, 크기 11pt, 장평 95, 자간 -11, 줄 간격은 160%로 한다.
- 라. 본문의 각 문단은 한 자 들여쓰기, 참고문헌은 세 자 내어쓰기를 하고 양쪽 정렬을 한다. 단, 블록 인용, 표와 그림의 제목, 각주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다.
- 마. 논문은 국문 초록(제목, 저자명과 소속 및 직위, 국문 요약, 주제어), 본문, 참고 문헌, 영문 초록 순으로 한다. 부록의 첨부가 필요할 경우 부록의 위치는 참고 문헌과 영문 초록 사이로 한다.
- 바. 국문 초록은 논문 내용을 600~1200자로 요약하여 서술하고, 영문 초록은 300~500단어로 작성한다. ‘핵심어(영문 초록은 Keywords)’는 독자가 논문을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용어 3~5개를 선정하여 초록 한 줄 아래 나열한다.
- 사. 지원받은 기금의 출처, 학위 논문 등과의 관련성, 저자의 이메일,

교신저자 등의 표기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요소에 별표(\*)를 사용하여 각주 형태로 기술한다.

- 아. 본문의 소제목들은 수준별로 1. 1. 가. (1). (가). 1). 가). ①. ㉠ 순서로 사용한다.

## 2. 각주의 작성

가. 각주 및 참고문헌의 작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있지 않은 사항은 미국심리학회(APA)의 「출판지침」(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sup>th</sup> ed.)에 준하여 작성한다.

나. 문헌의 인용: 단순한 자료의 출처는 각주로 작성하지 않고, 본문 내의 인용으로 표기한다.

### (1) 본문 중 저자의 인용

- 국내문헌: 성과이름(출판연도)
- 동양문헌: 성과이름(원어, 출판연도) 또는 성과이름(원어, 출판연도/번역연도)
- 서양문헌: 성(원어, 출판연도) 또는 성(원어, 출판연도/번역연도)

예 김수철(2014)은 ...라고 지적했다.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 2013)는 ...을 주장하였다.

맥루언(McLuhan, 1981/2012)은 ...라고 정의했다.

### (2) 저자명이 본문에 나오지 않는 경우

- 국내문헌: 문장의 끝에 (성과이름, 출판연도)
- 동양문헌: 문장의 끝에 (성과이름 원어, 출판연도) 또는 문장의 끝에 (성과이름 원어, 출판연도/번역연도)
- 서양문헌: 문장의 끝에 (성 원어, 출판연도) 또는

문장의 끝에 (성 원어, 출판연도/번역연도)

- ☐ 예 …을 지적한다(김수철, 2014).
- …을 주장하였다(内藤正中, 2013).
- …라고 정의한다(McLuhan, 1981/2012).

(3) 재인용

원전의 저자명과 출판연도를 우선 표기하고, 쌍점(:) 뒤에 재인용한 자료의 저자명과 출판연도를 표기

- ☐ 예 김수철(2014: 박희수, 2012 재인용)은 … 라고 지적했다.
- …라고 정의한다(McLuhan, 1981: 이희승, 2012 재인용).

(4) 직접 인용

- 단문의 인용: 인용문은 따옴표(“ ”)로 표시하고, 인용문 끝에 쪽수를 괄호로 쓴다. 번역서는 번역서 쪽수를 기준으로 표기한다.

- ☐ 예 김수철(2014)은 “미디어 플랫폼에 따른 콘텐츠의 변형이 중요하다”(12쪽)고 주장했다.
- 맥루언(McLuhan, 1981/2012)은 “미디어는 … ”(132쪽)라고 주장했다.

- 장문의 인용: 별도의 블록을 만들어 따옴표 없이 제시하고, 블록 전체를 내어쓰기 한다. 블록의 끝에 저자명, 출판연도, 쪽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 ☐ 예 분석대상판결의 매체별 건수 221건을 대상으로 매체유형에 따른 재판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월간지와 주간신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의 원고승소율이 각각 75.0%, 66.7%로 높게 나타났고, 일간신문 40.0%, 인터넷매체 38.3%, 방송 36.6% 순으로 나타났다(한수도, 2014, 123쪽).

### (5) 여러 저자의 단일 연구 인용

○ 저자 두 명이 함께 수행한 연구의 경우

- 본문 중 저자의 인용: 두 저자명을 ‘와(과)’로 연결하여 기재
- 저자명이 본문 중 나오지 않는 경우: 한국과 동양 저자명은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구분하고, 서양 저자명은 ‘&’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예 김수철과 박희수(2014)는 …라고 지적했다.

맥루언과 폴리처(McLuhan & Pulitzer, 1911)는 …라고 주장했다.

…이라고 볼 수 있다(김수철·박희수, 2014).

…라는 점에 주목한다(McLuhan & Pulitzer, 1995).

○ 세 명 이상의 저자가 함께 수행한 연구의 경우

- 저자가 세 명 이상 여섯 명 미만인 경우: 처음 인용할 때만 모든 저자명을 표기하고 두 번째부터는 첫 번째 저자명과 ‘등’(또는 ‘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외국문헌의 경우는 두 번째 인용부터 첫 번째 저자의 성과 ‘et al.’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 저자가 여섯 명 이상인 경우 : 처음 인용부터 첫 번째 저자명 다음에 ‘등’(또는 ‘외’)이나 ‘et al.’을 표기한다.

예 김수철, 박희수, 그리고 최수연(2014)은 …라고 지적했다. 김수철 등은 후속 연구에서 … 주목했다.

…이라고 볼 수 있다(김수철·박희수·최수연, 2014). …라고 한다(김수철 등, 2014).

맥루언, 폴리처, 그리고 허스트(McLuhan, Pulitzer, & Hearst, 1910)는 …라고 주장했다. 맥루언 등은 … 한다고 한다.

…라는 점에 주목한다(McLuhan, Pulitzer, & Hearst, 1910). 또한 …도 지적되었다(McLuhan et al., 1910).

### (6) 두 편 이상 연구의 인용

○ 한 괄호 안에 두 개 이상의 인용을 표기할 경우, 국내문헌(저자명

의 가나다 순), 동양문헌(국가명의 가나다 순), 서양문헌(저자명의 알파벳 순) 순으로 배열하고, 각 연구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 동일 저자의 연구를 두 편 이상 인용할 경우, 출판연도 순으로 배열하되, 저자명은 한 번만 표기한다. 출판연도가 동일할 경우는 제목의 가나다 순(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출판연도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예) 관련 연구들(김수철, 2010; 박희수, 2013; 内藤正中, 2010; Hearst, 1910; Pulitzer, 1911)은 이러한 결과를 …  
최근 연구들(김수철·박희수, 2012, 2013)은 …  
이러한 연구(김수철, 2011a, 2011b)는 …

### 3. 참고문헌의 작성

#### 가. 일반규정

- (1) 참고문헌은 본문 다음 ‘참고문헌’이라는 제목 아래 나열하되, 본문에 인용하거나 언급한 문헌만을 기재한다.
- (2) 참고문헌은 한국, 중국, 일본, 서양 순으로 열거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 중국어나 일본어 저자명은 한자의 한글식 표기의 가나다순, 서양문헌의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 (3) 제1저자의 단독 연구와 공동 연구가 참고문헌에 함께 포함될 경우, 단독 연구를 앞에 배열한다.
- (4) 동일 저자의 문헌은 출판 연도순으로 배열하되, 같은 연도에 출판된 문헌이 두 편 이상일 경우 제목의 가나다 순(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출판연도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 (5) 국내문헌과 동양문헌의 저자명은 저자의 완전한 성명을 원어 그대로 표기한다. 서양문헌의 저자는 성(Surname)을 적고, 이름(first name, middle name)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생략 표시로 마침표를 찍는다. 저자가 다수인 경우, 국내문헌과 동양문헌의 저

자는 가운데점(·)으로 구분한다. 저자가 다수인 서양문헌의 경우는  
 쉼표(,)로 구분하되, 마지막 저자는 ‘&’로 구분한다.

## 나. 문헌의 종류별 표기

### (1) 단행본

저자명 (출판연도). 단행본명. 출판지: 출판사. 순으로 표기한다. 국내  
 저작물 제목은 꺾쇠(< >) 안에 표기하고, 서양 저작물 제목은 이탤릭  
 체로 하되, 주제목과 부제목의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한다. 편집서  
 일 경우, 국내 편집서는 저자명 뒤에 ‘(편)’, 서양 편집서는 ‘(Ed.)’ 또  
 는 ‘(Eds.)’를 표기한다. 판수(edition)는 제목 뒤에 (제2판) 또는 (2<sup>th</sup>  
 ed.) 등으로 표기한다. 출판사가 위치한 도시(미국은 주 포함)와 출판  
 사명을 기재하고, 둘 사이는 쌍점(:)으로 구분한다. 보고서는 보고서의  
 일련번호를 제목 뒤 괄호 안에 기재한다.

☞ 김수철 (2015). <디지털시대>. 서울: 책세상.

박희수 (편) (2013). <세계의 언론법>. 부산: 책고을.

Hearst, W. R., Pulitzer, J., & McLuhan, H. M. (Eds.) (1950).  
*History of privacy: Arising issues of privacy in public spaces.*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최수연 (2013). <대량 조정처리신청 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조사연  
 구 2015-001).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2)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수 호수, 쪽수. 순으로 하되,  
 국내 학술지명은 꺾쇠 안에 표기하고, 쪽이 여러 면에 걸칠 경우 붙임  
 (-)으로 표기한다. 서양 학술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하며 주요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한다. 권수는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호수는 권수  
 뒤 괄호 안에 기재하되, 이전 호의 쪽수가 다음호로 이어지는 연속번

호 체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수를 적지 않는다.

예 김수철 (2015). 언론조정중재모델의 새로운 모색. <언론과 인권>, 1권 1호, 14-24.

Hearst, W. R. (1950).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Journal of Human Rights*, 18(3), 123-142.

### (3) 편저 속의 한 장(Chapter)이나 논문

편집된 책에 포함된 한 장이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인용한 장의 저자명 (출판연도). 장의 제목. 편집자명 (편). 편집서명 (쪽수). 출판지: 출판사명. 순으로 표기한다. 서양문헌은 편집자명 앞에 'In'을 쓰고 이름 (first name, middle name)의 첫 글자를 쓰고 성(Surname)을 기재한다. 마지막 편집자 성 뒤에 '(Ed.)' 또는 '(Eds.)'를 쓴다. 이때 국내 편집서명은 꺾쇠 안에 표기하고 서양 편집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김수철 (2013). 소송의 사회적 비용과 언론중재제도. 박희수·최수연 (편). <미디어법제의 미래> (123-142쪽). 서울: 새미디어.

Hearst, W. R. (1950). The Relations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cy. In J. Pulitzer, & H. M. McLuhan (Eds.), *Privacy and Big Data: Surveillance or Public good?* (pp. 703-732). Trenton, NJ: Ablex.

### (4) 번역서 또는 편역서

원저자 (원저 출판연도). 원저 제목(출판본). 역자 (번역서 출판연도). 번역서 제목. 출판지: 출판사. 순으로 하고, 역자명 뒤에 '(역)' 또는 '(편역)'을 표기한다.

예 McLuhan, H. M. (2013). *Remedies for damage to reputation* (3<sup>rd</sup> ed.). 김수철 (역) (2014). <명예의 훼손과 구제>. 서울: 서울출판사.

### (5)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발표자명 (발표연도, 월). 논문제목. 학술대회명, 발표 도시명(:발표 장

소 표기 가능). 순으로 표기한다. 논문명은 꺾쇠 안에 기재한다.

예 최수연 (2014, 8월).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 대전: 언론연구소.

## (6) 학위논문

국내 대학 학위논문은 저자명 (학위 수여 연도). <논문제목>. 학위 수여 대학과 학위명. 순으로 한다. 서양 대학의 경우, 학위명, 수여 대학, 국가명(미국은 도시 및 주)을 쉼표(.)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논문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미출판 논문에 대해서는 학위명 뒤에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Unpublished master's thesis를 표기한다.

예 박희수 (2015). <부정적 보도의 강도가 조정 결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McLuhan, H. M. (1995). *A Study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cross-border complaints on medi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yracuse University, Syracuse, NY.

## (7) 신문, 잡지, 또는 뉴스레터

출판일자가 명확한 경우 저자명 뒤에 출판년, 월을 괄호 안에 표기하고, 불명확한 경우는 출판 연도와 월만 표기하거나, 출판 연도와 계절을 표기한다. 신문기사는 게재면을 기재하고, 여러 면에 걸쳐 실린 경우는 해당 면 모두를 기입한다. 신문의 사설이나 기사는 신문명을 저자명으로 하고, 특정인의 기고문은 기고자의 이름을 저자명으로 한다. 익명의 기고자는 기사의 제목 두 세 단어로 작성자를 대신한다.

예 한국신문 (2014, 2, 28). 미디어 콘텐츠 투자 늘었다. 3면, 4면.

최수연 (2013, 3, 4). 신생 미디어 플랫폼, 부작용 대비해야. <한국신문>, 11면.

McLuhan, H. M. (2013, July 5). Interactive storytelling and multimedia. *The New York Times*, pp. B1, B5.

신생 미디어 플랫폼 (2013, 3, 4). <한국신문>, 11면.

## 다. 온라인 자료 표기

### (1) 정기간행물

학술논문과 동일하게 표기하되, 제목 뒤에 출처 형태를 [전자매체본], [On-Line], [Electronic version] 중 하나로 기재한다. 마지막에 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시주소(URL: )를 제시한다(외국문헌의 경우 Retrieved from으로 표기). 인쇄본 없이 온라인 상에서만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은 권, 호수 기입 없이 간행물명과 URL만 제시한다.

예) 김수철 (2015). 언론조정중재모델의 새로운 모색 [전자매체본]. <언론과 인권>, 1권 1호, 14-24. URL: <http://www.pressandrightsgo.kr/reference/journal.jsp>

Achankeng, F (2014).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in Africa: Engaging the colonial factor [On-line]. *African Journal on Conflict Resolution*, 13(2), 11-38. Retrieve from <http://www.ajol.info/index.php/ajcr/article/view/101863/91902>

### (2) 비정기간행물

저자나 작성 날짜를 확인할 수 없는 문서는 제목을 저자명으로 간주하여 표기한다.

예)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in Africa: Engaging the colonial factor (*n. d.*). Retrieve from <http://www.ajol.info/index.php/ajcr/article/view/101863/91902>

### (3) 연구보고서 또는 세미나 자료

기관의 웹 사이트에 게시된 보고서와 같이 문서 제공자와 문서 작성자가 구분되는 경우는 기관명을 먼저 기재하고 웹 사이트 주소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서 작성자를 먼저 쓰고자 할 경우에는 웹 사이트에 문서가 게재된 연도와 논문 제목을 기입한 후 괄호 안에 연구보고서의 이름을 표기한다.

예)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 인터넷 공간에서 기사 어뷰징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URL: [http://www.kpf.or.kr/board/K/list.do?menu\\_link=pds/Publication&p\\_menu\\_id=4&menu\\_id=193&menu\\_orderby=2&tabYn=N](http://www.kpf.or.kr/board/K/list.do?menu_link=pds/Publication&p_menu_id=4&menu_id=193&menu_orderby=2&tabYn=N)

최수진·김정섭 (2014). 인터넷 공간에서 기사 어뷰징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 2014-19). URL: [http://www.kpf.or.kr/board/K/list.do?menu\\_link=pds/Publication&p\\_menu\\_id=4&menu\\_id=193&menu\\_orderby=2&tabYn=N](http://www.kpf.or.kr/board/K/list.do?menu_link=pds/Publication&p_menu_id=4&menu_id=193&menu_orderby=2&tabYn=N)

#### (4) 기타 전자 매체 자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기재한다. 온라인상에서 읽은 기사는 기사 작성자를 쓰고, 괄호 안에 기사 작성일을 표기한다.

예) 통계청 (2013). 정기간행물 연도별 증감현황. URL: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O#SubCont](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O#SubCont)

금준경 (2015, 1, 14). 어뷰징 기자들과 대화 “클러스터링? 검색기사 막기 힘들 것”. <미디어 오늘>.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228>

### 라. 법률 자료의 표기

#### (1) 판례

우리 판례는 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순으로 기재하고, 미국판례는 사건이름, 판례집 권수, 판례집 이름, 해당 판례의 첫 페이지, 판결 연도 순으로 한다. 판례를 본문에서 인용할 때에는 ‘판례명(연도)’, 또는 ‘(판례명, 연도)’로 표기하고, 외국 판례명은 이탤릭체로 한다.

예)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헌재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결정.

(대법원, 2013. 2. 14.)

*Brown v. Board of Educ.*, 347 U.S. 483 (1954).

*Lessard v. Schmidt*, 349 F. Supp. 1078 (E. D. Wis. 1972).

*Durflinger v. Artiles*, 563 F. Supp. 322 (D. Kan. 1981), *aff'd*, 727 F.2d, 888 (10th Cir. 1984).

*Lessard v. Schmidt*(1972) 또는 (*Lessard v. Schmidt*, 1972)

## (2) 법령

우리 법률은 법률명 다음에 법률시행일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미국의 법률명, 권, 출처, § 절 번호, 시행연도 순으로 표기하고, 법령을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법률명(시행연도)’로 기재한다. 법률개정안은 개정 법률안명 다음에 대표발의자와 발의일자를 기재한다.

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1. 4. 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재영, 2015. 1. 30.).

Mental Health Systems Act, 42 U.S.C. § 9401 (1988).

Mental Health Systems Act (1988).

## 4. 표와 그림

가.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목을 붙이고, 표 또는 그림의 상단에 제시한다.

나. 관련된 표와 그림을 본문에서 언급할 때에는 꺾쇠 안에 표기(예시: <표 1> 참조.) 한다.

다. 표, 그림을 다른 문헌에서 인용하였을 때는 표와 그림의 하단 왼쪽에 출처를 표시한다.



## <미디어와 인격권>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재진 ■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편집위원** 강승식 ■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형돈 ■ 공주대 법학과 교수

상윤모 ■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서보건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미선 ■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소영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재 ■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ISSN 2465-9207

2023년 제9권 제2호

2023년 8월 15일 발행

편집·발행 ■ 언론중재위원회

인쇄 ■ 도서출판 관악사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1층 언론중재위원회

연구교육본부 연구팀

[전화] 02.397.3041~4

[이메일] journal@pac.or.kr

- 본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입니다.
- 본 학술지의 무단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pac.or.kr](http://www.pac.or.kr)
- 본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언론중재위원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